

北傀勞動黨 吳 外廓團體現況

—附：關係主要人名錄—



86/128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일 러 두 기

- 1 . 이 冊子는 北傀勞動黨 및 外廓團體現況에 대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作成하였음 .
- 2 . 이 冊子에 收錄된 內容中에는 國家安保에 關聯된 事項이 있으므로 取扱上 留意하기 바람 .
- 3 . 發行處의 許可없이 內容의 轉載·複寫를 禁함 .

目 次

1. 朝鮮 勞動黨	3
2. 朝鮮 社會民主黨	36
3. 朝鮮 天道教 青友黨	37
4. 朝鮮 工業技術 總聯盟	38
5. 朝鮮 農業勤勞者 同盟(農勤盟)	39
6. 朝鮮 民主女性 同盟(女盟)	66
7. 朝鮮 社會主義 勞動青年 同盟(社勞青)	68
8. 朝鮮 職業總同盟(職總)	91
9. 朝鮮 記者同盟	94
10. 朝鮮 文學藝術 總同盟(文芸總)	95
11. 朝鮮 赤十字會	104
12. 朝鮮 아시아·아프리카 團結委員會	106
13. 世界 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	107
14. 朝鮮 올림픽 委員會	108
15. 祖國 平和統一委員會(祖平)	109
16. 在北 平和統一 促進協議會	112
17. 朝鮮 平和擁護 全國 民族委員會	114
18. 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祖戰)	115
19. 朝鮮 佛教徒 聯盟	121
20. 朝鮮 基督教徒 聯盟	124

21. 朝鮮 天道教會 中央指導 委員會	126
22. 朝鮮 學生 委員會	128
23. 朝鮮 民主 法律家協會	129
24. 朝鮮 民主 科學者協會	130
※ 附錄：關係主要人名錄.....	131

1. 朝鮮勞動黨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政權機關이나 各種 政治組織의 指導와 統制
- 最高의 組織形態로서 革命의 參謀部로 北傀 最高의 權力機構

2) 創立日字 1945. 10. 10

3) 主要沿革

- 1945. 9. 朝鮮共產黨 再建
- 1945. 10. 朝鮮共產黨 北朝鮮 分局 組織
- 1946. 8. 北朝鮮共產黨과 朝鮮新民黨 合黨, 北朝鮮 勞動黨 結成
- 1946. 11. 朝鮮共產黨, 人民黨, 南朝鮮 新民黨 合黨, 南朝鮮 勞動黨 結成
- 1949. 6. 南北朝鮮 勞動黨 合黨 朝鮮勞動黨으로 改稱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金日成(總秘書)

2) 關係 主要人物(幹部)

- 党中央委 政治局 常務委委員: 金日成, 金一, 吳振宇, 金正日等 5名
- 党中央委 政治局委員: 34名 (委員 金日成, 金一, 吳振宇, 金正日等 19名, 候補委員 許鎔, 尹基福等 15名)

○ 黨中央委 秘書局 秘書：金正日，金仲麟，金永南，金煥号 10名

○ 黨中央委 軍事委員會 委員：金日成，吳振宇，金正日，吳克列号
19名

3) 傘下組織

○ 道(直轄市)黨委員會，市(區域)郡黨委員會，初級黨委員會，(分
初級黨委員會)，(部門黨委員會)，黨細胞

4) 黨員數

3,062,000名(6次黨大會時推定)

* 1961. 8. 1 北傀公式發表：黨員 1,311,563名，黨細胞 65,000個

5) 組織基盤

○ 勞動者 22.6%，貧農 56.8%，中農 3.7%，事務員 13%，其他 3.9
%(1956. 1. 北傀公式發表)

나. 特記事項

- 1946. 8. 28 - 30 北朝鮮勞動黨 1次大會
- 1948. 3. 27 - 30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
- 1956. 4. 23 - 29 朝鮮勞動黨 3次大會
- 1961. 9. 11 - 18 朝鮮勞動黨 4次大會
- 1970. 11. 2 - 13 朝鮮勞動黨 5次大會
- 1980. 10. 10 - 14 朝鮮勞動黨 6次大會

라. 綱領 및 規約

1) 綱領

朝鮮勞動大衆의 利益을 代表하며 擁護하는 勞動黨은 富強한 民主主

義 獨立國家 建設을 目的하고 다음과 같은 課業을 爲하여 鬪爭한다.

1. 民主主義 獨立國家를 建設할 것.
2. 人民共和國의 建設을 爲하여 全朝鮮적으로 主權을 人民의 政權인 人民委員會에 넘기도록 할 것.
3. 日本人, 民族叛逆者 및 地主들의 所有土地를 沒收하여 土地없는 農民, 土地 적은 農民들에게 無償으로 分配하며 北朝鮮의 土地改革의 成果를 더욱 鞏固히 하고 全朝鮮에 土地改革을 實施할 것.
4. 日本國家, 日本人團體와 日本人 個人所有 및 民族叛逆者들의 所有인 工場, 鑛山, 鐵道, 運輸, 通信 機關, 企業所 및 文化機關들을 國有化할 것.
5. 一切銀行과 其他金融機關들은 國有化할 것.
6. 勤勞者와 事務員에게 8時間勞動制를 實施하며 그들에게 社會保險을 保障하고 女子들에게 男子와 同等한 賃金を 支拂할 것.
7. 財産의 多少, 知識의 有無, 信仰 및 性別의 如何를 不拘하고 20歲에 達한 朝鮮人民들에게 同等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賦與할 것.
8. 全朝鮮人民에게 言論, 出版, 集會, 演說大會, 示威運動, 黨組織 및 信仰의 自由를 保障할 것.
9. 女子들에게 政治的, 經濟的, 法律的으로 男子들과 同等한 權利를 保障하며 家族 및 風習關係에서 封建的 殘滓를 肅清하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國家的으로 保障할 것.
10. 人民教育의 改革을 實施하며 各種 學校內에서의 教育과 教養事業에서 日本教育制度의 殘滓를 肅清하며 財産形便과 信仰 및 性別

을 不問하고 全 朝鮮人民에게 공부할 權利를 保障하는 同時에 朝鮮民族文化·藝術 및 科學의 正常的 發展을 圖謀할 것.

11. 勤勞大衆의 生活을 威脅하던 日本帝國主義 稅金制度의 殘滓를 撤廢하고 새로운 公正한 稅金制度를 實施할 것.

12. 民族軍隊 組織과 義務的으로 軍事徵兵制度를 實施할 것.

13. 世界의 平和를 爲하여 鬪爭하는 聯邦과 平和를 愛護하는 各國, 各民族들과 튼튼한 親善을 圖謀한다.

2) 規 約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 勞動階級과 全體 勤勞大衆의 先鋒的 組織部隊이며 우리나라 勤勞大衆의 모든 組織中에서 最高形態의 革命組織이다. 朝鮮勞動黨은 朝鮮民族과 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한다.

朝鮮勞動黨은 勞動者, 農民, 勤勞 인텔리 가운데서 勤勞大衆의 利益과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의 偉大한 事業의 勝利를 위하여 獻身的으로 鬪爭하는 先鋒的인 鬪士들로서 組織한다.

朝鮮勞動黨은 朝鮮共產主義者들이 抗日武裝鬪爭에서 이룩한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의 直接的인 繼承者이다.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 同志의 偉大한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國際 共產主義運動과 勞動運動에서 發露된 修正主義, 教條主義, 온갖 種類의 機會主義와 부르조아思想을 反對하며,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기 위하여 果敢히 鬪爭한다.

朝鮮勞動黨의 當面 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

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데 있다.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의 革命遂行과 黨 建設事業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의 確立을 基本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建設의 強力한 武器인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強化하여 社會主義 建設의 總路線인 千里馬運動을 全力을 다하여 發展시킨다.

朝鮮勞動黨은 勞動階級の 指導的 役割을 높이고 勞動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 各層 愛國的 民主力量들과 統一戰線을 強化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勞動黨은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自己事業의 最高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사람들과의 事業을 黨事業의 基礎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黨事業의 基礎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黨事業에서 靑山里 精神과 靑山里 方法을 貫徹한다.

朝鮮勞動黨은 黨員들과 勞動者들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모든 社會를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革命化하고 改造하면서 政治思想的으로 革命隊列을 鞏固히 하며, 階級的 怨讐들에 대한 獨裁를 強化하며,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을 發揮하여 經濟 및 國防建設을 促進하며, 共和國 北半部に 樹立된 社會主義 制度를 더욱 튼튼히 하며,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促進시키기 爲하여 鬪爭한다.

朝鮮勞動黨은 祖國의 自主平和統一路線을 貫徹하며, 祖國의 統一을 위

하여 朝鮮人民의 切實한 怨讐인 美帝國主義者들을 南朝鮮에서 몰아내며, 日本 軍國主義를 反對하며,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 官僚輩들의 傀儡政權을 打倒하고 政權을 爭取하려는 南朝鮮人民들의 反美, 反傀儡鬭爭을 積極支持 聲援하며, 南朝鮮 革命의 完成을 위하여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서 社會主義 나라들과 團結하고, 國際 共產主義運動을 強化하기 위하여 鬭爭하며,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新生獨立國들과의 親善 및 紐帶關係를 發展시키며, 모든 地域人民들의 反帝·民族解放運動과 獨占 資本主義를 反對하는 資本主義 國家들의 勞動階級과 人民들의 革命鬭爭을 支持하며, 廣範한 反帝·反美統一戰線을 實現하며, 美帝國主義의 四肢를 切斷하고 國際帝國主義를 反對함으로써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 共同偉業의 勝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鬭爭한다.

第 1 章 黨 員

1.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과 祖國과 人民을 위하여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最終적인 勝利를 위하여 獻身的으로 鬭爭하는 自覺적인 革命 鬭士이다.

2.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된 朝鮮公民으로서 黨의 綱領과 規約을 承認하고, 그것을 實現하기 위하여 熱烈히 鬭爭하며, 黨의 一定한 組織內에서 事業하며, 黨의 결정들을 積極적으로 實踐하는 勞動者들이 될 수 있다.

3. 朝鮮勞動黨 黨員은 規定된 候補期間을 마친 候補黨員 가운데서

받아 들인다.

그러나 特別한 경우에는 入黨請願者를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 黨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滿 18 歲부터 入黨할 수 있다.

入黨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候補黨員으로 入黨하려는 사람은 入黨請願書와 黨員 2 名의 入黨保證書를 黨細胞에 提出하여야 한다.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員이 入黨할 때에 市(區域), 郡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委員會의 入黨保證書로 黨員 1 名의 保證書를 代身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入黨할 때에는 入黨請願書와 入黨保證書를 黨細胞에 提出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黨細胞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다른 入黨保證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入黨保證人은 2 年 以上の 黨年限을 가져야 한다.

入黨保證人은 被保證人의 過去 및 現在의 社會, 政治生活를 잘 알아야 한다.

入黨保證人은 保證의 眞實性에 대하여 黨 앞에 責任을 진다.

③ 入黨問題는 個別的으로 審査하며, 黨細胞 總會에서 入黨 請願者의 參加밑에 討議 決定하고, 採擇된 결정은 市(區域) · 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入黨保證人은 入黨問題를 討議하는 會議에 參加하지 않아도 된

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入黨問題에 대한 黨細胞의 결정을 1個月內에 審議 解決하여야 한다.

④ 特殊한 環境에서 일하는 사람의 入黨問題는 黨中央委員會에서 特別히 制定한 規定과 節次에 따라 審議한다.

⑤ 他黨에서 黜黨한 사람이 入黨하려면 3年 以上の 黨 年限을 가진 黨員 3名의 保證이 있어야 한다.

他黨에서 平黨員으로 있던 사람의 入黨은 市(區域)·郡黨委員會가, 市(區域)·郡級의 委員 및 幹部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道(直轄市)黨委員會가, 中央과 道級의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黨中央委員會가 各各 最終적으로 批准한다.

⑥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은 1年으로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에게 規定된 期間內에 黨員의 資格을 갖추도록 幫助를 주어야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남에 따라 黨總會에서 그의 入黨與否를 審議 결정하여야 한다.

特別한 경우에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黨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萬一 候補黨員의 入黨準備 程度가 不充分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候補期間을 1年까지 더 延長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候補期間을 마친 後에도 그의 個人的 資質로 보아 入黨할 만한 資格이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黨總會에서 그를 黜黨시키는 데 대하여 審議 결정하여야 한다.

候補期間을 延期하거나 候補黨員을 黜黨시킬 데 대한 黨細胞의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 ⑦ 入黨年月日是 黨細胞 總會에서 候補黨員을 黨員으로 또는 入黨 請願者를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 黨員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날로 한다.

4. 黨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 ①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 위에 確固히 서 있어야 한다.

黨員은 우리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接受하고 擁護하며 이를 徹底히 貫徹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의 革命傳統을 깊이 研究體得하고, 그것을 擁護하며 繼承 發展시켜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教條主義, 부르조아思想, 封建的인 儒教思想 및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등 온갖 反黨, 反革命路線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固守하여야 한다.

- ② 黨員은 黨의 組織生活에 積極적으로 參加하여 黨性を 단련하고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自身을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會議와 黨學習에 積極적으로 參加하여 黨組織에서 委任된 分工을 正確히 遂行하며, 日常的으로 黨生活을 總和하고 批判을 통하여 自己의 思想鬪爭을 積極적으로 展開하여 自己를 革命家로 改造하여야 한다.

黨員은 職位와 功勞에 關係없이 全體黨員들에게 多같이 適用되는 黨의 規律을 自覺적으로 遵守하고 規律을 違反하는 現象들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여야 한다.

- ③ 黨員은 革命的인 學習氣風을 確立하고 自己의 政治, 思想, 文化 水準을 不斷히 向上시켜야 한다.

黨員은 黨의 路線과 政策 및 그 革命的인 傳統을 깊이 研究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一般的인 原理를 體得하여 自己의 思想 理論的 水準을 向上시키며, 正確히 黨政策을 理解하고 그 基礎 위에서 現實問題를 正確히 分析하며, 社會主義 經濟의 管理問題와 先進科學 및 技術을 研究하며, 文化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④ 黨員은 革命的 群衆路線을 貫徹하며 日常的으로 大衆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黨員은 大衆에게 黨의 路線과 政策을 日常으로 解說하여 주며, 그들을 教養 改造하며 그들을 黨 주위에 굳게 結束시켜 革命課業의 遂行을 위하여 그들을 組織 動員하며, 大衆의 意見을 正確히 接受하여 그들의 要求를 제때에 解決하여 주어야 한다.

- ⑤ 黨員은 勞動과 生活에서 大衆의 模範이 되며, 革命事業을 위하여 항상 思考하고 움직이며 모든 事業에서 先鋒的 役割을 하여야 한다.

黨員은 非黨員보다 政治 思考水準이 높아야 하며, 自己와 家族 및 集團의 革命化事業에서 模範이 되어야 한다.

黨員은 勞動을 사랑하고 勞動規律을 自覺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自己 맡은 事業에 精通하며 맡은 바 任務를 模範적으로 遂行하여야 한다.

黨員은 保守主義와 消極性을 反對하여 鬪爭하며, 技術革新運動에 積極적으로 參加하여 勞動 生産能率을 不斷히 提高하며, 企業管理 運營에 率先參加하여 國家와 社會財産을 愛護 節約하며 나라의 經濟를 儉約하여야 한다.

- ⑥ 黨員은 高尚한 共產主義的 道德 稟性을 所有하고 組織과 集團을 사랑하며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위하여 個人的 利益을 犧牲할 覺悟가 되어 있어야 한다.

黨員은 恒常 素朴, 率直, 謙遜하여야 하며, 私利와 功名을 탐내지 말고 黨 앞에 率直하며, 人間性이 豊富하고 文化的이며, 社會秩序와 社會道德을 自覺적으로 遵守하여야 한다.

- ⑦ 黨員은 社會主義 祖國을 튼튼히 保障하여야 한다.

黨員은 日常的으로 緊張되고 動員된 態勢를 갖추고 軍事知識을 배우고 敵의 侵略으로부터 革命의 戰取物을 튼튼히 保衛하며 祖國의 統一을 위한 聖스러운 鬪爭에 앞장설 覺悟가 되어 있어야 한다.

- ⑧ 黨員은 革命體制와 秩序를 遵守하고, 安逸과 나태를 反對하여 鬪爭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革命的인 警覺性을 높이고 黨과 國家의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 ⑨ 黨員은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問題에 대하여 黨組織에 報

告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現象들 뿐만 아니라,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든 缺陷과 否定的인 傾向을 反對하여 鬪爭하며, 그것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黨委員會에 제때에 報告하여야 한다.

⑩ 黨員은 規定된 黨費를 매달 支拂하여야 한다.

5. 黨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①. 黨員은 黨會議와 黨出版物을 통하여 黨의 路線과 政策의 實踐 및 黨事業의 發展을 위하여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

②. 黨員은 各級 黨指導機關 選舉에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③. 黨員은 黨會議에서 正當한 理由와 根據가 있는 限, 어떤 黨員을 莫論하고 批判할 수 있으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지 않는 限, 어떠한 指示도 拒絕할 수 있다.

④. 黨員은 自己의 事業과 生活에 대한 問題를 討議 결정하는 黨會議에 參加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⑤. 黨員은 黨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 各級黨 委員會에 어떤 申訴나 請願을 提起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⑥. 候補黨員의 義務는 黨員의 義務와 같다. 候補黨員의 權利는 選舉權과 被選舉權 및 決議權이 없는 以外에는 黨員의 權利와 같다.

⑦. 黨의 規律을 違反하는 黨員은 黨의 責罰을 받는다.

i)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動을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을 反對하고 宗派를 形成하거나 怨讐들과 妥協하거나 그밖에 黨에 嚴重한 損失을 끼친 黨員을 黜黨시킨다.

ii) 黨員의 稱號를 剝奪하지 않을 程度의 過誤를 犯한 黨員에 대하여는 過誤의 輕重에 따라 譴責, 警告, 嚴重警告 또는 權利停止의 責罰을 適用할 수 있다.

iii) 責罰의 目的은 過誤를 犯한 黨員을 教養하는 데 있다.

黨의 責罰은 過誤를 犯한 動機와 原因 및 그 過誤의 結果를 詳細히 糾明하고 最大限의 慎重성을 돌려야 한다.

iv) 黨員에게 適用하는 責罰은 本人의 參加下에 그가 屬한 黨細胞 總會에서 討議 決定한다. 特別한 경우에는 本人이 參加하지 않아도 責罰을 討議 決定할 수 있다.

黨 中央委員會, 道(直轄市), 市(區域), 郡黨委員會는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直接 責罰을 내릴 수 있다.

黨員에게 責罰을 適用한 데 대한 黨細胞의 결정은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黜黨에 대한 黨細胞의 결정이 批准되기 前에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 黨員에게 黨證을 回收하지 못하며, 그를 黨生活에 參加시켜야 한다.

v) 黨中央委員會,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中央委員會의 全員 會議에서, 道(直轄市), 市(區域) · 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該當 委員會의 全

員會議에서 결정한다.

黨細胞는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의 黨規律을 違反한 경우에 責罰을 適用하는 데 대한 自己 意見を 該當 黨委員會에 提起할 수 있다.

그러나 黨細胞는 道(直轄市),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犯한 過誤가 該當委員會의 事業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을 경우에는 嚴重警告까지의 責罰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은 該當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6. 宗派 및 其他 다른 分派에 參加한 黨員에 대한 黨規律 問題의 審議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의하여 進行된다.

平黨員 또는 市(區域)·郡機關의 幹部로 있던 黨員의 問題는 黨中央委員會에서 審議한다.

7.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는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請願을 제때에 審議 解決하여야 한다.

8. 黨細胞는 항상 責罰을 받은 黨員을 幫助하여야 하며, 만일 責罰을 받은 黨員이 自己의 過誤를 深刻히 反省하고 그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으며, 實際적인 活動이 改善되고 있는 境遇에는 그 責罰을 解除하는 데 대한 問題를 總會에서 討議 決定하여야 한다.

黨員이 받은 責罰을 解除하는 데 대한 黨細胞의 결정은 市(區域)·

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黨中央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받은 責罰의 解除는 그 責罰의 適用을 最終的으로 결정한 該當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9.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 以上 黨生活에 參加하지 않는 黨員에 對하여 黨細胞 總會는 黨機關으로부터의 除名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10. 黨員의 學習과 移動은 黨中央委員會가 제정한 규정과 節次에 의하여 進行된다.

第2章 黨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11. 黨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原則에 의하여 組織한다.

- ① 各級 黨 指導機關은 民主主義的으로 選舉하고, 選舉받은 黨指導機關은 黨組織앞에 自己의 事業에 對하여 정기적으로 報告한다.
- ② 黨員은 黨組織에 服從하며, 下級 黨組織은 上級 黨組織에 服從하며, 모든 黨 組織은 黨中央委員會에 絕對 服從한다.
- ③ 모든 黨組織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 貫徹하며 下級 黨組織은 上級 黨組織의 결정을 義務적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 黨組織은 下級 黨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 檢閱하며 下級 黨組織은 上級 黨組織 앞에 自己의 事業에 對하여 정기적으로 報告한다.

12. 各級 黨組織은 地域的 또는 生產的 單位에 따라 組織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地域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대하여 上級 黨組織으로 되며, 한 部分의 全體事業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部分의 一部 事業을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대하여 上級 黨組織으로 된다.

13. 各級 黨委員會는 該當 地域 또는 生産的 單位の 最高 指導機關이며 參謀部이다.

各級 黨委員會는 새로운 重要的 問題들을 集體的으로 討議 決定하는데 根據하여 그것을 執行하여야 하며, 이에 個人的 責任性和 創發性을 嚴密히 結合시켜야 한다.

各級 黨組織은 該當 地域 또는 部分에서 提起되는 問題들을 自立的으로 討議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14.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다음과 같다.

① 全黨의 境遇에는 黨大會이며,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는 黨大會가 選舉한 黨 中央委員會이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의 경우에는 該當 黨代表會이며, 黨代表會와 黨代表會 사이에는 黨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黨委員會이다.

初級黨의 境遇에는 黨總會 또는 黨代表會이며, 黨總會와 黨總會, 黨代表會와 黨代表會 사이에는 選舉된 該當 黨委員會이다.

② 黨大會 또는 黨代表會의 代表者는 한級 낮은 黨組織의 黨代表會 또는 黨總會에서 選舉한다.

黨大會 代表者의 選出 比率은 黨中央委員會가 규정하며, 道(直轄市)·市(區域)·郡黨 組織의 黨代表會 代表者의 選出比率은 黨中央委員會가 作成한 比率에 따라 該當 黨委員會가 규정한다.

黨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의 數는 黨大會에서 결정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 數와 初級黨 執行機關의 委員數는 黨中央委員會가 規정한 基準에 根據하여 該當 黨代表會 또는 黨總會에서 결정한다.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準候補委員은 生産勞動에 直接 參加하는 核心 黨員이 選舉된다.

各級 黨 指導機關의 選舉는 黨中央委員會가 規정한 選舉 細則에 따라 執行된다.

15.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準候補委員의 除名 또는 補選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進行된다.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境遇에는 그 缺員된 數만큼 該當 黨委員會 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委員會의 候補委員이 아닌 黨員의 補選은 黨中央委員會가 規정한 規則과 節次에 따라 進行한다.

初級黨 組織 執行機關 委員의 除名 및 補選은 該當 黨總會 또는 黨代表會에서 進行된다.

上級 黨委員會는 缺員된 下級 黨委員會의 責任秘書(秘書) 또는 秘書(副秘書)를 派遣할 수 있다.

各級 黨機關의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權만 가진다.

16. 黨會議는 該當 黨組織에 所屬된 黨員 또는 候補黨員, 代表者 總數의 3分之2 以上이 參加하여야만 成立될 수 있고, 提起된 問題의 결정은 該當 黨會議 參加者의 過半數 贊成으로써 採擇된다.

17. 各級 黨委員會 內에는 必要한 部署를 設置한다.

部署의 設置 및 廢止의 權限은 黨中央委員會가 가진다.

18.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또는 그들과 同等한 機能을 遂行하는 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黨中央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하며, 初級黨委員會 및 分初級 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道(直轄市) 黨委員會가 批准하고 少數黨員을 가진 初級黨 委員會 또는 部門黨委員會 및 黨細胞의 組織과 解散은 市(區域)·郡黨 委員會가 批准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 委員會는 黨組織의 組織과 解散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19. 黨中央委員會는 어떤 黨組織을 莫論하고 黨의 路線과 政策 및 黨의 綱領 規約을 嚴重하게 違反하거나 實踐하지 않는 境遇에 그 黨組織을 解散하고 그에 所屬되었던 黨員의 事業을 個別的으로 審議하며, 그들을 再登錄하여 새로운 黨組織을 組織할 수 있다.

20. 黨中央委員會는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重要한 地域과 部門을 考慮하여 特殊한 環境에서의 黨組織의 構成, 黨組織의 活動方法 및 其

他 黨 建設의 諸般 問題들을 결정할 수 있다.

第 3 章 黨의 中央組織

21. 黨의 最高機關은 黨大會이다.

黨大會는 4 年에 1 回 黨 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黨 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黨大會를 규정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黨 中央委員會는 黨大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3 個月前에 發表하여 야 한다.

22. 黨大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 ① 黨 中央委員會 및 黨 中央檢査委員會의 活動을 總和한다.
- ② 黨의 綱領과 規約을 採擇 또는 修正 補充한다.
- ③ 黨의 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의 基本問題들을 결정한다.
- ④ 黨 中央委員會 및 黨 中央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23. 黨 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모든 黨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黨 中央委員會는 全黨에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樹立하고 그 實行을 組織 指導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그들의 候補隊를 準備하며, 黨員의 黨生活을 組織 指導한다.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온 社會를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여, 그들 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思想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各級 黨委員會를 設置하고 그들의 活動을 指導 檢閱하며; 各級 黨機關을 組織 指導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 檢閱하며 革命的 武力을 組織하여 그들의 安全을 鞏固히 한다.

國內外的 其他 政黨 및 團體들과의 關係에서 代表하며 黨의 財政을 管理한다.

24. 黨 中央委員會는 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를 6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는 該當 時期에 黨앞에 提起된 重要問題들을 討議 결정하며, 黨 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의 總秘書와 秘書들을 선거하며 秘書局을 組織하고 黨 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25. 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黨 中央委員會 名義로 黨의 모든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는 1個月에 1回 以上 會議를 召集한다.

26. 黨 中央委員會 秘書局은 幹部問題, 黨內問題 및 其他 當面問題들을 정기적으로 討議 결정하며, 그 결정의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27. 黨 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 執行方法을 討議 결정하며, 軍需產業과 人民軍隊와 모든 武力의 強化를 위한 事業을 組織하며, 우리나라의 軍事力을 指導한다.

28. 黨 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 反革命的 宗派行爲 및 其他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의 綱領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거나 其他 黨規律을 위반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 規律問題와 關聯된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提議 및 黨員의 申訴를 審議 解決한다.

29. 黨 中央檢査委員會는 黨의 財政 經理事業을 檢査한다.

30. 黨 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黨代表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黨 代表者會의 代表者 選舉節次와 代表者 選出非率은 黨 中央委員會가 규정한다.

黨 代表者會는 黨의 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의 緊急한 問題들을 討議 결정하며, 자기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黨 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또는 準候補委員을 그 成員으로부터 召喚하고, 中央委員會의 成員을 새로운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으로 補選한다.

第 4 章 道(直轄市)의 黨組織

31. 道(直轄市) 黨組織의 最高機關은 道(直轄市) 黨代表會이다.

道(直轄市) 代表會는 2 年에 1 回 道(直轄市) 黨委員會가 召集한다.

道(直轄市) 代表會는 必要에 따라 규정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될 수 있다.

道(直轄市) 黨委員會는 道(直轄市) 黨代表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2 個月前에 傘下 黨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2. 道(直轄市) 黨代表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道(直轄市) 黨委員會와 道(直轄市) 黨 檢査委員會의 事業을 總和한다.

② 道(直轄市) 黨委員會와 道(直轄市) 黨 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③ 黨大會에 派遣할 代表者를 選舉한다.

33.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勤勞大衆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특히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教條主義, 부르조아思想 및 封建적인 儒教思想을 反對하고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等 온갖 表現의 反黨 및 反革命的 思想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保護한다.

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後備隊를 準備하며, 黨의 力量配置를 組織하며, 黨의 委任을 黨員에게 賦與하며, 革命課業을 위하여 항상 思考하고 움직이도록 그들의 黨生活을 指導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初級黨委員會, 工場, 企業所, 高等教育機關의 細胞를 組織하고 그들의 活動을 指導 檢閲한다.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勤勞大衆을 革命化하고 改造하여 그들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黨員과 勤勞大衆속에서 思想事業을 組織指導한다.

勤勞者들의 社會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이 自己 基本課業을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 있도록 그들을 指導 檢閲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의 指導的 役割을 훌륭히 遂行하며, 革命課業의 成果的 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 戰鬥力の 向上을 組織 指導하며,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自己의 事業定型을 黨 中央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한다.

34. 道(直轄市)黨委員會는 道(直轄市)黨 全員會議를 4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한다.

常務委員會와 道黨委員會의 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舉하며, 秘書處를 組織하며, 道(直轄市)黨委員會 軍事委員會와 檢閲委員會를 選舉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道(直轄市)黨委員會 名義로 黨內 事業과 行政 및 經濟事業을 組織指導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常務委員會 會議는 1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秘書處는 幹部事業 및 其他 黨內 事業問題들

을 討議 결정하고 그 執行을 組織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遂行方法을 討議 결정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35. 道(直轄市)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 또는 反革命的 宗派行爲를 하거나 其他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綱領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거나 黨規約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 問題와 關聯된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提議 및 黜黨에 대한 결정을 最終적으로 批准하여 黨規律 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申訴를 解決한다.

第 5 章 市(區域)·郡의 黨組織

36. 市(區域)·郡의 黨組織의 最高機關은 市(區域)·郡黨 代表會이다.

市(區域)·郡黨 代表會는 2年에 1回 召集하고, 必要에 따라 市(區域), 郡黨 代表會는 규정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市(區域)·郡黨 代表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1個月에 傘下 黨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7. 市(區域)·郡黨 代表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市(區域)·郡黨委員會와 市(區域)·郡黨 檢査委員會의 事業을 總和한다.

② 市(區域)·郡黨委員會와 市(區域)·郡黨 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③ 道(直轄市)·黨代表會에 派遣할 代表者를 選舉한다.

38. 市(區域)·郡黨委員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特히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教條主義, 부르조아思想 및 封建的인 儒教思想을 反對하고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等 온갖 表現의 反黨 및 反革命的 思想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여,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保護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그들을 育成하며, 幹部 後備隊를 準備하고 그들을 系統的으로 訓練한다.

黨의 委任을 黨員들에게 賦與하고, 革命課業을 위하여 日常的으로 思考하고 움직이며 부단히 黨性을 단련하도록 그들의 黨生活을 組織 指導한다.

黨의 核心을 發見하고 그 隊列을 擴大시키며 黨員 擴大事業을 日常的으로 組織 指導하며, 黨의 力量을 適切히 配置하며, 黨員과 候補 黨員을 教養한다.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大衆을 革命化하고 改造하여 그들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思想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初級黨 組織을 合理的으로 組織하여 初級黨 組織의 執行機關을 強化하며, 自己機能과 役割의 부단한 向上을 위하여 그들을 指導 幫助한다.

勤勞者들의 社會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이 自己의 任務를 正確히 遂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의 指導的 役割을 훌륭히 遂行하고 革命課業의 成果的 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들의 政治思想教養과 戰爭準備를 強化하며, 戰鬥準備를 完成하여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自己의 事業定型을 上級黨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한다.

39.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全員會議를 3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執行方向을 討議 결정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 常務委員會의 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擇하며, 秘書處를 組織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名義로 黨內 事業과 行政 및 經濟事業을 組織 執行하며 指導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常務委員會는 1個月에 2回 以上 會議를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執行方法을 討議 결정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40. 市(區域)·郡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反革命的 宗派行爲를 하거나 其他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 綱領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거나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

하며, 黨 規律問題와 關聯된 黨 細胞의 결정을 討議 批准하며, 黨 規律問題와 關聯된 申訴를 審議 解決한다.

第 6 章 黨의 基層組織

41. 黨의 基層組織은 黨細胞이다.

黨細胞는 黨員生活의 據點이며 大衆 속에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直接 遂行하는 黨의 戰鬥單位이다.

黨細胞는 黨員 5名 以上이 있는 모든 行政 및 生産單位에서 組織한다.

42. 黨의 基層組織의 組織方式은 다음과 같다.

① 黨員 5名에서 15名까지의 單位에는 黨細胞를 組織한다.

黨員 5名 未滿을 가진 單位에는 黨細胞를 두지 않고, 그 行政 및 生産單位의 黨員 또는 候補黨員은 隣接黨細胞에 所屬시키거나 作業性格과 隣接關係를 考慮하여 2個以上の 行政 및 生産單位로써 1個의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特殊한 경우에는 黨員 3~4名이 있는 單位 또는 15名 以上の 單位에도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3名 未滿의 單位에는 市(區域)·郡黨委員會가 推薦하는 黨員을 責任者로 하는 黨小組를 組織할 수 있다.

② 黨員 16名 以上이 있는 單位에는 初級黨 委員會를 組織한다.

③ 黨員 16名 以上이 있는 行政 및 生産單位에는 初級黨 委員會와 黨細胞 사이에 部門黨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④ 初級黨委員會, 部門黨委員會 또는 黨細胞의 組織形成만으로 黨의

基層組織을 合理的으로 組織할 수 없는 경우에는 初級黨委員會와 部門黨委員會 사이에 있는 行政 및 生産單位에 分初級黨委員會를 組織한다.

⑤ 以上の 組織型에 符合되지 않는 경우에는 黨中央委員會의 批准 밑에 實情에 맞는 組織形成을 取할 수 있다.

43. 初級黨 組織(委員會)의 最高 指導機關은 黨總會(代表會)이다.

① 黨 細胞總會는 1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② 初級黨委員會, 部門黨委員會 總會(代表會)는 3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黨員 또는 候補黨員이 500名 以上이거나 傘下의 黨組織들이 널리 分散되어 있을 경우에는 初級黨組織의 黨總會를 6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할 수 있다.

44. 初級黨 組織에는 1年을 期間으로 하는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① 黨細胞는 總會에서 秘書와 副秘書를 選舉한다.

② 初級黨委員會, 分初級黨委員會, 部門黨委員會는 該當 黨總會(代表會)에서 選舉하며, 秘書와 副秘書는 該當 黨委員會에서 選舉한다.

初級黨委員會에서는 必要에 따라 執行委員會를 選舉할 수 있다.

初級黨委員會, 分初級黨委員會, 部門黨委員會는 1個月에 3回以上 會議를 召集하며, 執行委員會가 組織된 行政 및 生産單位의 初級黨委員會는 1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內閣과 中央機關의 初級黨 組織內에 黨 指導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45. 初級黨 組織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그들이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授受하고 끝까지 擁護 貫徹하며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教條主義, 부르조아思想 및 封建的인 儒教思想을 反對하고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等은 갖 種類의 反黨·反革命思想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固守하도록 黨員들과 勤勞大衆을 우리 黨의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킨다.

② 下級 黨組織의 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體系的으로 育成하며 黨核心을 發見하고 教養하며 不斷히 그 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③ 黨員들의 黨生活을 強化하고 그들의 黨性을 不斷히 단련하며, 黨員들 속에 黨規約 學習을 정기적으로 組織하며, 革命事業을 위하여 恒常 思考하고 움직이며, 모든 事業에서 先鋒的인 役割을 하도록 黨의 委任을 賦與하며, 높은 政治思想水準에서 黨會議를 進行하고, 黨生活을 總和하여 黨員의 黨生活 定型을 徹底히 把握하고 그들을 教養하며, 黨員들을 革命家로 改造하고 批判의 方法으로 思想鬪爭을 成果的으로 展開하며, 黨員이 過誤를 犯했을 경우에는 責任을 追窮하고 그 過誤를 是正하도록 그를 幫助한다.

④ 入黨請願者를 發見하여 그들을 體系的으로 教養 檢討하며, 準備된 사람들을 黨에 받아들이며 候補黨員들과 새로 入黨한 黨員들을 育成한다.

⑤ 勞動階級의 模範에 따라 勤勞大衆을 革命化하고 改造하며, 黨周圍에 그들을 튼튼히 結束시켜 革命課業을 遂行하도록 그들을 組織 指

導하며, 勤勞大衆의 要求와 意見을 겸손히 接受하고 그것을 제때에 解決하여 주며, 그들의 物質文化 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不斷히 努力하며, 모든 行政 및 生産單位와 職場에서 系統과 秩序를 樹立하며 反革命的 要素들과의 鬭爭을 強化한다.

⑥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한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黨政策 教養을 強化하고, 革命傳統教養과 共產主義教養의 基礎가 되는 階級教養과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教養을 強化한다.

⑦ 勤勞者의 社會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그들이 自己의 義務를 正確히 遂行하도록 指導한다.

⑧ 새 環境에 適應하도록 黨 事業方法을 不斷히 改善하고 모든 事業에서 政治事業을 先行시키며, 革命事業의 成果的 遂行을 保障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을 正確히 指導한다.

모든 黨員들과 勤勞大衆이 自己 分野에서 革命課業을 忠實히 遂行하도록 指導하며, 끊임없이 革新을 일으키며, 千里馬運動과 社會主義競爭運動에 積極 參加하며, 技術革新運動을 強化하며, 勞動生産 能率을 提高하고 勞動規律을 強化하며, 國家財産과 社會財産을 愛護 節約한다.

⑨ 勞農赤衛隊를 徹底히 強化하고 그들의 思想政治教養 및 軍事教育을 強化하며, 黨이 부를 때 恒常 動員할 수 있도록 準備한다.

⑩ 黨員과 候補黨員을 教養하며, 黨費를 받으며, 自己事業 定型을 上級黨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한다.

第 7 章 朝鮮人民軍隊內 黨組織

46. 朝鮮人民軍은 眞正한 人民의 軍隊이며, 抗日 武裝鬪爭의 榮光스러운 傳統을 繼承한 朝鮮勞動黨의 革命的 武裝力이다.

47. 朝鮮人民軍隊 內의 各級 單位에 黨組織을 形成하며 朝鮮人民軍의 全體 黨組織을 唯一的으로 網羅하는 朝鮮人民軍黨委員會를 組織한다.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에 直屬하며, 그 指導 밑에 事業하며, 自己 事業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 앞에 正常的으로 報告한다.

48.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戰士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幹部 後備隊를 育成하며, 黨員의 黨生活을 組織指導하며, 黨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黨員들과 戰士들을 革命化하고 그들을 勞動階級の 模範에 따라 改造하며, 그들을 黨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의 機能과 役割을 높이도록 指導하며, 軍事事業의 黨指導를 強化하며, 黨의 軍事路線을 貫徹하며, 붉은 旗中隊運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며, 人民軍을 一當百의 革命的인 武裝力으로 強化하며, 抗日武裝鬪爭 時期에 이룩한 指揮官과 戰士, 軍隊와 人民들의 傳統的인 團結精神을 發揮하도록 指導한다.

49. 朝鮮人民軍隊 內 各級 黨組織들은 朝鮮勞動黨의 規約과 黨中央委員會가 推進한 指示와 原則에 따라 事業한다.

50.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들은 地方黨 組織들과 緊密한 연계

를 가져야 한다.

朝鮮人民軍隊內 黨委員會는 黨 中央委員會의 批准 밑에 政治 및 軍事幹部를 駐屯地域의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또는 工場企業所의 初級黨 委員會 委員으로 推薦할 수 있다.

第 8 章 政 治 機 關

51. 黨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政治, 經濟 및 軍事分野의 重要한 部門에 政治機關들을 組織한다.

內閣과 中央機關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 및 그들에게 所屬한 政治機關들은 該當部門에서 黨員들과 勤勞大衆에게 政治教養 事業을 唯一的으로 組織 指導하며, 該當 單位內에 組織된 黨委員會 執行部로서의 機能을 遂行한다.

朝鮮人民軍 總政治局 또는 該當 黨委員會의 政治部로서 그에게 所屬한 政治機關들은 黨 政治事業을 唯一的으로 組織 指導한다.

52. 朝鮮人民軍 總政治局에 所屬한 各級 黨機關들은 上級 政治機關의 指導 밑에 事業하며, 內閣과 中央機關의 政治局(政治部)에 所屬한 各級 政治機關들은 地方黨委員會와 上級 政治機關들의 二重的인 指導 밑에 事業한다.

53. 內閣과 中央機關內에 組織한 政治局(政治部)들은 下級 政治機關들을 指導함에 있어서 該當 地方黨委員會들과 緊密한 連繫를 가져야 한다.

54. 政治機關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遂行함에 있어서 黨員들과 勤

勞大衆의 組織 및 動員을 위하여 黨 熱誠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55. 政治機關들은 勞動黨의 規約과 黨 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示와 原則에 따라 組織事業한다.

第 9 章 黨과 勤勞大衆의 組織

56.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이며 抗日武裝鬪爭의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하는 黨의 外廓團體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大衆의 思想教養 組織이며, 黨과 大衆을 連結하는 引傳帶이며 黨의 忠實한 幫助者이다.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우리의 革命課業을 直接 繼承하는 青年들의 革命的 組織이며 黨의 戰鬪的 後備隊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黨의 指導下에 自己의 事業을 進行한다.

57.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盟員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튼튼히 꾸리며,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그들을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며, 그들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同盟 隊列들을 鞏固히 하며, 盟員들의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하며, 千里馬運動과 社會主義競爭을 積極적으로 組織動員한다.

① 職業同盟은 盟員들 속에서 思想, 技術 및 文化革命을 強力히 展開하며, 人民經濟計劃을 完遂 또는 超過完遂하며 經濟的인 生産管理에 盟員들을 끌어들이며, 勤勞大衆의 生活條件을 保障하기 위하여 努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② 農業勤勞者同盟은 盟員들 속에서 思想・技術 및 文化革命을 積極적으로 展開하며, 〈우리나라의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提제〉를

貫徹하며, 農業生産을 不斷히 向上시키며, 勞動生産 能率을 높이며, 農業勞動者의 生活條件을 保障하도록 全力을 傾注한다.

③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盟員들 속에서 黨員 後備隊를 育成하고, 黨隊列을 不斷히 補充하며, 黨과 祖國을 위하여 幹部 後備隊를 育成하며, 學生들과 青年들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忠實한 建設者가 되며, 깊은 知識을 所有하고 높은 道德과 강한 體力으로써 政治思想的으로 準備된 近衛隊와 決死隊가 되며, 黨 中央委員會를 목숨으로 擁護 保衛하며, 聖스러운 祖國防衛事業에 自覺적으로 參加하도록 그들을 教養한다.

④ 女性同盟은 盟員들의 政治思想 및 文化水準의 向上을 위한 事業을 積極적으로 展開하며, 社會主義 建設에서 女性들의 役割을 더욱 向上시키며, 그들의 아들 딸들이 革命의 忠實한 繼承者가 되고 家族을 革命化하도록 그들을 教養하여야 한다.

58. 各級 黨組織들은 勤勞大衆의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그들을 教養하며, 勤勞大衆의 組織을 通하여 大衆과의 事業體系를 樹立하며, 그들이 自覺적으로 自己 任務를 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第 10 章 黨의 財政

59. 黨의 財政은 黨員들의 黨費, 黨 機關들과 黨 企業所들로부터의 收入 및 其他 收入으로 形成한다.

60. 黨員 및 候補黨員의 黨費는 月 收入의 2%로 한다.

※ 註: 本 規約은 露語版의 國譯임.

2. 朝鮮社會民主黨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名稱만 存在하는 所謂 勞動黨 友黨
- 各種 聲明, 呼訴文을 통한 對南宣傳煽動 活動
- 統一問題 等 南北關係 政黨·社會團體會議에 偽裝參加

2) 創立日字 1945.11.3

3) 主要沿革

- 1945.11. 曹晚植先生을 黨首로 創黨
- 1946.1. 黨의 本據를 서울에 移轉
- 1948.3. 第3次全黨大會 - 共產黨과 흡사한 綱領 採擇
- 1956.4. 黨首 崔庸健 勞動黨 副委員長 兼職
- 1958. 市·郡黨以下 組織 解體
- 1960. 道黨 組織 解體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康良煜(委員長)

2) 關係主要人物(幹部)

金碩俊(副委員長)	고기준(組織部長)
金成律(")	김재연(宣傳部長)
金台涉(")	송영국(國際部長)
염국열(")	

다. 特記事項

- 1981.1. 第6次 黨大會에서 黨名을 朝鮮社會民主黨으로 改稱
- 2. 朝鮮社會民主黨 副委員長 염국열, 金日成·미테랑(불란서 社會黨 黨首)간 會談에 參席
- 3. 朝鮮社會民主黨 副委員長 염국열, 마스카다 이찌오(日本 社會黨委員長)와 會談

3. 朝鮮天道教青友黨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名稱만 存在하는 所謂 勞動黨 友黨
- 各種 聲明·談話를 통한 對南宣傳煽動 活動
- 統一問題 等 南北關係 政黨·社會團體會議에 僞裝參加

2) 創立日字 1946.2.8

3) 主要沿革

- 1945.9. 南韓에서 金秉淸을 委員長으로 創黨
- 1946.2. 金達鉉을 黨首로 北朝鮮天道教青友黨 創黨
- 1947.4. 第1次 全黨大會 - 共產政權樹立支持政綱 採擇
- 1950. 南北青友黨 合黨, 朝鮮天道教青友黨 發足
- 1959. 市·郡黨以下組織 解體
- 1960. 道黨組織 解體

나. 組織現況

- 1) 代表者 정신혁 (委員長)

다. 特記事項

- 1972.8. 南北赤十字 本會議 北傀側 諮問委員에 天道教 青友黨 副委員長 資格으로 강장수參席

4. 朝鮮工業技術總聯盟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工業分野에 從事하는 工業技術者들을 盟員으로 하는 勞動黨의 御用 勤勞團體
- 技術水準 向上을 爲한 各種 技術傳習會, 技術學習會, 技術研究 發表會 等 主管 및 技術書籍 發刊
- 國家技術資格審查對象者의 選拔 및 推薦

2) 創立日字 1946.4.14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崔萬鉉(委員長)

2) 傘下組織

- 道(直轄市), 市(區域)郡, 工場, 企業所, 工業系統의 大學, 高等專門學校 및 職場에 支部
- 機械, 鐵道 等 16個 專門委員會

3) 盟員數

約100萬名(100萬 技術者 養成을 根據로 推定)

4) 組織基盤

- 各種 工業分野에 從事하는 工業技術者 加入義務

5 . 朝鮮農業勤勞者同盟 (農勤盟)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農民의 組織體로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遂行
- 勞動黨과 農業部門의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을 連結시키는 引轉帶

2) 創立日字 1965 . 3 25

3) 主要沿革

- 1945.12. 全國農民組合 總聯盟 結成
- 1946. 1. 全朝鮮 農民組合 全國 總聯盟 北朝鮮 聯盟組織
- 1946. 5. 全朝鮮 農民組合 全國 總聯盟 北朝鮮 聯盟을 北朝鮮 農民同盟으로 改稱
- 1951. 2. 北朝鮮 農民同盟과 農民組合 總聯盟을 統合, 朝鮮農民同盟으로 改稱
- 1964. 2. 勞動黨 第4期 8次 全員會議, 農業勤勞者同盟組織 決定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張 允 弼 (委員長)

2) 關係 主要人物 (幹部)

남 태 준 (副委員長)

3) 傘下組織

- 道 (直轄市) 委員會, 市 (區域) 郡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 (工場, 企業所, 生産職場)

4) 盟員數 約 300 萬名

5) 組織基盤

- 協同農場員, 國營農·牧場, 協同農場經營委員會, 灌溉管理所, 農機械製作所, 農器具工場, 資材供給所, 家畜衛生防疫所 等に 勤務하는 事務員

다. 特記事項

- 1949.12. 國際農業 및 林業勞動者 職業同盟에 加入

라. 綱領 및 規約

1) 綱 領

北朝鮮農民同盟은 廣範한 勤勞農民을 自己隊列에 集結하고 그들의 利益을 代表하며 擁護하는 大衆的 團體이다.

本 同盟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憲法과 政府 政綱을 實踐하며 民主主義 自主獨立國家建設을 目的하고 아래와 같은 課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1. 本 同盟은 祖國의 民主主義獨立과 國土의 完整을 爲하여 祖國을 再植民地化하려는 帝國主義 侵略勢力 및 親日派 民族叛逆者等 國內反動勢力을 打倒 粉碎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2. 本 同盟은 農民들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 周圍에 굳게 結束시키며 北朝鮮에서 實施한 諸般民主改革 特히 土地改革의 成果를 더욱 鞏固 發展시키며 이를 全朝鮮적으로 實施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3. 本 同盟은 民主主義 祖國創建을 爲한 鬪爭에서 先進部隊인 勞動階級과의 同盟을 더욱 堅固히 하며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을 強化하기 爲하여 努力한다.

4. 本 同盟은 農村에 남아있는 惡毒한 日本帝國主義 思想殘滓와 封建的 因習을 根絶하기 爲하여 鬪爭하며 農民들을 人民民主主義 愛國精神으로 教養하며 農民들에게 科學知識을 廣範히 普及시킨다.

5. 本 同盟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法令을 自覺적으로 實踐하며 人民의 所有로된 國家 및 社會財産을 愛護하는 精神으로 同盟員들을 教養한다.

6. 本 同盟은 農民들에게 科學的 營農技術·多收穫 營農經驗을 普及시켜 낡은 營農方法을 急速히 改善함으로써 農村經理를 더욱 發展시키며 食糧增産과 輕工業原料의 國家需要를 充足시키며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自立經濟土臺를 더욱 튼튼히 構築하기 爲하여 努力한다.

7. 本 同盟은 農村과 都市의 物資交流를 圓滑히 하며 物價를 低下시키며 勤勞人民의 物質 文化生活을 改善向上시키기 爲하여 協同組合 事業을 더욱 發展시킴에 積極幫助한다.

8. 本 同盟은 共和國政府의 人民教育에 對한 施策을 받들어 文盲退治 및 成人教育網을 強化하며 全般的 初等義務教育制의 實現을 爲하여 積極努力한다.

9. 本 同盟은 農村文化水準을 急速히 向上시키기 爲하여 俱樂部 民主宣傳室의 運營 및 農村保健衛生施設을 擴充強化함에 積極 努力한다.

10. 本 同盟은 世界平和와 安全의 城壁이며 우리 祖國의 解放과 獨立의 眞正한 援助者인 蘇聯과의 군은 親善만이 祖國完全自主獨立의 唯一한 擔保임을 農民大衆속에 깊이 認識시키며 蘇聯을 비롯한 諸民主主義國家들과의 親善關係를 더욱 堅固히 하기 爲하여 努力한다.

2) 規 約

朝鮮 農業勤勞者 同盟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우리나라 協同農民들과 國營農牧場 및 農村經理에 直接 服務하는 工場, 企業所, 機關, 職場內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들의 自願的 原則에 基礎한 革命的 大衆組織이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朝鮮勞動黨의 領導밑에 自己의 모든 活動을 組織 展開하는 黨의 믿음직한 幫助者이며 黨과 우리나라 農業部門의 勤勞大衆을 連結시키는 引轉帶이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金日成同志의 直接的인 指導 밑에 組織 展開된 抗日武裝 鬪爭의 榮光스러운 革命 傳統을 繼承한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 農村建設을 促進시키고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革命課業을 實現하며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黨的 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고 黨에 무한히 忠實하며 農業部門 勤勞者들을 黨 周圍에 굳게 團結시키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堅決히 擁護하고 貫徹한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主體를 세우며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를 反對하고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金日成同志께서 提示한 「우리나라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提제」의 積極的인 實踐者로서 農村에서 思想革命을 確固히 善行시키면서 여기에 竝行하여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을 成果的으로 推進시키며 勞動同盟을 強化하고 都市와 農村間의 差異, 勞動階級과 農民間의 階級的 差異를 漸次 없애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南朝鮮 農民들과의 連繫를 強化하고 祖國의 自主統一을 念願하는 모든 勤勞者들과 굳게 團結하며 共和國 南半部에서 殖民地 反封建的 土地所有 關係를 清算하고 南朝鮮農民들을 온갖 桎梏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南朝鮮人民들의 反美 救國鬪爭을 積極 支持 聲援하고 그들을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強占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부터 解放하며 祖國의 完全한 統一獨立을 達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同盟員들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 精神으로 教養하며 社會主義的 國家와 全世界 農業部門 勤勞者들과의 國際主義的 團結을 強化하며 우리 祖國의 統一獨立을 支持 聲援하는 모든 나라 人民들과의 親善을 積極 圖謀하며 帝國主義

를 反對하고 民族的 獨立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人民들을 熱烈히 支持 聲援하며 亞細亞와 全世界의 平和를 鞏固히 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第 1 章 同 盟 員

1. 朝鮮農業勤勞者同盟員으로는 朝鮮公民의 協同農民들과 國營農牧場 및 農村經理에 直接 服務하는 工場, 企業所, 機關, 職場內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들로서 同盟의 規約을 承認하고 그것을 實踐하기 爲하여 積極 鬪爭하며 同盟의 一定한 組織內에서 熱誠的으로 事業하며 規定된 盟費를 바치는 모든 勤勞者들이 될 수 있다.

2. 加盟은 個別的으로 하되 그 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朝鮮農業勤勞者 同盟에 加盟하려는 農業部門 勤勞者들은 加盟 請願書를 該當 初級團體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加盟은 初級團體 總會에서 加盟請願者의 參加달에 討議 決定하며 그 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은 後에야 効力を 發生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加盟問題에 對한 初級團體의 決定을 1 個月內에 審議解決하여야 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加盟問題 取扱에서 本人을 參加시키지 않고 審議 解決할 수 있다.

③加盟 年月日은 初級團體 總會에서 加盟을 決定한 날로 한다.

不可避한 事情으로 同盟에서 除名되었다가 다시 同盟生活을 하게 되거나 職業同盟 組織으로부터 農業勤勞者 同盟으로 넘어오는 同盟員은 從前의 同盟年限을 가질 수 있다.

3. 同盟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①同盟員은 祖國의 統一獨立과 우리나라 農村에서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을 爲하여 積極 鬪爭하여야 한다.

②同盟員은 黨에 無限히 充實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支持하고 그것을 正確히 貫徹하여야 한다.

③同盟員은 黨의 革命傳統을 깊이 研究 體得하고 革命鬪士들의 模範을 따라 배우며 일하여야 한다.

④同盟員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黨政策, 金日成의 勞作을 꾸준히 研究하고 自己의 思想意識水準을 높이기 爲하여 不斷히 共產主義思想으로 튼튼히 武裝하여야 한다.

⑤同盟員은 美帝와 日帝를 비롯한 帝國主義와 地主, 資本家 階級을 憎惡하고 搾取制度를 反對하여 社會主義制度를 堅決히 擁護 發展시키고 自己의 郷土와 社會主義祖國을 사랑하는 熱烈한 愛國主義精神을 所有하여야 한다.

⑥同盟員은 個人 利己主義와 小所有者的 根性を 清算하고 集團主義 思想으로 武裝하기 爲하여 積極 努力하며 勞動을 사랑하고 共同財産을 愛護하며 消極性和 保守主義를 反對하고 새것에 敏感하며 勝利에 對한 信心을 가지고 未來를 사랑하며 繼續 革新하고 繼續 前進하는 革命的 樂觀主義精神으로 武裝하여야 한다.

⑦同盟員은 高尚한 共產主義的 道德 品性を 所有하고 眞實하게 生活하여야 하며 同志를 사랑하고 禮節이 바르며 謙遜하고 素朴하며 安逸하고 解弛한 現狀들과 온갖 낡은 習慣을 버리고 日常生活에서 儉朴하며 功名과 虛風을 버리고 率直하여야 한다.

⑧同盟員은 農村에서 水利化, 機械化, 電氣化, 科學化를 더욱 促進시키기 爲하여 互相 協力하여 積極 나서야 하며 農業科學의 成果와 先進營農技術을 廣範히 導入하고 技術 革新運動에 熱誠的으로 參加하며 集約的 營農方法을 繼續 發展시키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 農作物의 單位當 收穫高를 높이며 農業生産을 不斷히 長成시키고 農民들의 生活를 더욱 裕足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勞動에서 解放하기 爲하여 自己의 모든 情熱과 才能을 다 바쳐야 한다.

⑨同盟員은 一般 知識과 技術, 文化水準을 時急히 높이고 自己의 職場과 마을, 家庭들을 文化 衛生的으로 꾸미며 各種 文化 衛生施設들을 잘 거두고 모든 文化生活 條件을 갖추는데 自覺的으로 動員되어야 하며 온갖 낡은 生活樣式과 因習을 清算하고 文明하게 生活하며 群衆文化事業에 積極 參加하며 體力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⑩同盟員은 社會主義 競爭과 千里馬 作業班 運動에 率先 參加하여 높은 革命的 熱意를 發揮하고 集團的 革新을 일으키며 共產主義的으로 일하면서 배우며 生活하기 爲하여 積極 努力하여야 한다.

⑪同盟員은 國家法令 및 各種 規定들과 勞動規律을 自覺的으로 지키며 自己가 맡은 일에 精通하고 익숙하며 土地와 機械設備, 各種勞動道具들을 잘 保護管理하고 그것을 效果的으로 利用하며 勞動生産能力和 生産의 質을 不斷히 높이고 勞動保護安全事業에서 積極性을 發揮하며 協同農場의 管理運營과 工場, 企業所, 職場의 企業管理 運營에 積極 參加하고 國家計劃을 完遂 및 超過完遂하여야 한다.

⑫ 同盟員은 나라와 協同農場의 살림살이를 主人답게 알뜰히 꾸리며 國土와 國家資源을 所重히 여기고 國家社會財産을 極力 節約하여야 한다.

⑬ 同盟員은 國家와 組織의 秘密을 嚴守하고 恒常 革命的 警覺性을 높이며 원수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戰取物을 堅決히 守護하여야 한다.

⑭ 同盟員은 同盟生活을 誠實하게 하며 同盟會議에 빠짐없이 參席하여 問題討議에 積極 參加하며 組織이 준 委任과 分工을 徹底히 遂行하며 自己生活을 正常的으로 總和하여야 한다.

⑮ 同盟員은 同盟規律을 自覺적으로 지키며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缺陷들에 對하여 제때에 批判하고 온갖 否定的 現象들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自己의 缺陷을 大膽하게 고쳐야 한다.

4. 同盟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① 同盟員은 同盟會議와 出版物을 通하여 同盟決定과 同盟事業에 對한 實務的 討議에 自由롭게 參加할 수 있다.

② 同盟員은 各級同盟 指導機關選舉에서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진다.

③ 同盟員은 同盟會議에서 正當한 理由와 根據가 있는 限 어떤 同盟員을 莫論하고 批判할 수 있다.

④ 同盟員은 自己의 行動과 事業에 對한 問題를 討議 決定하는 同盟會議에 參加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⑤ 同盟員은 同盟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上訴과 請願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5.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우리나라 社會主義 農村建設에서 特出한 功勳을 세우고 同盟事業과 生活에서 模範이 된 同盟團體와 同盟員들을 表彰한다. 表彰은 同盟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에 따라 한다.

6. 同盟規律을 어기었거나 過誤를 犯한 同盟員에 對하여서는 教養과 同志的批判으로 고쳐 주어야 한다. 過誤가 嚴重할 境遇에는 그 程度에 따라 警告, 嚴重警告의 責罰을 줄 수 있으며 黨과 革命에 嚴重한 損失을 준 同盟員들은 黜盟시킬 수 있다.

責罰의 目的은 過誤를 犯한 同盟員들을 教養하는데 있다. 同盟員에 對한 責罰 特히 黜盟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最大限의 慎重성과 同志的 配慮를 돌리며 그가 犯한 過誤의 內容과 根源을 正確히 알아보고 處理하여야 한다.

7.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 以上 同盟組織生活에 參加하지 않았거나 盟費를 바치지 않는 同盟員은 自動적으로 同盟隊列에서 除名되는 것으로 認定하며 初級團體는 이에 對한 決定을 採擇하여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8. 責罰은 原則적으로 該當 同盟員이 屬한 初級團體 總會에서 本人을 參加시키고 討議 決定한다. 同盟員에게 責罰을 줄데 對한 初級團體의 決定은 市(區域)·郡同盟委員會가 最終적으로 批准한 後에야 効力を 가진다.

同盟員을 黜盟시킨데 對한 初級團體의 決定은 道(直轄市)同盟委員會가 最終적으로 批准한 後에야 効力を 가진다.

黜盟이 最終的으로 批准되기 前에는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同盟員의 同盟證을 回收하지 못하며 그를 同盟生活에 繼續 參加시켜야 한다.

9.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에 對한 責罰은 同盟大會 또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하며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 委員, 候補委員에 對한 責罰을 該當 同盟代表會 또는 該當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初級團體는 上級 同盟委員會委員 또는 候補委員이 同盟規律을 違反한 境遇에 그에 對한 具體的 資料와 함께 責罰을 適用할데 對한 意見을 該當 上級同盟委員會에 提起할 수 있다.

10. 黜盟 또는 그 以下の 責罰을 받은 同盟員은 그것이 不當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同盟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同盟委員會에 다시 審議해 줄 것을 要求할 수 있다.

各級 同盟委員會는 責罰을 받은 同盟員의 提議를 接受한 날부터 1 個月內에 處理하여야 한다.

11. 責罰을 받은 同盟員이 그後 實踐鬪爭을 通하여 犯한 過誤를 고쳤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責罰을 제때에 벗겨주어야 한다.

責罰을 벗겨줄데 對한 初級團體總會決定은 市(區域)·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委員, 候補委員에게 준 責罰을 벗겨주는 問題는 責罰을 준 該當級 同盟委員會에서 決定한다.

12. 同盟內의 어느 한 組織의 同盟員이 同盟內의 다른 組織으로 移動하면 그는 移動하여 該 組織의 成員으로 登錄된다.

同盟員의 移動은 同盟 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第2章 同盟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13. 同盟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에 依하여 組織한다.

①各級 同盟主導機關은 下部로부터 上部에 이르기까지 民主主義的으로 한다.

②各級 同盟 指導機關은 選舉받은 同盟組織앞에 自己의 事業을 定期的으로 總和 報告한다.

③同盟員은 同盟組織에 服從하며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同盟 組織은 上級同盟組織에 服從하며 全體 同盟組織은 同盟中央委員會에 服從한다.

④下級 同盟組織은 上級 同盟의 決定을 義務적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同盟組織은 下級同盟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 檢閱한다.

14. 同盟委員會의 活動의 基本은 集體的 指導이다.

各級 同盟委員會는 委員들의 役割을 높이며 同盟의 모든 活動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委員들의 集體的 知慧와 創發性에 依據하여 討議 解決하며 여기에 個人의 責任制를 密接히 結合시켜야 한다.

各級 同盟委員會에서 일단 討議決定된 問題는 個別的 일꾼에 依하여 修正 또는 歪曲되거나 그의 執行이 遲延되는 것을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15. 同盟組織은 地域的 또는 生産的 單位에 따라 組織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同盟組織은 그 地域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同盟組織들에 對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되며 한 部門의 全体事業을 擔當한 同盟組織은 그 部門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同盟組織들에 對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된다.

16. 各級 同盟組織은 該當地域 또는 部門에서 提起되는 問題들을 具體的 實情에 따라 自立的으로 討議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決定은 同盟規約과 上級同盟의 決定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7. 各級 同盟組織의 最高 指導 機關은 다음과 같다.

① 全同盟의 最高 指導機關은 同盟大會이며 大會와 大會 사이에는 大會가 選舉한 同盟 中央委員會이다.

②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 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該當 代表會이며 代表會와 代表會 사이에는 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同盟委員會이다.

③ 初級同盟組織의 最高 指導機關은 同盟總會 또는 同盟 代表會이며 總會와 總會, 代表會와 代表會 사이에는 總會 또는 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同盟委員會이다.

18.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數는 同盟大會에서 決定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 委員會委員 및 候補委員數와 初級 同盟組織의 執行機關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基準에 따라 該當 同盟代表會 또는 同盟總會에서 決定한다.

19. 各級 同盟 指導機關은 秘密 投票로 選舉하며 同盟 指導機關에 選舉될 候補者들에 對한 投票는 個別的으로 進行한다.

各級 同盟 指導機關들의 選舉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選舉細則에 따라 進行한다.

20. 同盟 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委員들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全員會議에서 缺員된 數만큼 該當 同盟委員會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경우에 따라 同盟 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는 委員總數의 3分の1을 넘지않는 範圍에서 缺員된 委員을 候補委員이 아닌 同盟員들 가운데서 補選할 수 있다.

必要에 따라 上級同盟委員會는 下級同盟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들을 任命 派遣할 수 있다.

21. 同盟 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는 自己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該當 同盟委員會委員 또는 候補委員을 同盟 指導機關 成員에서 召喚할 수 있다.

22. 同盟大會, 惑은 同盟代表會에 보낼 代表者는 한級 낮은 同盟組織의 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選舉한다.

同盟大會 代表者 選出 比率은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하며 同盟代表會 代表者 選出 比率은 該當 同盟委員會가 規定한다.

23. 同盟 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會議 候補委員은 該當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權만 가진다.

24. 同盟會議는 該當 同盟組織에 所屬된 同盟員 또는 代表者 總數

의 3분의 2 이상의 參加로써 成立되며 提起된 問題의 可決은 該當 同盟會議 參加者들의 半數 以上の 贊成으로서 確定된다.

그러나 同盟員을 黜盟시키는 問題, 各級 同盟委員會委員 또는 候補委員에게 責罰을 주거나 그를 同盟指導機關으로부터 召喚하는 問題, 候補委員이 아닌 同盟員들 中에서 委員을 補選하는 問題들의 決定은 該當會議 參加者들의 3분의 2 以上の 贊成을 받아야 한다.

25. 道(直轄市)·市(區域)·郡同盟委員會와 初級同盟委員會는 黨의 決定 指示와 그의 實踐을 爲한 上級同盟의 決定執行 對策을 討議하기 爲하여 熱誠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26.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內에는 必要한 部署를 設置할 수 있다. 部署를 設置하는 權限은 同盟中央委員會가 가진다.

27. 同盟中央委員會는 政治, 經濟的으로 必要한 部門 또는 地域에 同盟組織의 形式을 따로 規定하고 그에 該當한 權限을 줄 수 있다.

同盟中央委員會는 特殊한 環境에서 同盟組織의 形式과 活動方法 및 其他 諸般問題들을 따로 決定할 수 있다.

第3章 同盟의 中央組織

28. 同盟의 最高機關은 大會이다. 同盟定期大會는 4년에 1回 同盟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同盟臨時大會는 同盟中央委員會의 提議 또는 全體同盟員 總數의 3분의 1 以上이 要求하는 경우에 召集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大會를 召集하는 날짜와 討議할 問題들을 3個月 前에 發表하여야 한다.

29. 同盟大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同盟中央委員會 同盟 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 決算 報告를 聽取 討議한다.

②同盟의 綱領과 規約을 採擇 또는 修正한다.

③同盟앞에 提起되는 重要한 課業들을 討議 決定한다.

④同盟中央委員會와 同盟中央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30.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를 1년에 2回以上 召集한다.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同盟中央委員會 常務委員會와 委員長 및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同盟中央委員會의 名義로 同盟의 모든 事業을 指導한다.

常務委員會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內部事業과 提起되는 當面한 事業을 討議하고 執行하기 爲하여 組織委員會를 選舉한다.

31. 同盟中央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大會와 大會 사이에 同盟內에 黨的 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고 黨에 無限히 忠實하며 同盟員들과 農業部門 勤勞者들을 黨周圍에 굳게 團結시키며 同盟앞에 提起되는 모든 課業을 黨政策과 金日成同志의 教示에 徹底히 立脚하여 그의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員들 속에 主體를 세우며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를 反對하고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金日成同志께서 提示한 「우리나라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關한 提제」에 根據하여 思想革命을 先行시키면서 여기에 併行하여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을 強力히 推進시키며 農業部門에 社會主義 競爭과 千里馬作業班 運動을 指導하며 農業生産을 保障하기 爲한 實踐方途를 提示하며 그의 成果的 實行에로 同盟組織들과 同盟員들을 組織 動員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共和國北半部에서 社會主義 農村建設과 祖國의 自主統一을 促進시키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旗幟 밑에 社會主義 國家와 全世界 農業部門勤勞者들과의 親善團結을 強化하며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民族的 獨立을 爲하여 싸우는 人民들을 熱烈히 支持聲援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國家와 組織의 秘密을 嚴守하고 恒常 革命的 警覺性を 높이며 원수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戰取物을 堅決히 守護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幹部들을 選拔 配置하고 教養 育成하며 同盟組織을 革命的인 隊列로 튼튼히 꾸리며 우리나라 革命發展의 該當時期에 必要한 同盟의 各種 機關들과 部署를 設置하고 그의 活動을 指導하며 同盟內 事業體系를 確立하고 事業方法을 不斷히 改善하며 同盟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모든 活動에서 同盟을 代表한다.

32. 同盟中央委員檢査委員會는 同盟의 財政經理事業을 檢査한다.

33. 同盟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大會와 大會 사이에 同盟 代表者會를 召集할 수 있다. 同盟代表者會 代表者의 選舉 節次와 代表者

選出 比率은 同盟 中央委員會가 規定한다. 同盟代表者會는 黨 政策을 貫徹하기 위하여 全 同盟앞에 提起되는 緊急한 問題들을 討議하며 自己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을 召喚하고 그를 補選하거나 새로 選舉할 權限을 가진다. 同盟代表者會에서 採擇한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의 召喚, 補選 또는 選舉에 대한 決定 以外의 모든 決定은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의 批准을 받아야 하며 全體 同盟組織들은 그 決定을 義務적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34.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깃발과 徽章을 制定한다.

第4章 道(直轄市)의 同盟組織

35. 道(直轄市) 同盟組織의 最高機關은 道(直轄市) 同盟代表會이다. 道(直轄市) 同盟代表會는 2년에 1회 道(直轄市) 同盟委員會가 召集한다. 道(直轄市) 同盟 臨時代表會는 道(直轄市) 同盟委員會 傘下 全體 同盟員의 3분의 1 以上の 要求와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의 提議 또는 同盟中央委員會의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道(直轄市) 同盟委員會는 道(直轄市) 同盟代表會를 召集하는 날자와 討議할 問題들을 2個月前에 傘下 同盟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6. 道(直轄市) 同盟代表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와 道(直轄市) 同盟檢査委員會의 事業 決算 報告를 聽取 討議한다.

②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와 道(直轄市) 同盟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③同盟大會에 보낼 代表者를 選舉한다.

37.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全員會議를 1년에 2回 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와 委員長 및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道(直轄市)同盟委員會의 名義로 同盟事業을 指導하며 執行한다.

38. 道(直轄市)同盟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傘下 同盟組織들과 同盟員들 속에서 黨의 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고 黨에 無限히 忠實하도록 教養하며 道(直轄市)同盟組織앞에 提起되는 모든 課業들을 黨 政策, 金日成同志의 教示와 그를 實踐하기 爲한 同盟中央委員會 決定에 徹底히 立脚하여 그 의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金日成同志께서 提示한 “우리나라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提제”에 立脚하여 同盟員들 속에서 政治 思想 教養을 第1次的으로 내세우고 階級 教養을 基本으로 하는 共產主義 教養을 強化하고 黨 政策 教養과 革命傳統 教養을 密接히 結付하여 進行하며 農村에서 水利化, 機械化, 電氣化를 더욱 促進시키며 先進 科學技術의 成果를 廣範히 導入하고 集約的 營農方法을 繼續 發展시키며 同盟員들과 農業部門 勤勞者들의 一般知識과 技術, 文化 水準을 높이며 社會主義 農村을 文化衛生的으로 꾸리고 온갖 落後한 生活樣式과 慣習을 清算하며 生活을 文明하게 하도록 組織指導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農業部門에서 社會主義 競爭과 千里馬 作

業班 運動을 指導하며 同盟員들이 國家法令과 各種 規定을 嚴守하고 勞動規律을 自覺적으로 지키며 協同農場의 管理 運營과 工場, 企業所, 職場의 企業管理 運營 및 勞動保護 安全事業에 主人답게 參加하며 國家 社會財産을 愛護 節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國家計劃을 完遂 및 超過完遂하도록 組織 指導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國家와 組織의 秘密을 嚴守하고 恒常 革命的 警覺性을 높이며 怨讐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 戰取物을 堅決히 守護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教養 育成하며 同盟組織들과 同盟員들의 同盟生活을 體系的으로 組織 指導하며 黨의 群衆 路線을 貫徹하여 同盟員들과 農業部門 勤勞者들을 黨 周圍에 튼튼히 團結시킨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靑山里 精神, 靑山里 方法에 根據하여 事業體系를 確立하고 事業方法을 부단히 改善하며 傘下 同盟 組織들의 事業을 日常的으로 指導 幫助한다.

道(直轄市)同盟委員會는 自己事業 定型을 同盟中央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道(直轄市)同盟委員會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第5章 市(區域), 郡의 同盟組織

39. 市(區域), 郡同盟組織의 最高機關은 市(區域), 郡同盟代表會이다. 市(區域), 郡同盟代表會는 2년에 1회 市(區域), 郡同盟委員會가 召集한다. 市(區域), 郡 同盟 臨時代表會는 市(區域), 郡同盟委

員會 傘下 全體同盟員의 3분의 1 以上の 要求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提議 또는 上級同盟委員會의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를 召集하는 날자와 討議할 問題들을 1個月前에 傘下 同盟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40. 市(區域), 郡同盟代表會議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市(區域), 郡同盟委員會와 市(區域), 郡同盟檢査委員會의 事業·決算報告를 聽取 討議한다.

②市(區域), 郡同盟委員會와 市(區域), 郡同盟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③道(直轄市)同盟代表會에 보낼 代表者를 選舉한다.

41.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를 1년에 3回 以上 召集한다. 市(區域)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委員長 및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는 郡同盟委員會의 名義로 同盟事業을 組織 執行하며 指導한다.

42.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傘下 同盟組織들과 同盟員들 속에서 黨의 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고 黨에 無限히 忠實하도록 教養하며 黨政策, 金日成同志의 教示와 그를 實踐하기 위한 上級同盟의 決定執行을 組織하고 貫徹한다.

②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들 속에서 政治 思想 教養을 第1次的으로 내세우며 階級 教養을 基本으로 하는 共產主義 教養을 黨政策 教養 및 革命傳統 教養과 密接히 結付하여 進行함으로써 그들

을 社會主義 制度를 堅決히 擁護하고 發展시키도록 教養하며 勞動階級의 革命精神을 所有하고 共產主義 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며 個人 利己主義와 小所有者的 根性を 清算하고 集團主義 思想으로 튼튼히 武裝하며 勞動을 사랑하고 消極성과 保守主義를 克服하며 새것에 敏感하고 勝利에 대한 確固한 信心과 革命的 樂觀主義로 武裝시켜야 한다.

③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農村에서 水利化, 機械化, 電氣化, 科學化를 促進시키며 先進科學技術의 成果를 廣範히 導入 一般化하고 集約的 營農方法을 繼續 發展시키며 農業生産을 不斷히 長成시키고 農業 勤勞者들의 生活을 더욱 裕足하게 하며 그들을 高된 勞動에서 完全히 解放하기 위하여 積極 努力한다.

④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들의 一般 知識과 技術 文化水準을 부단히 높이며 農村에서 教育, 保健, 住宅條件, 文化 厚生施設 등을 충분히 갖추고 그것을 愛護 管理하도록 하며 農村을 文化 衛生的으로 더 잘 꾸리며 온갖 낡은 生活樣式과 因習을 清算하고 文明하게 生活하도록 한다.

⑤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自力更生의 革命的 旗幟밑에 農業 部門에서 社會主義 競爭과 千里馬 作業班 運動을 責任的으로 組織 指導함으로써 同盟員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든 單位들에서 集團的 革新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⑥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들이 國家 法令, 各種 規定, 協同農場의 基準 規約을 嚴守하고 勞動 規律을 自覺的으로 지키며 勞

動生産 能率과 生産文化를 높이며 協同農場의 管理 運營과 工場, 企業所, 職場의 企業管理 運營 및 勞動保護 安全事業에 主人답게 參加하며 國家計劃을 完遂 및 超過 完遂하도록 組織 指導하며, 農業部門 勤勞者들의 勞動 條件과 生活條件을 부단히 改善하기 위하여 努力한다.

⑦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들이 國土와 資源을 所重히 여기며 土地 및 設備와 勞動 道具를 主人답게 管理하고 國家 및 協同財產을 愛護 節約하며 나라와 協同農場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한다.

⑧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들이 國家와 組織의 秘密을 嚴守하고 恒常 革命的 警覺性을 높이며 怨讐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 農村을 堅決히 保衛한다.

⑨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 初級 幹部들과 同盟隊列을 튼튼히 꾸리며 初級 同盟 組織들의 事業과 同盟員의 同盟生活을 直接 組織 指導하며 群衆路線을 貫徹하여 同盟員들과 農業部門 勤勞者들을 黨 周圍에 철석같이 團結시킨다.

⑩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靑山里 精神, 靑山里 方法을 徹底히 具現하여 事業體系를 確立하고 事業方法을 부단히 改善하며 初級 同盟 組織들의 事業을 日常的으로 指導 幫助한다.

⑪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들을 登錄하고 初級 同盟 組織의 組織과 解體를 承認하며 同盟組織들과 同盟員들에 대한 表彰 事業을 組織 進行하며 自己 事業 定型을 上級同盟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第 6 章 同盟의 基層組織

43. 同盟 基層組織은 初級團體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들의 同盟生活의 據點이며 農業部門 勤勞者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養하여 黨 周圍에 묶어 세우며 黨 政策과 上級同盟의 決定을 直接 執行하는 戰鬥單位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 3名 以上 있는 協同農場과 國營 農牧場 및 農村經理에 直接 服務하는 工場, 企業所, 機關, 職場, 農村里에 있는 學校, 診療所, 幼稚園, 託兒所, 商店 및 便宜 奉仕 部門들에 組織한다.

44. 初級團體의 最高機關은 初級團體總會이다. 初級團體總會는 1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45. 初級同盟組織의 形式은 다음과 같다.

① 同盟員 100名이 못되는 單位에는 初級團體를 組織한다. 初級團體 밑에는 同盟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② 同盟員 100名 以上の 單位에는 初級同盟委員會를 組織한다. 初級同盟委員會 內에는 執行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同盟委員會의 規模가 크거나 地域的으로 널리 分散되어 있는 경우에는 傘下의 部門別 單位에 必要에 따라 部門同盟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同盟委員會와 部門同盟委員會 밑에는 部門別로 初級團體와 같은 權限을 가지는 分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協同農場 作業班에는 同盟員이 100名 以上の 경우에도 分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分初級團體 밑에

는 同盟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③ 以上の 組織形式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道(直轄市)同盟委員會의 批准 밑에 實定에 맞는 組織形式을 取할 수 있다.

46. 同盟分組는 初級團體(分初級團體)의 決定에 의하여 組織하거나 解體하며 初級團體(分初級團體), 初級同盟委員會, 部門同盟委員會를 組織하거나 解體하는 것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또는 그와 同等한 權限을 가진 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47. 初級同盟組織에서는 1年을 期間으로 하는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同盟員 15名 以上이 있는 初級團體(分初級團體)에서는 委員會를 選舉하고 그 委員會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同盟員 10名 이 못되는 初級團體(分初級團體)에서는 委員會를 選舉하지 않고 初級團體(分初級團體)委員長을 選舉하며 必要에 따라 副委員長들을 選舉할 수 있다. 初級同盟委員會는 總會 또는 代表會에서 選舉하며 그 委員會에서 執行委員會와 委員長 및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48. 初級同盟組織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 黨的 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고 黨에 무한히 忠實하도록 教養하며 그들이 黨政策, 金日成同志의 教示와 그를 實踐하기 위한 上級同盟의 決定執行을 組織하고 貫徹한다.

② 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階級 教養을 基本으로 하는 共產主義 教養을 組織 進行함으로써 그들을 帝國主義와 地主, 資本家 階級을 憎惡하고 搾取制度를 反對하며 社會主義制度를 堅決히 擁護하고 發展시키도록 教養하며 勞動階級の 革命精神을 所有하고 共產主義 思

想으로 튼튼히 武裝하도록 한다.

③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個人 利己主義와 小所有者的 根性을 清算하고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勞動을 사랑하고 共同財産을 愛護하며 消極성과 保守主義를 克服하고 새것에 敏感하며 勝利에 대한 確固한 信心을 培養하고 그들을 繼續 革新, 繼續 前進하는 革命的 樂觀主義로 充滿되도록 튼튼히 武裝시켜야 한다.

④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로 하여금 高尚한 共產主義的 道德 品性을 所有하고 眞實하게 生活하며 同志를 사랑하고 禮節이 바르며 謙遜하고 素朴하며 一切 安逸하고 解弛한 現象들과 온갖 낡은 習慣들을 버리고 日常生活에서 儉素하며 功名을 虛風을 버리고 率直하도록 教養한다.

⑤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을 農村에서 水利化, 機械化, 電氣化, 科學化를 促進시키는데 積極 參加시키며 先進 科學技術의 成果를 廣範히 導入 一般化하고 創意 考案, 發明 및 合理化 運動을 強力히 組織 展開하며 技術革新을 일으키고 集約的 營農方法을 繼續 發展시키며 單位 當 收穫高를 높이고 農業生産을 不斷히 長成시키며 農業部門 勤勞者들의 生活을 裕足하게 하고 그들을 고된 勞動에서 完全히 解放하도록 하기 위한 事業을 組織 進行한다.

⑥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一般 知識 水準과 技術, 文化 水準을 急速히 높이며 教育, 保健, 住宅 條件 등 各種 文化 厚生施設을 充分히 갖추고 그것을 積極 愛護 管理하도록 하며 農村을 文化 衛生的으로 더 잘 꾸리고 낡은 生活樣式과 因習을 清算하고 文

明하게 生活하도록 하며 群衆文化事業과 體育事業을 廣範히 組織 進行하도록 한다.

⑦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自力 更生의 革命的 旗幟 밑에 社會主義 競爭과 千里馬 作業班 運動을 廣範히 組織 展開하여 集團的 革新을 일으키며 그들의 創造的 熱意와 才能을 最大限으로 發揮 시키고 온갖 豫備와 可能性들을 積極 探究 動員하며 모두가 共產主義的으로 일하고 배우며 生活하도록 한다.

⑧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이 - 國家 法令과 各種 規定, 協同農場의 基準 規約을 嚴守하고 勞動 規律을 自覺的으로 지키며 勞動生産 能率과 生産文化를 높이며 協同農場의 管理 運營과 工場, 企業所, 職場의 企業 管理 運營에 主人답게 參加하며 國家計劃을 完遂 및 超過完遂하도록 한다.

⑨初級同盟組織들은 農業部門에서 社會主義 分配原則이 正確히 實施 되도록 하며 勞動 保護 安全事業에 主人답게 參加하며 農業部門 勤勞者들의 勞動條件과 生活條件을 不斷히 改善하고 그들에 대한 黨과 政府의 惠澤이 正確히 돌려지도록 努力한다.

⑩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이 國土와 資源들을 所重히 여기고 土地 및 設備와 勞動 道具를 主人답게 管理하며 國家 및 協同財産을 積極 愛護 節約하고 나라와 協同農場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한다.

⑪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員들이 國家와 組織의 秘密을 嚴守하고 항상 革命的 警覺性을 높이며 顛覆된 搾取階級과 敵對分子들의 破壞 暗

害 策動을 제때에 暴露 粉碎하며 怨讐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 戰
取物을 堅決히 固守하도록 한다.

⑫ 初級同盟組織들은 同盟 初級 일군 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政治 實務水準을 不斷히 높이며 同盟員들의 同盟生活을 組織하며 그
들에게 分공을 주고 同盟員들이 革命課業 遂行을 위하여 항상 움직
이도록 하며 黨의 群衆路線을 徹底히 貫徹시켜 同盟員들과 農業部門
勤勞者들을 黨 周圍에 철석같이 團結시킨다.

⑬ 初級同盟組織들은 靑山里 精神, 靑山里 方法을 徹底히 貫徹하여 事
業體系를 確立하고 事業方法을 不斷히 改善하며 매시기 자기 앞에 提
起되는 課業들을 自體實情에 適應하게 自立的으로 組織 執行하며 同
盟組織 思想事業과 同盟課業 遂行에서 自己의 戰鬥力을 부단히 높인
다.

⑭ 初級同盟組織들은 加盟 請願者들을 同盟에 받아 들이며 事業과 生
活에서 模範的인 同盟員들의 表彰을 推薦하며 規律을 違反한 同盟員
들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同盟員들의 要求와 申訴를 제때에 解決하여
주며 자기 事業 定型을 上級同盟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盟費를 받
는다.

第 7 章 盟 費

49. 同盟員은 다음과 같이 盟費를 바친다.

協同農場員은 每月 30 전(勞動黨員과 社勞靑員은 每月 10 전)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은 每月 自己 收入의 1 퍼센트

50. 農業勤勞者同盟에 加盟할 때 加盟金은 30 전으로 한다.

6. 朝鮮民主女性同盟 (女盟)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北傀 唯一의 勞動党的 御用 女性团体로 各種 政治學習活動을 통한 教養事業 遂行
- 各種 增産運動, 친리마運動等을 통해 女性들을 모든 勞力運動에 組織 動員

2) 創立日字 1945.11.18

3) 主要沿革

- 1945.11. 北朝鮮 民主 女性同盟 創立
- 1951. 1. 南北朝鮮 女性同盟 統合,
朝鮮民主 女性同盟으로 改稱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金 聖 愛 (委員長)

2) 關係 主要人物

姜 占 淑 (副委員長), 李 秀 月 (書記長)

3) 傘下組織

- 道 (直轄市), 市 (區域) 郡 委員會, 里委員會, 職場初級委員會,

4) 盟員數

約 270 萬名

5) 組織基盤

- 18歲以上の 모든 女性 加入義務

다. 特記事項

- 1946.10. 世界 民主 女性聯盟에 加入

라. 綱領 및 規約

1) 綱 領

1. 우리는 民主主義的 女性과 大同團結하여 金日成將軍이 發表한 20個政綱을 그 基礎로 한 朝鮮 民主主義政權樹立을 爲해 總 力量을 集中함.
2. 女性에게 平等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준 北朝鮮委員會의 政綱을 支持하며 이 榮譽를 全朝鮮 女性들에게 드리기 爲하여 奮 闘함.
3. 우리는 民主建設을 破壞하는 一切 賣國分子, 親日分子, 民族叛 逆者를 撲滅하기 爲해 奮闘함.
4. 朝鮮文化의 向上과 政治 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爲해 奮闘함.
5. 女性의 文盲退治와 生活改善을 爲해 各 文化運動과 産業復興 에 積極 參加함.
6. 女性의 國家的 擁護를 要求함.
7. 封建的 道德因習과 迷信打破를 爲해 努力함.

7.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社勞青)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勤勞青年·學生組織體로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擁護, 大衆에게 侵透시키는 勞動黨의 후비대
- 各種 增産運動, 青年作業班運動, 千里馬運動을 通해 勤勞青年·學生들을 모든 勞力競爭運動에 組織 動員

2) 創立日字 1946.1.17

3) 主要沿革

- 1946.1. 北朝鮮民主青年同盟創立
- 1951.1. 南北朝鮮民主青年同盟統合, 朝鮮民主青年同盟 結成
- 1964.5. 朝鮮民主青年同盟 第5次大會에서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으로 改稱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李榮洙(委員長)

2) 關係主要人物(幹部)

金蒼龍(副委員長), 南在煥(副委員長)

3) 傘下組織

-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政權機關, 教育文化保健機關, 人民軍隊 및 其他單位)

4) 總員數 約 270 萬名

5) 組織基盤

- 滿 14-30 歲까지의 青年學生加入

다. 特記事項

- 1946.6. 世界民主青年聯盟에 加入

라.綱領 및 規約

1) 綱 領

北朝鮮民主青年同盟은 青年들의 大衆的 社會團體이다. 北朝鮮民主青年同盟은 都市와 農村의 廣範한 先鋒的 民主青年들을 自己隊列에 團結시킨다.

北朝鮮民主青年同盟의 盟員은 自己 祖國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治, 經濟 및 文化發展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鬪爭함을 自己의 最大 任務로 認定한다.

北朝鮮民主青年同盟은 그 實踐活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課業을 遂行한다.

1. 本 同盟은 盟員과 全體 青年들에게 政治的 自覺과 全面的인 文化水準을 提高 向上시키기 爲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그들이 祖國 民主建設에 對한 無限한 忠誠心과 自己人民에 對한 愛護思想을 培養한다. 本 同盟은 우리 祖國의 民族的 再生을 沮害하는 反動的 日帝 및 封建的 思想殘滓를 青年들의 意識에서 根絶시키기 爲하여 鬪爭한다.

本 同盟은 青年들에게 미치는 反動的 反人民的 帝國主義思想의 腐敗한 影響을 反對하여 鬪爭하며 動勞者들의 先進的이며 科學的인 進歩的 民主主義思想으로 青年들을 教養한다.

2. 本 同盟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政府와 그 政綱周圍에 全體 民主青年을 結束시키며 青年들의 鬪志를 民主改革의 全朝鮮的 鞏固擴大와 富強한 統一的 民主主義 獨立國家인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을 爲한 鬪爭에로 引導한다.

3. 本 同盟은 北朝鮮諸政黨 社會團體로 構成된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에 屬하며 民主改革의 全朝鮮的 實施와 그 擴大鞏固化를 期하는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의 모든 施策을 全적으로 支持하며 그 實現을 爲하여 鬪爭한다.

4. 本 同盟은 우리 國家의 基本法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의 모든 原則을 徹底히 實施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5. 本 同盟은 民族經濟를 復興發展시키며 그것을 朝鮮民主主義 自立獨立國家의 經濟로 轉換시키기 爲하여 積極 鬪爭한다.

6. 本 同盟은 靑年들에게 우리 祖國의 福利와 繁榮을 爲한 勞力에 對한 愛着心を 培養한다. 本 同盟은 靑年들을 生産增産競爭에 積極 網羅시키며 人民經濟의 各 分野에서의 生産能率의 正常的 提高를 助成하며 先進技術과 作業의 先進方法을 獲得함에 靑年들을 幫助한다.

7. 民主主義的 民族文化의 復興과 今後 發展을 爲한 鬪爭은 本 同盟의 가장 重要한 課業의 하나이다.

本 同盟은 靑年들의 全面的 文化水準의 向上을 促進시키며 또 靑年들의 體力과 精神을 鍛鍊하는 大衆的 體育文化를 率先하여 發展시킨다.

8. 本 同盟은 南朝鮮靑年들도 北朝鮮靑年들과 같이 同一한 自由와 權利를 政治, 經濟 및 文化生活部門에서 保障받도록 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9. 朝鮮人民의 民主主義共和國의 擁護는 愛國者들의 神聖한 義務로 된다. 本 同盟은 人民軍隊의 服務를 高尚한 榮譽와 名譽의 義務로 認定하면서 人民軍隊를 熱烈히 사랑하는 精神으로 靑年들을 教養한다. 本 同盟은 靑年들에게 軍事知識과 軍事技術을 所有하도록 幫助한다.

10. 北朝鮮民主靑年同盟은 世界民主靑年同盟의 政綱을 全幅적으로 支持하며 國際主義 精神으로 靑年들을 教養하며 朝鮮靑年들과 世界民主靑年들과 爲先 全世界民主靑年들의 先鋒隊인 「쏘베트」靑年들과의 團結의 鞏固를 全力을 다하여 協助한다.

本 同盟은 人民의 鞏固하고 長久한 民主主義的 平和를 爲하여 民主와 進歩를 爲하여 反動과 「파시즘」을 反對하는 그들의 鬪爭에서 世界의 自由를 愛護하는 모든 人民들에게 積極적으로 援助하도록 靑年들을 組織한다.

2) 規 約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우리나라 靑年들의 共產主義的 大衆團體이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朝鮮勞動黨의 戰鬪的 後備隊이며 金日成同志의 指導 밑에 組織 전개된 抗日武裝鬪爭의 영광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한 共產主義建設의 交代者이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朝鮮勞動黨의 領導 밑에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범위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課業을 實現하고 社會主義,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靑年들을 우리 黨의 思想體系로 튼튼히 武裝시키고 黨中央委員會를 목숨으로 지키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무조건 擁護하고 貫徹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靑年들을 自力更生의 革命的 旗幟를 높이 들고 千里馬運動의 大高潮를 계속 堅持하며 技術革命, 文化革命, 思想革命을 促進시켜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더 잘, 더 빨리 建設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社會主義建設의 모든 戰線에서 靑年들이 어렵고 힘든 중요한 모퉁이를 맡아 나서며 技術革新運動을 광범히 전개하며 共產主義的勞動의 模範을 創造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우리 人民의 革命的 戰取物을 守護하며 社會主義祖國을 怨讐들의 侵害로부터 튼튼히 保衛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靑年들을 黨과 革命에 무한히 忠實하며 智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形의 人間으로 教養한다.

靑年들 속에서 學習氣風을 세우고 그들에게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과 우리 黨政策, 金日成同志의 勞作을 깊이 研究 체득시키며 先進

科學技術과 지식을 배우도록 한다.

靑年들을 共產主義 思想과 우리黨의 革命傳統으로 튼튼히 武裝시켜 階級的 怨讐를 미워하고 帝國主義와 地主, 資本家制度를 반대하며 革命의 終극적 勝利를 爲하여 鬪爭하도록 教養한다. 靑年들 속에 主體를 세우며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를 反對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 路線을 固守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靑年들에 依한 共產主義 道德教養을 強化하며 集團과 集團 同志를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儉朴하게 사는 革命的 生活 氣風을 세우도록 한다.

靑年들이 革命的 樂觀主義와 創造的 精神으로 充滿되고 미래를 사랑하며 革命의 勝利를 굳게 믿고 어떠한 어려운 고비라도 용감하게 뚫고 나가는 굳센 革命精神을 가지도록 教養한다.

우리 民族의 悠久한 文化遺産을 繼承 發展시키며 靑年들이 文化藝術的 素養을 높이고 풍부한 情緒를 소유하도록 教養한다.

靑年들 속에서 群衆體育과 體育技術을 發展시키며 그들의 體力을 부단히 鍛鍊하여 勞動과 國防에 믿음직하게 準備시킨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南半部를 美帝國主義 侵略者들과 그 앞잡이들의 反動統治에서 解放하고 祖國의 완전한 統一獨立을 達成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共和國 南半部の 勞動靑年, 學生靑年들을 비롯한 各계各층 靑年들과의 統一戰線을 강화하며 그들의 과거 생활과 政治的 견해 信仰의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民族의 利益을 擁護하며 祖國의 自

主的 統一을 念願하는 모든 愛國靑年들과 굳게 團結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靑年들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精神으로 教養한다. 社會主義國家와 모든나라 勤勞靑年들과의 國際主義的 團結을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의 統一獨立을 支持聲援하는 나라 靑年들과의 親善을 強化하여 帝國主義를 반대하고 民族的 獨立을 위하여 鬪爭하는 各國 靑年들의 鬪爭을 적극 支持聲援하며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를 公고히 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우리 黨의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하며 各 界 各층 靑年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養 改造하여 黨周圍에 튼튼히 묶어 세운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모든 事業에 政治事業을 先行시키며 事業體系를 確立하고 事業方法을 부단히 改善하며 同盟 일꾼들이 革命的 群衆觀點과 人民的 事業作風을 所有하도록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同盟內 民主主義를 高度로 發揚시키며 강철같은 規律을 세우고 同盟의 戰鬥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朝鮮勞動黨의 指導밑에 事業한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中央委員會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의 指導를 받으며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地方組織들은 該當 地方黨 組織들의 指導를 받는다.

朝鮮勞動黨에 入黨하는 것은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員의 最高榮譽이다.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同盟員이 入黨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추

도록 教養한다.

第 1 章 .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員

1.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員으로는 滿 14 歲부터 滿 30 歲까지의 青年으로서 同盟의 綱領과 規約을 承認하고 그것을 實踐하기 위하여 鬪爭하며 同盟의 일정한 組織에서 熱誠的으로 事業하며 規定된 盟費를 바치는 모든 青年들이 될 수 있다.

滿 30 歲가 넘게되는 同盟員이 계속 同盟員으로 生活할 것을 要求한다면 1~2年 더할 수 있다.

同盟員이 朝鮮勞動黨에 入黨하면 그가 同盟組織의 指導的 位置에서 事業하거나 執行機關 成員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盟에서 除名된다.

2. 加盟은 개별적으로 하되 그 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에 들어오려는 青年은 加盟請願書와 少年團 團委員會 및 同盟員 1名의 加盟保證書를 해당 初級團體에 提出하여야 한다.

少年團 團委員會의 保證書가 없는 경우에는 同盟員 2名의 加盟保證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加盟保證人은 保證한 내용에 대하여 同盟組織 앞에 責任진다.

② 加盟은 初級團體 總會에서 加盟請願者의 參加밑에 討議 決定한다. 이 總會에서 加盟請願者는 組織과 同志들 앞에 다음과 같은 盟誓를 하여야 한다. 『나는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員으로서 항상 朝

鮮勞動黨과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同志에게 無限히 忠直하며 革命先輩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祖國의 統一獨立과 社會主義, 共產主義의 終국적 勝利를 위하여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것을 組織과 同志들 앞에 嚴肅히 盟誓합니다。」

加盟決定은 市(區域)·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은 후에야 效力을 發生한다. 市(區域)·郡同盟委員會는 初級團體가 決定한 加盟問題를 1개월 안에 審議하여야한다.

③ 加盟年月日은 初級團體 總會에서 加盟을 決定한 날로 한다.

3. 어느 한 同盟組織의 同盟員이 다른 同盟組織에 移動하면 그는 移動하여 간 同盟組織의 成員으로 登錄한다. 同盟員의 移動은 同盟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約에 따라 處理한다.

4. 同盟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① 同盟員은 祖國의 統一과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을 위하여 鬪爭한다.

② 同盟員은 勞動黨員의 模範을 따라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擁護하고 결사적으로 貫徹하며 黨政策을 일상적으로 解釋 宣傳하고 黨의 붉은 教養者가 되어야 한다.

③ 同盟員은 우리 黨의 革命傳統을 길이 研究體得하고 항상 革命先輩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살아야 한다.

④ 同盟員은 社會主義建設에서·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國家法 令과 勞動規律을 지키고 企業管理運營에 적극 參加하며 國家 計劃을 完遂 및 超過 完수하여야 한다.

⑤ 同盟員은 원수들의 侵害로부터 社會主義 祖國을 保衛하며 國家秘密을 嚴守하고 항상 革命的 警覺性을 높여야 한다.

⑥ 同盟員은 政治理論 實務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主

義와 黨政策, 金日成同志의 勞作을 깊이 研究하며 先進科學技術 등 豐富한 知識을 가져야 한다.

⑦ 同盟員은 勞動階級の 思想으로 武裝하며 美帝와 日帝를 비롯한 帝國主義者들과 地主 資本家 制度를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여야 한다.

⑧ 同盟員은 高尚한 共產主義的 道德品성을 지녀야하며 組織과 集團과 同志를 사랑하고 禮節이 밝으며 安逸하고 浮華한 現象들과 온갖 낡은 부르주아 生活習性を 反對 排擊하며 勞動에서 模範이 되고 檢박하게 살아야 한다.

⑨ 同盟員은 祖國과 人民을 熱烈히 사랑하며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國家와 社會의 共同財産을 소중히 하고 아껴야 한다.

⑩ 同盟員은 文化 藝術的 素養을 높이며 生活을 文化 衛生的으로 하여야 한다.

⑪ 同盟員은 體力을 부단히 鍛鍊하며 體育技術을 發展시키고 勞動과 國防에 믿음직하게 準備되어 있어야 한다.

⑫ 同盟員은 同盟組織生活을 誠實히 하며 同盟會議에 빠짐없이 參席하여 問題討議에 적극 參加하며 組織이 준 委任과 分工을 철저히 遂行하며 자기 生活을 정상적으로 總和하여야 한다.

⑬ 同盟員은 同盟 規律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同志들의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缺陷을 批判하며 자기 缺陷을 대담하게 고쳐야 한다.

⑭ 同盟員은 少年團員들의 學習과 生活, 健康을 일상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5. 同盟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① 同盟員은 同盟會議와 同盟出版物을 통하여 同盟決定과 同盟事業에 대한 實務的 討議에 自由롭게 參加할 수 있다.

② 同盟員은 各급 同盟指導機關選舉에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③ 同盟員은 同盟會議에서 正當한 理由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同盟員, 어떤일꾼, 同盟指導(執行) 機關이든지 批判할 수 있다.

④ 同盟員은 자기의 活動과 事業에 대한 問題를 討議 決定하는 同盟會議에 參加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⑤ 同盟員은 同盟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同盟委員會에 申訴와 請願을 할 수 있으며, 그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申訴와 請願을 받은 各級 同盟指導機關은 그것을 신속 정확히 解決하여야 한다.

6.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은 社會主義建設과 祖國保衛에서 특출한 功勳을 세우고 同盟生活에서 模範이 된 同盟團體와 同盟員들을 表彰한다. 表彰은 同盟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에 따라 한다.

7. 同盟 規律을 어기었으나 過誤를 저지른 同盟員에 대하여는 教養과 同志的 批判으로 고쳐 주어야 한다.

過誤의 정도에 따라 警告, 嚴重警告의 責罰을 줄 수 있으며 黨과 革命에 嚴重한 損失을 준 同盟員은 黜盟시킬 수 있다. 특히 黜盟에 대한 결정은 저지른 過誤의 근원과 動機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慎重히 하여야 한다.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以上 同盟生活에 參加하지 않거나 盟費를 바

치지 않는 同盟員은 自動的으로 同盟대열에서 除名되는 것으로 認定하며 初級團體는 이에 대한 決定을 採擇하여 市(區域)·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8. 責罰은 원칙적으로 해당 同盟員이 속한 初級團體總會에서 本人을 參加시키고 討議決定한다.

同盟員에게 責罰을 줄 데 대한 初級團體의 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최종적 批准을 받아야 한다.

同盟員을 黜盟시킬 데 대한 初級團體總會 決定은 道(直轄市), 郡同盟委員會가 最終的으로 批准한 후에야 效力을 가진다. 黜盟이 最終으로 批准되기 전에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同盟員의 盟員證을 回收하지 못하며 그를 同盟生活에 계속 參加시켜야 한다.

9. 同盟 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하며,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委員과 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해당 同盟委員會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10. 黜盟 또는 責罰을 받은 同盟員은 그것이 不當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同盟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同盟委員會에 다시 審議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各級同盟委員會는 責罰을 받은 同盟員의 제기를 接受한 날부터 1個月 안에 處理하여야 한다.

11. 責罰을 받은 同盟員이 그 후 生活에서 過誤를 고쳤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責罰을 벗겨 주어야 한다. 責罰을 벗겨줄 데 대한 初級團體總會의 決定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同盟中央委員會委員과 候補委員,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

員會委員과 候補委員에게 준 責罰을 벗겨주는 問題는 責罰을 준 該當級 同盟委員會에서 決定한다.

第 2 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12. 同盟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原則에 의하여 組織한다.

① 各級 同盟 指導機關은 下部에서 上部까지 民主主義的으로 選舉한다.

② 各級 同盟指導機關은 選舉받은 組織앞에 자기의 事業을 정기적으로 總和報告한다.

③ 同盟員은 同盟組織에 服從하며,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同盟組織은 上級同盟組織에 服從하며, 全體同盟組織은 同盟中央委員會에 服從한다.

④ 下級同盟組織은 上級同盟組織의 決定을 義務的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同盟組織은 下級同盟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檢閱한다.

13. 各級 同盟委員會의 活動의 基本은 集體的 指導이다. 各級 同盟委員會는 委員들의 役割을 높이며 모든 活動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委員들의 集體的 知慧와 創發性에 의거하여 討議 解決하며 여기에 個人 責任制를 밀접히 結合시켜야 하며 일단 討議 決定된 問題는 개별적 일꾼들에 의하여 修正 또는 왜곡하거나 그 執行이 지연되는 것을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14. 同盟組織은 地域的 또는 生產的 單位에 따라 組織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同盟組織은 그 地域의 일부를 擔當한 모든 同盟組織

들에 대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되며 한 部門의 全體事業을 담당한 同盟組織은 그 部門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同盟組織들에 대하여 上級同盟組織으로 된다.

15. 各級 同盟組織은 해당地域 또는 部門에서 提起되는 問題를 具體的 實情에 따라 自立的으로 討議 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決定은 同盟規約과 上級同盟委員會의 決定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6. 各級 同盟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大會이며 大會와 大會 사이에는 大會가 選舉한 同盟中央委員會이다.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해당 代表會이며 代表會와 代表會 사이에는 代表會가 選舉한 해당 同盟委員會이다.

17. 同盟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數는 大會에서 결정한다.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委員 및 候補委員數와 初級同盟 組織의 執行機關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基準에 따라 해당 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決定한다.

18. 各級 同盟指導機關은 秘密投票로 選舉한다. 立候補者들에 대한 投票는 個別的으로 한다. 各級 同盟指導機關들의 選舉는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한 選舉細則에 따라야 한다.

19. 同盟 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委員들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全員會議에서 缺員된 數만큼 該當同盟委員會 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경우에 따라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는 委員總數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 缺員된 人員을 候補委員이 아닌 사람들 가

운데서 補選할 權限을 가진다. 上級同盟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缺員된 下級同盟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들을 任命하여 派遣할 수 있다.

20.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는 자기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該當 同盟委員會委員 또는 候補委員을 同盟指導機關成員에서 召還할 權限을 가진다.

21. 同盟大會 혹은 代表會에 보낼 代表者는 한級 낮은 同盟組織의 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選舉한다. 大會代表者의 選出比率은 同盟中央委員會가 規定하며 代表會代表者의 選出比率은 해당 同盟委員會가 規定한다.

22. 同盟 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候補委員은 해당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權만 가진다.

23. 同盟會議는 해당 組織에 所屬된 同盟員 또는 代表者 總數의 3분의 2 이상의 參加로서 成立되며 提起된 問題의 可決은 해당 會議 參加者들의 반수 이상의 贊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同盟員을 黜盟시키는 問題, 各級同盟委員會 委員 또는 候補委員에게 責罰을 주는 問題 그를 同盟指導機關으로부터 召還하거나 候補委員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委員을 補選하는 問題들의 決定은 해당會議 參加者들의 3분의 2 이상의 贊成을 받아야 한다.

24. 道(直轄市),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와 初級委員會는 黨의 決定, 指示와 그의 實踐을 위한 同盟의 決定執行을 討議하기 爲하여 熱成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25. 同盟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에 필요한 部署를 둔다. 部署를 두는 權限은 同盟中央委員會가 가진다.

26. 同盟中央委員會는 政治・經濟的으로 필요한 部門 또는 地域에 따라 同盟組織의 形式을 規定하고 그에 해당한 權限을 줄 수 있다. 同盟中央委員會는 特殊한 환경에서 同盟組織의 形式과 活動方法 및 其他 諸般問題들을 決定할 수 있다.

第 3 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中央組織

27. 同盟의 最高機關은 大會이다. 定期大會는 4 年에 1 回 同盟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同盟 臨時大會는 同盟中央委員會의 提議 또는 全體同盟員 總數의 3 分の 1 이상이 要求하는 경우에 召集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大會를 소집하는 날짜와 討議할 問題를 3 個月 前에 發表해야 한다.

28. 大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同盟中央委員會와 同盟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決算報告를 청취 토 의하고 承認한다.

② 同盟의 綱領과 規約을 採擇하거나 修正한다.

③ 同盟 앞에 提起되는 重要한 課業들을 討議決定한다.

④ 同盟中央委員會와 同盟中央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29.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를 6 個月에 1 回 이상 召集한다.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同盟中央委員會 常務委員會와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選舉한다.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同盟中央委員會의 이름으로 同盟의 모든 事業을 指導한다.

常務委員會 委員數는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同盟中央委員會는 幹部事業 및 기타 當面한 事業을 討議하고 執行하기 위하여 組織委員會를 選舉한다.

30. 同盟中央委員會는 大會와 大會 사이에 全同盟事業을 指導하며 每時期 黨政策과 金日成同志의 教示를 實踐하기 위한 對策과 同盟 앞에 提起되는 모든 課業을 討議 決定하고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하며 全同盟을 黨의 路線과 政策을 決死的으로 貫徹하는 戰鬥的 部隊로 꾸리며 同盟의 각종 機關을 設置하고 그 活動을 指導하며 幹部들을 배치고 教養育成하며 모든 活動에서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을 代表하며 同盟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31. 同盟中央檢査委員會는 同盟의 財政經理事業을 檢査한다.

32. 同盟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大會와 大會 사이에 同盟代表者會를 召集할 수 있다. 同盟 代表者會 代表者의 選舉節次와 代表者選出比率은 中央委員會가 規定한다. 同盟 代表者會는 同盟 앞에 提起되는 긴급한 問題들을 討議하며 자기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同盟中央委員會委員과 候補委員을 召還하고 그를 補選하거나 새로 選舉할 權限을 가진다. 同盟代表者會에서 採擇한 同盟中央委員會委員과 候補委員의 召還, 補選 또는 選舉에 대한 決定 以外の 모든 決定은 同盟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의 批准을 받아야 하며 全體同盟組織들은 그 決定을 義務的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33. 同盟中央委員會는 同盟깃발과 휘장을 制定한다.

第 4 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道(直轄市)組織

34. 道(直轄市)의 同盟 組織의 最高機關은 道(直轄市)同盟 代表會이다.

道(直轄市)同盟代表會는 2年에 1回, 道(直轄市)同盟委員會가 召集한다.

道(直轄市) 同盟臨時代表會는 道(直轄市) 同盟委員會 傘下 全體 同盟員 3분의1 以上の 要求와 道(直轄市)同盟委員會의 提議 또는 同盟中央委員會의 필요에 따라 召集한다. 道(直轄市) 同盟委員會는 道(直轄市) 同盟代表會를 召集하는 날짜와 討議할 問題를 2個月 前에 傘下同盟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5. 道(直轄市) 同盟代表會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와 道(直轄市) 同盟檢査委員會 事業決算報告를 청취 討議하고 承認한다.

②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와 道(直轄市)同盟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③ 同盟大會에 보낼 代表者를 選舉한다.

36. 道(直轄市) 同盟委員會는 道(直轄市) 同盟委員會 全員會議를 4個月에 1回이상 召集한다. 道(直轄市) 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道(直轄市) 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와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道(直轄市) 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의 이름으로 事業한다.

37. 道(直轄市) 同盟委員會는 道內 同盟組織들의 指導機關으로서의 指導的 機能과 함께 執行機關의 機能을 遂行한다. 道(直轄市) 同盟委

員會는 黨政策과 그를 實踐하기 爲한 同盟中央委員會 決定을 貫徹하며 靑年學生들과 少年들을 共產主義思想과 革命傳統으로 教養하여 黨주위에 굳게 묶어 세우며 道內 同盟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同盟組織들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하며 社會主義建設에 靑年들은 組織動員하며 자기 事業 定型을 同盟中央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道(直轄市) 同盟委員會의 財政을 管理 運營한다.

第 5 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市(區域)·郡組織

38. 市(區域), 郡同盟組織의 最高機關은 市(區域), 郡同盟大會 이다. 市(區域) 郡同盟代表會는 2年에 1回 市(區域), 郡同盟委員會가 召集한다. 市(區域) 郡同盟臨時代表會는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傘下 全體同盟員의 3분의 1 이상의 要求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提議 또는 上級同盟委員會의 필요에 따라 召集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市(區域) 郡同盟代表會를 召集하는 날짜와 討議할 問題를 1個月 前에 傘下 同盟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9. 市(區域) 郡同盟代表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와 市(區域) 郡同盟檢査委員會의 事業 決算 報告를 聽取 討議하고 承認한다.

②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와 市(區域) 郡同盟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③ 道(直轄市) 同盟代表會에 보낼 代表者를 選舉한다.

40.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를

3個月에 1回 이상 召集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市(區域), 郡同盟執行委員會와 委員長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이름으로 事業한다.

41.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每時期 黨政策과 그를 貫徹하기 위한 上級同盟의 決定을 直接 組織執行하는 同盟의 말단 指導機關이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黨政策과 그를 實踐하기 위한 上級同盟의 決定을 正確히 執行하며 靑年들 속에서 共產主義 教養과 革命傳統教養을 進行하며 社會主義建設에 靑年들을 組織動員하며 學生少年事業에 注力하여야 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初級幹部와 核心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政治實務水準을 높이며 初級 同盟組織들의 事業과 同盟員들의 同盟生活를 指導하여야 한다. 市(區域) 郡同盟委員會는 同盟員을 登錄하고 初級同盟組織들의 組織과 解體를 承認하며 同盟員의 朝鮮勞動黨入黨을 保證하며 자기의 事業定型을 同盟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市(區域) 郡同盟委員會의 財政을 管理運營한다.

第 6 章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의 基層組織

42. 同盟의 基層組織은 初級團體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들의 同盟生活의 據點이며 靑年들을 教養하여 黨周圍에 묶어 세우며 黨政策과 上級同盟 決定을 直接 執行하는 同盟의 基層組織이며 戰鬥的 單位이다. 初級團體는 同盟員 3名이상 있는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國家機關,

教育文化保健機關, 人民軍隊와 其他 모든 單位들에 組織한다. 同盟員 3名이 되지 않는 單位에는 同盟組織을 두지 않고 그 同盟員들을 가까운 同盟組織에서 生活하게 한다.

43. 初級團體의 最高機關은 初級團體總會이다. 初級團體總會는 1個月에 1회이상 召集한다.

44. 初級同盟組織의 形成은 다음과 같다.

① 同盟員 100名이 못되는 單位에는 初級團體를 組織한다. 그러나 學校部門에서는 100名 이상의 경우에도 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團體 밑에는 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② 同盟員 100名 이상의 單位에는 初級委員會를 組織한다. 그러나 農村經理部門에서는 同盟員 50名부터 里委員會 또는 初級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안에 執行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의 규모가 크거나 地域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部門別 單位에 部門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와 部門委員會의 밑에는 部門別로 初級團體와 같은 權限을 가지는 分初級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分初級團體 밑에는 分組를 組織할 수 있다.

③ 이상의 組織形式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道(直轄市) 同盟委員會 또는 그와같은 權限을 가진 同盟委員會의 批准 밑에 實情에 맞는 組織形式을 취할 수 있다.

45. 分組는 初級團體(分初級團體)의 決定에 의하여 組織하며 初級團體와 分初級團體, 初級委員會와 部門委員會를 組織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市(區域) 郡同盟委員會 또는 그와같은 權限을 가진 同盟委員會

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46. 初級同盟組織(初級委員會, 部門委員會, 初級團體, 分初級團體)에서는 1 年을 기간으로 하는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同盟員 15 名 이상이 있는 初級同盟組織에서는 委員會를 選舉하고 그 委員會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同盟員 15 名이 못되는 初級團體(分初級團體) 에 서는 委員會를 選舉하지 않고 初級團體(分初級團體)委員長을 選舉하며 必要에 따라 副委員長을 選舉할 수 있다. 初級委員會는 總會 또 는 代表會에서 選舉하며 그 委員會에서 執行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47. 初級同盟組織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靑年들을 우리 黨의 思想體系와 革命傳統으로 確固히 武裝시키 며 黨政策을 일상적으로 알려주고 그를 철저히 執行하도록 組織 動員한다.

② 靑年들을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세우며 技術革命, 文化革命, 思想革命 遂行에서 先驅者가 되게하며 나라의 살림살이에 主人답 게 參加시키고 國家財産과 社會財産을 소중히 하며 社會主義戰取物을 지키도록 組織 動員한다.

③ 同盟의 初級幹部들과 共產主義靑年核心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教 養育成하며 그 隊列을 부단히 擴大 強化하여야 한다.

④ 靑年群衆들과의 連繫를 強化하며 同盟員들의 同盟生活을 組織하 고 分工을 빠짐 없이 주어 革命課業과 同盟決定 實踐을 위하여 항 상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하며 事業방법을 부단히 改善하여야 한다.

⑤ 靑年들 속에서 階級敎養을 強化하여 帝國主義와 地主, 資本家를 미워하고 「부르조아」思想과 修正主義의 浸襲을 反對하여 鬪爭하도록 敎養하여야 한다.

⑥ 靑年들 속에서 共產主義 道德敎養을 強化하며 그들이 集團과 組織과 同志를 사랑하며 禮節이 밝고 公衆道德을 지키며 부지런히 일하고 儉朴하게 사는 革命的 生活氣風을 세우도록 한다.

⑦ 靑年들 속에서 學習을 정상적으로 組織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와 黨政策, 先進科學技術 等 豊富한 知識을 배우도록 指導 幫助한다.

⑧ 同盟員들과 靑年들 속에서 다양한 群衆文化事業을 組織하고 그들의 文化的 素養을 높이며 體育事業을 強化하여 靑年들의 體力을 단련시키고 體育技術을 發展시켜야 한다.

⑨ 加盟請願者를 同盟에 받아들이며 規律을 違反한 同盟員들에게 責任을 묻고 敎養을 強化하며 靑年들의 要求와 申訴를 제때에 解決하여 주며 자기 事業을 上級同盟組織에 正常的으로 報告하며 盟費를 받는다.

⑩ 少年團員들의 學習과 生活을 日常的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第 7 章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組織

48. 朝鮮人民軍隊內 各級同盟組織은 해당 黨委員會와 政治機關의 指導 밑에 事業한다. 朝鮮人民軍隊內 各級同盟組織들은 同盟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導書와 朝鮮人民軍總政治局의 指示에 따라 事業한다.

49. 朝鮮人民軍隊內 同盟組織들은 해당 地方同盟組織들과 밀접한 關係를 가져야 한다.

第 8 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과 朝鮮少年團

50.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少年團 團體를 組織하고 그의 活動을 指導한다.

51. 少年團 團體들은 少年들에 대한 共產主義 教養과 革命傳統教養을 強化하며 그들을 黨과 首領께 忠直하고 智德體를 갖춘 共產主義 建設의 後備隊로 教養育成한다.

52. 少年團 團體들은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中央委員會가 制定한 朝鮮少年團規定에 依하여 事業한다.

53.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各級組織들은 자기 지역내의 少年團 團體들의 事業을 指導할 義務를 지닌다.

第 9 章 盟 費

54. 同盟員은 每月 자기의 收入에 따라 다음과 같은 比率로 盟費를 바친다. 月收入 50 圓까지 1%, 月收入 50 圓 1 錢이상 100 圓까지 2%, 月收入 100 圓 1 錢이상 3%, 協同農場員은 1 個月에 30 錢 學生 其他는 1 個月에 5 錢

55. 同盟에 加入할 때 加盟金은 月收入의 2%로 하며 協同農場員은 30 錢, 學生 其他는 10 錢으로 한다.

8. 朝鮮職業總同盟 (職總)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全勞動者, 事務員의 總集結체로 勞動黨의 政策 實踐과 政權支持의 前衛隊
- 社會主義 競爭運動 等 모든 勞動制度, 勞動秩序 및 勞動者, 事務員等의 生活統制
- 勞動級數 查定權, 休養·休暇 決定權, 作業班 配置權

2) 創立日字 1945.11.30

3) 主要沿革

- 1945.11. 南韓內에 朝鮮勞動組合評議會 組織
- 1945.11. 北朝鮮 職業總同盟 創設
- 1951. 1. 北朝鮮 職業總同盟과 勞動組合 全國 評議會를 朝鮮職業 總同盟의 單一組織으로 統合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金鳳柱 (委員長)

2) 關係 主要人物 (幹部)

- 김희수 (副委員長), 김영남 (副委員長), 文炳錄 (副委員長)

3) 傘下組織

- 道 (直轄市) 委員會, 市 (區域) 郡委員會, 初級團體 委員會 (工場, 企業所 單位)

4) 傘別團體

- 朝鮮公務員職業同盟, 朝鮮水產勞動者職業同盟, 朝鮮商業일꾼職業同盟, 朝鮮教育文化일꾼職業同盟, 朝鮮金屬機械工業勞動者職業同盟, 朝鮮化學工業勞動者職業同盟, 朝鮮建設林業勞動者職業同盟, 朝鮮運輸一般勞動者職業同盟, 朝鮮鉅業 및 動力勞動者職業同盟, 朝鮮輕工業勞動者職業同盟

5) 盟員數 約 250 萬名

6) 組織基盤

- 勞動者, 事務員 加入義務

다. 特記事項

- 1947. 5. 世界職業聯盟에 加入

라. 綱領 및 規約

1) 綱領

1. 真正한 人民의 政權 共和國政府를 絶對 支持하며 北朝鮮에서 이미 實施한 諸般 民主政策 成果를 더욱 鞏固 發展시키며 人民政權을 鞏固히 하기 爲하여 鬭爭한다.
2.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을 擴大 強化하며 朝鮮을 다시 植民地 化하려고 하며 勤勞大衆의 利益을 侵害하려는 一切 反動的 企圖를 粉碎하고 親日分子 및 民族反逆者들과 鬭爭한다.
3. 『모스크바』 3 相會議의 朝鮮問題에 關한 決定을 絶對 支持하며 民主主義 人民共和國樹立을 爲하여 鬭爭한다.
4. 勞動法令을 絶對 支持하고 그 正確한 實施를 保障하여 勞動

者 事務員들의 實際 物質生活向上과 政治 文化水準의 向上 및 先進的 勞動保護의 實態를 爲하여 積極 努力한다.

5. 國家法令과 勞動規律을 嚴格히 지키고 技術向上과 勞動能率의 提高를 爲하여 積極 努力한다.

6. 人民의 所有로 된 國家財産 및 社會財産을 節約하고 保護하기 爲하여 鬭爭한다.

7. 北朝鮮과 같은 諸般 民主改革과 民主主義的 言論, 出版, 集會의 自由를 全朝鮮的으로 擴大 保障하기 爲하여 積極 鬭爭한다.

8. 朝鮮人民과 蘇聯人民의 永遠한 親善과 朝·蘇勞動階級の 兄弟的 親善을 強化하기 爲하여 積極 努力한다.

9. 國際的 職業聯盟을 絶對 支持하며 世界勞動階級の 唯一的 團結을 強化하고 世界 勞動人民들의 鞏固 鬭爭에 積極 參加한다.

9. 朝鮮記者同盟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新聞社, 放送委員會, 雜誌社 從事者들의 組織體로 勞動黨의 宣傳煽動 事業을 爲한 道具
- 新聞, 放送, 雜誌를 통한 大衆의 思想教養 事業

2) 創立日字 1946.3.10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金基南(委員長)

2) 關係主要人物(幹部)

박재우(副委員長), 金時學(副委員長)

3) 組織基盤

- 新聞社, 放送委員會, 雜誌社 從事者 加入

다. 特記事項

- 1950.9. 國際記者同盟에 加入

10. 朝鮮文學藝術總同盟 (文芸總)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北傀 文學藝術團體의 總本山
- 文學 藝術活動을 통한 勤勞人民의 共產主義 思想과 革命傳統 教養
- 金日成 唯一思想 保衛와 勞動黨의 政策遂行에로의 作家·藝術 人을 組織 動員

2) 創立日字 1946. 3. 25

3) 主要沿革

- 1946. 3. 北朝鮮文學藝術家同盟 結成
- 1951. 3. 南北中央委 聯合會議에서 朝鮮文學藝術總同盟으로 統合 組織
- 1953. 9. 全國 作家 藝術家 大會에서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을 解体, 作家同盟, 作曲家同盟, 美術家同盟으로 改編
- 1961. 3. 朝鮮文學 藝術總同盟 再結成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李箕永 (委員長)

2) 關係 主要人物 (幹部)

- 申鎮順 (副委員長), 崔榮華 (副委員長), 李冕相 (副委員長), 趙靈出 (副委員長), 作家同盟委員長 千世鳳, 音樂家同盟委員長 李冕相, 美術家同盟委員長 鄭寬徹, 寫真家同盟委員長 高竜鎮, 舞蹈家同盟委員長 金在興, 演劇人同盟委員長 이 단, 映畵人同盟委員長 李鎮淳

3) 傘下組織 加盟團體

- 道 (直轄市) 委員會, 朝鮮作家同盟, 朝鮮映畵人同盟, 朝鮮舞蹈家同盟, 朝鮮寫真家同盟, 朝鮮音樂家同盟, 朝鮮美術家同盟, 朝鮮演劇人同盟

4) 組織基盤 ○ 作家·藝術人 加入義務

다. 特記事項

- 1958. 10. 아시아, 아프리카 作家會議 加入

라. 綱領 및 規約

1) 綱領 (1947年2月 第4次 大会修正)

目的

1. 全体 文学家 芸術家들은 그 文学芸術의 創造로 民主主義 統一自主獨立國家 建設에 積極參加하며 朝鮮人民들의 祖國建設을 위한 鬪爭과 勝利와 榮譽를 高尚한 寫實主義的 方法으로 形象化하며 広範한 人民大衆을 人民的民主主義 精神으로 鼓舞 前進시키는 役割을 遂行할 것이다.
2. 文学 芸術에 있어서의 日帝的 封建的 殘滓를 掃蕩하며 祖國과 人民에게 害毒을 주는 一切의 反民主主義的 要素와 堅決히 鬪爭하며 모든 帝國主義的 反動思想과 反動文化의 誘惑과 企圖로부터 朝鮮人民을 擁護할 것이다.
3. 広範한 人民大衆속에 文学 芸術을 普及시키며 그들의 文化水準向上을 위하여 日常的 幫助를 줄것이며 社会团体 群衆文化 事業의 協助와 工場 鉱山 農村 学校 都市 其他職場의 文学芸術同好會들과 緊密한 連結을 가짐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新進 文学 芸術家의 育成을 圖謀할 것이다.
4. 文学家 芸術家間의 創造的 競争과 相互協助를 展開하여 創作의 質과 量의 長成을 積極적으로 推進시키며 科學的 先進的 思想우에서 作家 芸術家들은 그 才能과 力量을 自由롭게 發揮하여 文学 芸術의 内容 形式方法 主題에 있어 多樣性を 가지게 할 것이다.

5. 文学 芸術家들의 政治的 思想的 芸術 活動을 높이기 위한 自体 敎養과 幹部 養成事業을 展開하며 研究会 合評會等을 組織하여 具體적으로 每個文学 芸術作品과 芸術活動을 積極적으로 研究 分析함으로써 日常的으로 寫實主義에 관한 理論의 探究를 가질 것이다.
6. 朝鮮民族文学 藝術의 傳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며 그에 대한 科學的인 研究 밑에서 民族文学藝術의 批判的인 努力을 높이며 文学藝術作品의 民族的 形式에 대하여 깊은 探究를 가질 것이다.
7. 소련의 文学藝術을 비롯한 世界文学에서의 先進的인 것을 積極적으로 研究攝取하여 海外先進 文学藝術과의 交流를 活潑히 展開하며 朝鮮文学藝術의 世界的 進出을 圖謀하며 世界民主主義 文学藝術家들과의 親善을 鞏固히 할 것이다.

2) 規 約

第1章 總 則

朝鮮 文学 藝術總同盟은 作家 藝術家の 自願的 組織體인 部門別 同盟의 聯合體이며 그의 指導的 團體이다. 朝鮮文学 藝術 總同盟은 朝鮮 勞動黨의 領導下에 文学 藝術 活動을 통하여 勤勞 人民을 共產主義 思想과 革命傳統으로 敎養하는 事業을 自己의 基本任務로 한다.

朝鮮 文学 藝術 總同盟은 作家 藝術家들의 統一과 團結을 強化하고 그들을 黨 周圍에 結束시켜 革命課業 遂行에로 積極 組織 動員한다.

朝鮮 文学 藝術 總同盟은 막스 레닌主義의 理論을 創作 活動의

指針으로 삼으며 이 내용에 있어서 社會主義的이고 形式에 있어서 民族的인 우리 文學 藝術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를 唯一한 創作方法으로 한다. 朝鮮 文學 藝術總同盟은 우리나라의 悠久한 歷史를 통하여 發展한 進歩的인 民族文學 豫算과 朝鮮 프롤레타리아文學 藝術同盟의 文學 藝術 傳統 특히 1930 年代 抗日武裝 鬪爭時期的 革命的 文學藝術傳統을 繼承 發展시킨다. 朝鮮 文學 藝術總同盟은 文學 藝術 部門에서 修正主義를 反對하며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克服하고 主體를 確立하며 우리 文學 藝術의 党性, 人民性을 侵害하는 一體 反動的 부르조아 文學 藝術 思想과 堅決히 鬪爭한다. 朝鮮 文學 總同盟은 作家 藝術家들을 党的 思想的 體系로 武裝 시키기 위한 敎養事業을 進行하며 그들로 하여금 創作 活動을 통하여 黨 文藝政策을 實現하게 한다.

朝鮮 文學藝術 總同盟은 文學 藝術 各部門間的 創作的 連繫를 密接히 하며 서로 協助하여 集体的 才能과 力量을 發揮하며 創作 및 理論 問題들을 共同的으로 研究하며 創作 經驗들을 서로 交流하며 一般化하며 作家 藝術家들의 藝術的 技倆을 높이는 事業을 進行한다. 朝鮮 文學藝術 總同盟은 우리 文學 藝術의 加一層 發展을 위하여 各 生産 企業所, 農村, 漁村 등에서 廣範히 組織 運營되고 있는 文學 藝術 各種 씨클 事業들을 體系的으로 指導 幫助하며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 大衆속에서 우리 文學 藝術의 後備隊인 新人民들을 群衆的으로 選拔 育成하는 事業을 進行한다.

朝鮮 文學 藝術 總同盟은 南半部로 부터 美帝國主義的 權利와 文學 藝術 活動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 文學 藝術

總同盟은 南北朝鮮 文學 藝術團體 作家 藝術家들 間의 接觸과 文學 藝術의 交流를 實現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朝鮮 文學 藝術 總同盟은 소련을 비롯한 社會主義 陣營의 諸 國家人民과 全世界進歩的 人類가 達成한 文學藝術의 成果와 經驗들을 創造的으로 攝取하며 그들과의 國際主義的 親善團結을 強化發展시키기 爲하여 努力한다.

第2章 同盟의 組織 原則

第1條 同盟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原則에 依하여 組織되며 모든 活動은 集體的 協議制에 依하여 進行된다.

① 밑으로 부터 위에 이르기 까지 同盟 各級指導 機關은 同盟 總會 代表者 大會에서 選舉한다.

② 同盟各級 指導機關은 選舉받은 同盟團體앞에 自己 事業을 定期的으로 總和 報告한다.

③ 同盟 上級機關은 同盟 下級機關을 指導 幫助한다.

第2條 總同盟 傘下 組織體인 部門別 同盟은 文學 藝術의 部門別原則에 依하여 組織한다.

第3條 同盟各級 會議은 그 會議에 參加할 人員의 3分之2以上の 參加로서 成立되며 決定은 會議 參加者의 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採 択된다.

第4條 同盟各級 指導機關과 同盟 代表會 및 大會 代表者는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舉한다. 同盟 各級指導機關 選舉는 文學藝術 總同盟 中央委員會가 따로 規定하는 選舉 規則에 依하여 進行한다.

第5條 同盟支部 組織은 文學 藝術總同盟 道委員會에서 承認하며 同盟機關의 機構는 文學 藝術總同盟 中央委員會가 決定한다.

第 3 章 總同盟 中央組織

第 6 條 文学 芸術 總同盟의 最高機關은 全国 大会이다. 文学 芸術總同盟 全国大会는 4 年에 1 回 總同盟 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文学 芸術 總同盟 臨時大会는 總同盟 中央委員會議 提議에 의하여 또는 全盟員 半數 以上の 要請에 의하여 召集한다.

第 7 條 文学 芸術 總同盟 全国大会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文学 芸術 總同盟 中央委員會 및 中央 財政 檢査 委員會의 事業 總和報告를 聽取하고 承認한다.

② 總同盟 規約을 採択 또는 修正한다.

③ 文学 芸術 總同盟, 中央 委員會와 中央財團 檢査 委員會를 選舉한다.

④ 文学 芸術 創作 및 理論의 思想的 諸問題를 討議 決定한다.

第 8 條 文学 芸術 總同盟 中央委員會는 全国 大会 決定을 執行하며 全国 大会와 全国 大会 사이의 總同盟의 모든 事業을 指導한다.

文学 芸術 總同盟 中央委員會는 全員會議를 1 年에 1 回以上 召集한다.

第 9 條 文学 芸術 總同盟의 基本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党的 路線과 政策을 貫徹하기, 위한 同盟 團體들의 全体的 또는 每時期의 当面課業들과 文学 芸術 創作性 諸般 問題를 討議 決定하고 指導한다.

② 作家, 藝術家에 대한 思想 教養 事業과 그들의 創作的 技倆을 높이기 위한 技術 教養事業을 進行한다.

③ 勤勞 大衆속에서 文学 芸術을 大衆的으로 發展시키며 新人들

을 群衆的으로 選拔育成하는 事業을 進行한다.

- ④ 總同盟 幹部를 養成하기 위한 對策을 討議 講究한다.
- ⑤ 對外 關係에서 文學 藝術 總同盟을 代表한다.
- ⑥ 總同盟 豫算을 承認하고 同盟 財政을 管理한다.
- ⑦ 總同盟 機關紙 및 其他를 出版한다.

第10條 文學 藝術 總同盟 中央委員會 事業을 指導하기 위하여 執行委員會를 組織하며 委員長, 副委員長들을 選舉한다.

第11條 總同盟 執行委員會는 中央委員會의 委任에 의하여 同盟 指導에 必要한 決定을 採択하고 執行하며 一般行政 事務를 指導하며 同盟 部署 및 傘下機關 幹部들을 任命한다.

第12條 文學 藝術 總同盟 中央 財政檢査 委員會는 文芸總中央 財政과 傘下部門別 同盟 決定을 檢閱한다.

第13條 文學 藝術 總同盟 中央委員會는 全國大會와 全國大會사이 에 必要에 따라 全國 代表會를 召集할 수 있다..
全國大會는 總同盟안에 제기된 重要 問題들을 討議 決定하며 中央委員會 委員을 召喚 또는 選舉할 수 있다.

第4章 各部門別 同盟 組織

第14條 各 部門別 同盟은 自己 規約을 가지며 同盟의 目的과 任務, 盟員의 義務와 權利, 加盟과 離盟, 候補 盟員, 同盟의 組織과 構造, 同盟의 各級 機關, 同盟의 財政과 盟費를 規定한다.

第5章 文學 藝術 總同盟 道組織

第15條 文學 藝術總同盟 道委員會는 文學 藝術 總同盟의 末端機關이다.

第16條 文学 芸術總同盟 道委員會의 最高 機關은 道大會이다. 道大會는 2年에 1回 文学 藝術總同盟 道委員會가 召集한다.

文学 藝術 總同盟 道委員會는 大會召集 期日과 議定을 1個月前에 發表하여야 한다.

第17條 文学 藝術 總同盟 道大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① 文学 藝術 總同盟 道委員會의 事業 總和報告를 聽取 討議하고 承認한다.

② 文学 藝術 總同盟 道委員會를 選舉한다.

第18條 文学 藝術 總同盟 道委員會는 道大會와 道大會사이의 同盟事業을 指導한다.

文学 藝術 總同盟 道委員會는 全員會議를 6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第19條 文学 藝術 總同盟 道委員會의 基本 任務는 文学 藝術 總同盟 中央委員會 決定, 指示들과 創作 및 理論上 諸問題를 討議하고 執行하며 作家 藝術家들에 대한 思想 藝術 教養 事業과 新人 育成 事業을 進行하며 道委員會 財政을 管理한다.

第20條 文学 藝術總同盟 道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사이에 道委員會事業을 指導하기 위하여 委員長 副委員長등을 選舉하며 道の 實情에 따라 執行 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第6章 部門別 同盟 支部 組織

第21條 文学 藝術 總同盟 傘下 部門別 同盟의 基本 組織은 同盟 支部이다.

第22條 同盟 支部의 最高 機關은 同盟員 總會이다. 同盟員 總會는

3 個月에 1 回以上 召集한다.

第23條 同盟 支部는 同盟 上級 機關의 決定, 指示들과 創作 및 理論上 問題들을 討議하고 執行하며 作家 芸術家들에 대한 思想 芸術 教養事業과 新進 育成 事業을 進行한다.

11. 朝鮮赤十字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診療事業, 防疫事業 등의 本然의 任務와는 달리 勞動黨 統制에 依한 政治 宣傳機構로 活動
- 各種 聲明, 呼訴文을 통한 對南宣傳·煽動活動

2) 創立 日字 1946. 10. 18

3) 主要 沿革

- 1946. 10. 北朝鮮 赤十字會 創設
- 1948. 9. 北傀 政權樹立後 朝鮮赤十字會로 改稱

나. 組織 現況

1) 代表者 孫 成 弼 (委員長)

2) 關係主要人物 (幹部)

朴英時 (副委員長)

3) 傘下組織

道 (直轄市) 委員會, 市 (區域) 郡 委員會

다. 特記事項

1956. 5. 國際赤十字 聯盟 會員國으로 加入

라. 綱領 및 規約

1) 規 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는 人民들의 大衆的社會團體로서 富強한 民主主義的 朝鮮獨立國家 建設을 爲하여 積極勞力하여 國際赤十字條約에 基準하여 人民들의 保健 文化生活的 向上과 戰爭 및 災難時의 被害者 救濟事業을 實施하며 나가서는 世界平和와 安全을 爲하여 鬪爭함을 目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事業을 實施함.

1. 人民의 大衆的 衛生訓練事業
2. 診療事業
3. 防疫事業
4. 戰時 및 災難時의 被害者 救濟 事業
5. 中等 및 初等保健 幹部養成事業
6. 保健行政機關에서 實施하는 輸血事業의 協調
7. 本會目的에 適合한 其他保健文化事業.

12. 朝鮮 아시아·아프리카 團結委員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反帝·反植民主義 鬭爭을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人民들과의 連帶性を 標榜한 勞動黨 御用 團體
- 各種 聲明·談話를 통한 反韓·反美 謀略宣傳 活動

2) 創立日字 : 1956. 5.31

나. 組織 現況

1) 代表者 金鳳柱 (委員長)

2) 關係主要人物 (幹部)

朴英時 (副委員長)

다. 特記事項

- 1966. 1.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人民團結機構에 加入

13.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朝鮮委員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世界平和와 反帝·反植民主義 鬭爭을 하는 人民들과의 連帶性 標榜의 勞動黨 御用團體
- 各種 聲明 談話등을 통한 反韓·反美 謀略宣傳 活動

나. 組織現況

- 1) 代表者 金 寬 燮 (委員長)

14. 朝鮮 올림픽 委員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體育活動을 통한 外交政策 遂行의 一翼擔當
- 各種 國際會議에 代表를 派遣 共產圈 國家들과 連繫하여 韓國의 國際的 孤立化를 위한 對韓 謀略 宣傳 活動
- 스포츠關係 對南提議 및 各種 聲明, 談話를 통한 對南 宣傳 煽動 活動

2) 創立日字 1970.10.31.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金 裕 順(委員長)

2) 關係主要人物(幹部)

- 金得俊(副委員長)
- 이성길(委員)
- 이종수(委員)

다. 特記事項

- 1952. 第47次 IOC 總會에 加入企圖
- 1956. 第52次 IOC 總會에 正式加入申請-否決
- 1957. 第53次 IOC 總會

北傀 NOC 의 暫定的 認定-올림픽 參加 南北單一팀 條
件附

- 1963.10. IOC 에 加入

15 . 祖國平和統一委員會 (祖平)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4. 19 以後 南北協商論 等に 呼應키 爲해 急造한 團體로 勞動黨의 僞裝平和統一政策 宣傳團體
- 所謂 平和統一問題와 關聯된 諸方案 및 南北交流 等に 關한 研究 및 拉北漁夫洗腦活動
- 聲明, 談話, 書記局報道 등을 통한 反韓·反美 謀略宣傳

2) 創立日字 1961. 5. 13

3) 主要沿革

- 1961. 5. 洪命憲를 委員長으로 33 名의 準備委員會 結成
- 1961. 5. 結成大會 - 委員長 : 洪命憲, 副委員長 : 朴金喆 등
6 名, 中央委員 77 名

나. 組織 現況

1) 代表者 金 一 (委員長)

2) 關係 主要人物 (幹部)

洪 起 文 (副委員長)

許, 貞 淑 (副委員長)

尹 基 福 (")

全 今 哲 (")

3) 組織基盤

- 政黨·社會團體들과 各界層 人士 網羅

다. 特記事項

- 1980. 1.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金一과 總理 李鍾玉, 申鉉稿 總理를 비롯한 12 人에게 南北間 接觸 提議
- 1981. 5.~7. 尹基福(勞動黨 秘書), 許貞淑(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 書記局長), 全今哲(74. 6. 南北調節委 代辦人), 祖國平和統一 委員會 副委員長으로 確認

라. 結成大會 聲明要旨

統一의 氣運이 成熟되고 있는 此際 全政黨·社會團體代表와 世界人士들은 祖國과 民族의 將來를 念慮하는 一念으로 한 곳에 모였다. 우리들은 祖國情勢를 審議하고 三千萬人民이 渴望하고 있는 統一至上 課業을 強力히 推進할 至高한 使命을 지닌 祖國平和統一委員會를 結成할 것을 內外에 宣布한다.

祖國平和統一委員會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朝鮮人民自身の 손으로 如何한 外國의 干涉없이 民主主義的 基礎우에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하는 方法으로 成就할 朝鮮勞動黨의 始終一貫한 方案을 支持한다.

우리는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發足이 朝鮮人民의 切迫한 念願과 期

待에 完全히 合致하고 現在 成熟되어 가는 統一大業의 促進에 拍車를 加하기 爲한 推進力이 될 것을 確信한다.

우리들은 南北朝鮮의 愛國적인 諸政黨·社會團體와 個個人士들이 政見이나 思想의 差異를 超越하여 于先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實現시키기 爲하여 全民族的 鬪爭에 모든 것을 服從시켜야할 것을 主張한다. 우리들은 統一의 大業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呼訴한다.

外勢의 干涉을 一切 排除하고 朝鮮人民自身の 손으로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기 爲하여 南北間의 接觸과 協商은 南北朝鮮의 政府當局이나 朝鮮人民共和國最高人民會議과 韓國國會間에도 必要하며 政黨, 社會團體, 實業家, 教育, 文化, 藝術, 體育界 또는 個個의 人士間에도 必要하다. 그 範圍나 規模問題보다 于先 接觸하고 協商하자.

서로 相對方을 理解하고 民族的 利益에 合致하며 統一促進에 도움이 되고 雙方에 同一한 利害關係가 되는 有益한 事業을 이를 可能性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이 一致한 共同步調로서 나아 간다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妨害하는 美帝國主義의 侵略的 策動은 반드시 粉碎될 것이다.

16.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6.25 당시 拉北人士들로 組織한 偽裝平和 攻勢를 위한 団体
- 對南 宣傳煽動에 必要한 出版物 創作 및 聲明·談話發表
- 間諜 南派時 接線用 便紙쓰기 事業

2) 創立日字 1956.7.2

3) 主要沿革

- 1956.7. 安在鴻, 趙素昂, 尹琦燮, 吳夏英等 拉北人士들을 發起人
으로 結成一最高委員: 趙素昂, 安在鴻, 吳夏英, 常任委
員: 조현영, 朴烈, 宋虎聲等 20 余人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조현영 (最高委員兼 書記局長)

2) 關係 主要人物 (幹部)

- 박보림 (常務委員)
- 최태규 (")

다. 特記事項

- 1958年 後半 拉北人士들에 대한 大量 肅清으로 有名無實한 団

체로 轉落

- 1981.7. 처음으로 結成 紀念報告會 開催—金日成의 祝賀文을
林春秋 伝達
- 8. 在北平和統一 促進 協議會, 南韓의 各 政黨 및 各界 各層
人士들에게 8.15 기해 便紙

17.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가. 機能 및沿革

1) 機能

- 世界平和와 反帝·反植民主義 標榜의 勞動党的 御用团体
- 反韓·反美的인 各國의 平和 標榜团体와 連繫下에 反韓·反美 宣傳 活動

2) 創立日字 1949. 3. 24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鄭斗煥 (委員長)

다. 特記事項

- 1945. 9. 世界平和 理事會에 加入

18. 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 (祖戰)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對南偽裝平和統一攻勢 및 南韓 赤化事件造成 分割遂行의 勞動黨 前衛組織
- 聲明, 談話等을 通한 反韓·反美 謀略宣傳

2) 創立日字 1949. 6. 27

3) 主要 沿革

- 1946. 2. 南朝鮮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 結成 — 議長團
: 呂運亨, 許 憲, 朴憲永, 金元鳳
- 1946. 7. 北朝鮮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 結成 — 議長團
: 金日成, 金科奉, 金達鉉, 金元鳳, 金昌俊 等
- 1949. 5. 南勞黨等 北朝鮮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에 對해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結成 提議
- 1949. 5.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準備委員會 會合
~ 6.

나. 組織 現況

1) 代表者 : 許 貞淑 (書記局長)

2) 關係主要人物 (幹部)

- 中央委員會 議長團 7名 (洪起文, 林春秋, 鄭東喆, 金萬金, 楊亨燮, 李克魯, 鄭斗煥)

中央委員：77名

- 常任委員會 委員長：康良煜 常任委員：23名

3) 加入團體

-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 朝鮮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 朝鮮記者同盟, 朝鮮文學藝術總同盟, 朝鮮民主女性同盟, 朝鮮農業勤勞者同盟,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朝鮮職業總同盟, 朝鮮赤十字會, 朝鮮올림픽委員會, 朝鮮民主法律家協會, 朝鮮學生委員會,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祖國平和統一委員會, 朝鮮 仏教徒聯盟, 朝鮮基督教徒聯盟, 朝鮮天道教會中央指導委員會, 朝鮮天道教青友黨, 朝鮮社會民主黨,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朝鮮工業技術總聯盟, 朝鮮勞動黨

다. 特記事項

- 1973. 7.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民主共和黨, 新民黨等 政黨·社會團體와 海外僑胞團體包含 大民族會議 召集 提議
- 1981. 8.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 第67次會議, 政黨·社會團體 聯合聲明採択 - 民族統一促進大會 召集 提議

라. 綱領 및 規約

1) 綱領

獨逸파시즘과 日本帝國主義의 擊滅로 第2次 世界大戰은 終局되었으며 그 結果 朝鮮은 日本帝國主義의 基盤에서 解放되었다.

朝鮮人民에게는 自己의 民族自決權을 實踐하며 統一的 朝鮮民主主義

獨立國家를 樹立할 수 있는 可能性이 造成되었다. 朝鮮에 관한 모스크바 3 相協定에는 朝鮮民主主義 獨立國家를 急速히 樹立할 것과 또는 이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朝鮮人民에게 줄 同盟들의 援助가 豫見되었다. 그러나 北美合衆國政府의 背信的 行動으로 말미암아 모스크바協定은 實踐되지 못하였다.

이 結果 朝鮮이 日帝統治에서 解放된 지 벌써 4年이 가까워 오는데도 不拘하고 國土는 毅然히 南北으로 分裂되어 있다. 北朝鮮에서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우리 祖國의 發展을 保障하며 朝鮮에서 日本帝國主義의 長久한 統治의 惡毒한 結果를 肅清하고 人民들의 物質文化水準 向上을 保障하는 諸般 民主改革들을 實施하였다.

그러나 南朝鮮에서는 아무런 民主主義 改革도 實施되지 않았으며 民主運動에 對한 苛酷한 彈壓, 테러 制度가 橫行하고 있다.

1948年初에 朝鮮으로부터 外國軍隊를 撤去하고 우리 朝鮮人民에게 同盟國의 援助와 參加없이 自己의 國內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可能性을 주자는 蘇聯의 提議는 朝鮮人民의 絶對多數의 支持를 받았다. 그것은 이 提議가 우리 祖國에 造成된 情勢下에서 朝鮮問題를 가장 容易하고 正當하게 解決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北美合衆國政府는 이 提議를 拒否하였다. 北美合衆國政權 當局은 朝鮮을 自己의 植民地로 또는 遠東에서의 北美合衆國의 軍事戰略上 基地로 變化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者들과 그들의 走狗들이 우리 祖國을 分裂하여 그 南半部를 帝國主義者들에게 隸屬시키려는 政策은 祖國의 統一 獨立과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廣範한 全人民的 運動을 惹起시키었다.

이 運動의 結果 1948年 8月에 朝鮮最高人民會議 總選舉가 進行 되었으며 朝鮮最高人民會議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憲法을 採択하고 共和國 聯立政府를 樹立하였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는 朝鮮 人民의 絶對多數의 支持를 받고 있다.

美帝國主義者들과 朝鮮反動分子들은 朝鮮分割政策을 實施하면서 南朝鮮에 朝鮮反動分子들과 朝鮮民族反逆者들로 傀儡政府를 樹立하였다.

이 傀儡政府는 自己들의 上典인 美帝國主義者들의 操縱에 의하여 南朝鮮에서 民主運動을 反對하여 彈壓테러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人民과 孤立된 南朝鮮傀儡政府는 美軍의 支持가 없이 홀로 人民과 남 아있기를 두려워한다.

朝鮮으로부터의 蘇聯軍隊의 撤去와 朝鮮人民의 正當한 要求에 對한 蘇聯의 確固한 支持는 南朝鮮에서 美軍을 撤去시키며 祖國의 統一과 獨立과 民主發展을 위한 朝鮮人民들의 鬪爭에서 強力한 힘으로 된다.

朝鮮에서 北美合衆國 政權當局이 實施하고 있는 帝國主義的 政策과 美帝國主義者들의 支持下에서 朝鮮反動分子들이 南朝鮮에 創設한 테러 制度는 朝鮮人民을 隸屬시키며 그의 創發力과 創造的 機能을 抹殺시키려는 目的을 가진 것이다.

우리 祖國이 앞으로 繼續 分裂되어 存在한다면 朝鮮人民에게 莫大한 危險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祖國의 統一과 獨立을 達成하며 國家의 民主發展을 保障하며 封建的 殘滓를 肅清하며 人民들의 福利를 向上시킬 目的으로 다음과 같은 課業들을 實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1. 南朝鮮으로부터 美軍을 即時 撤去케 하며 소위 “유엔委員會”을

- 물러가게 하고 祖国의 完全獨立을 위하여 鬪爭한다.
2. 統一을 妨害하는 祖国의 反逆者들을 反對하며 祖国의 統一을 急速히 達成하기 위한 鬪爭에 人民들의 總力量을 動員한다.
 3. 우리 祖国의 北半部에서 이미 實施된 民主改革들을 一層 鞏固發展시키기 위하여 鬪爭한다.
 4. 1948. 8.25 總選舉의 結果 樹立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를 支持하며 朝鮮人民의 福利를 向上시키기 위한 共和國政府의 活動을 協調한다.
 5. 全朝鮮的으로 広範한 民主改革을 實施하며 全体朝鮮人民에게 公民의 同等權과 言論, 出版, 集會, 示威, 結社의 自由와 信仰의 自由等 民主主義的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6.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者들과 朝鮮反動分子들에 의하여 彈壓당한 人民들의 自治機關인 人民委員會를 復活시키며 그 合法化를 위하여 鬪爭한다.
 7. 日本國家, 日本人, 個人, 法人 및 朝鮮人民들의 反逆者들에게 所有되었던 土地를 無償沒收하여 農民들에게 無償分配하는 原則에 의하여 南朝鮮에서 土地改革을 實施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8. 日本國家, 日本人, 個人, 法人 또는 朝鮮人 反逆者들에게 所有되었던 產業 其他 企業所들의 國有化를 南朝鮮에서 實施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9. 南朝鮮에서 民主運動에 대한 彈壓과 테러를 反對하여 南朝鮮 監獄들에 投獄된 愛國者들의 釋放을 위하여 鬪爭한다.
 10. 蘇聯과 民主主義中國과 人民民主主義諸國들과 其他 自由愛護國家들

과의 親善關係를 發展強化시키기 위하여 努力한다.

11. 日本을 帝國主義的 日本으로 復活시키려는 政策을 反對하여 鬪爭한다.

12. 侵略的 同盟을 組織하며 새 戰爭挑發目的을 가진 帝國主義國家들의 政策을 反對하며 平和와 國際的 協同의 強化를 위하여 鬪爭한다.

13. 民族經濟와 民族文化를 發展시키며 朝鮮人民들속에서 文盲을 退治하며 知識을 널리 普及시키기 위하여 努力하며 日本帝國主義의 思想殘滓와 其他 反民主主義的 思想을 反對하여 鬪爭한다.

19. 朝鮮佛教徒聯盟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名稱만 存在하는 勞動黨 御用 宗教團體
- 10.月 維新 以後 韓國內의 反維新 宗教人들과의 統一戰線 摸索
- 各種 聲明·談話를 통한 對南宣傳 煽動活動
- 統一問題等 南北關係 政黨·社會團體 會議에 偽裝參加
- 各種 國際宗教會議에 代表派遣, 反韓·反美 宣傳活動

2) 創立日字 1945.12.25

3) 主要沿革

- 1945.11. ~ 1948. 北朝鮮 佛教徒 聯盟
- 1946. ~ 1949. 北朝鮮 佛教 總務院
- 1948. ~ 1949. 北朝鮮 仏教聯合會
- 1949. 南朝鮮 佛教徒 聯盟 (1950年 以後 潛跡)
- 1955. ~ 1964. 朝鮮 佛教徒 聯盟
- 1965. 朝鮮 佛教徒 聯盟 潛跡
- 1972. 朝鮮 佛教徒 聯盟 中央委員會 出現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박태호 (委員長)

2) 關係 主要人物 (幹部)

홍화두 (副委員長)

다. 特記事項

- 1972. 南北對話 始作과 더불어 有名無實했던 宗教団体 復活
- 1974. 본격적으로 宗教団体を 對南宣傳에 活用
- 1974.11. 第3회 아시아 佛敎徒 平和會議에 조총련 參席, 南韓에 對한 特別報告書 採択
- 1976.7. 第4次 아시아 佛敎徒 平和會議 會員國으로 加入

라. 綱領 및 規約

1) 綱 領

- 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과 政府政綱을 받들고 이것을 徹底히 實踐 實現하기 위하여 鬭爭하며 祖國의 國土完整과 完全自主獨立을 위하여 積極 努力한다.
- 2 祖國의 統一獨立과 民主發展을 阻害하는 一切 外來帝國主義의 侵略勢力과 그 앞잡이인 親日派 民族叛逆者 및 敎團叛逆者들과 果敢히 싸우며 日本帝國主義의 思想殘滓와 封建遺習을 徹底히 肅清하기 위하여 鬭爭한다.
- 3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의 強化를 위하여 努力하며 그 一環으로서 모든 民主課業을 誠實히 實踐한다.
- 4 祖國의 國土를 防衛하며 人民의 利益을 擁護하는 人民軍隊에 對

하여 極力援助한다.

5. 世界の 平和를 사랑하며 다른 民族의 獨立을 尊重하는 소비에트 國家 및 諸民主主義國家의 人民들과의 親善을 위하여 積極 努力한다.

6. 佛敎徒들에게 勤勞精神을 昂揚시킴으로써 祖國富強을 위한 人民經濟復興發展에 積極 參加한다.

7. 佛敎文化를 民主主義 方向으로 이끌며 時代에 適應한 新敎學을 樹立함으로써 民族文化發展에 寄與한다.

20. 朝鮮基督教徒聯盟

가. 機能 및沿革

1) 機能

- 名稱만 存在하는 勞動黨 御用 宗教團體
- 10月維新 以後 韓國內의 反維新 宗教人들과의 統一戰線 摸索
- 各種 聲明·談話를 통한 對南 宣傳 煽動活動
- 統一問題等 南北關係 政黨·社會團體 會議에 偽裝 參加
- 各種 國際宗教會議에 代表派遣 世界 左翼係 宗教人들과의 連繫下에 反韓·反美·謀略

2) 創立日字 1946.11.28

3) 主要沿革

- 1946.11. ~ 1959. 北朝鮮 基督教 聯盟
- 1947.2. ~ 1950. 基督教 民主同盟
- 1953. ~ 1955. 南朝鮮 基督教 民主聯盟
- 1960. ~ 1962. 南朝鮮 基督教 聯盟
- 1960. 北朝鮮 基督教聯盟 潛跡
- 1963. 南朝鮮 基督教聯盟 潛跡
- 1974. 朝鮮基督教徒 聯盟 中央委員會 出現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金成律(副委員長)

2) 關係 主要人物(幹部)

고기준(書記長)

다. 特記事項

- 1972. 南北對話 始作과 더불어 有名無實했던 宗教団体 復活始作
- 1974. 본격적으로 宗教团体를 對南宣傳에 活用
- 1974.8. 世界教会 協議會(W.C.C.)에 加入 挫折
- 1975.1. 아시아 基督教 平和會議에 參席
- 1976.11. 基督教徒 平和會議 政治·經濟 討論會, 韓半島에 關한 決議와 聲明採択

라. 綱領 및 規約

1) 綱領

- 1 基督教의 博愛的 原則에 基礎하여 人民의 愛國熱을 喚起하며 朝鮮의 完全獨立을 위하여 建國事業에 一致 協力할 것.
- 2 民主朝鮮建國에 害毒인 罪惡과 抗爭하고 道義建設을 위하여 奮闘할 것.
- 3 言論·出版·集會·結社 及 信教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하여 尽力할 것.
- 4 基督教의 發展을 위하여 邁進할 것.

21. 朝鮮天道教会中央指導委員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名稱만 存在하는 勞動黨 御用 宗教團體
- 10月維新 以後 韓國內의 反維新 宗教人들과 統一戰線 摸索
- 聲明·呼訴文을 통한 對南宣傳 煽動活動
- 統一問題等 南北關係 政黨·社會團體 會議에 偽裝參加

2) 創立日字 1946. 2. 1

3) 主要沿革

- 1946. 2. 天道教 北朝鮮 宗務員 設立
- 1949. 天道教 北朝鮮 宗務員 潛跡
- 1974. 2. 朝鮮 天道教会 中央指導委員會 出現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김철민 (副委員長)

다. 特記事項

- 1972. 南北對話 始作과 더불어 有名無實했던 宗教團體 復活始作

○ 1974 본격적으로 宗教团体를 对南宣传 煽動活動에 活用

라. 綱領 및 規約

1) 綱 領

1. 人民이 스스로 歷史의 創造者임을 自覺自担하는 人乃天의 真理에 依한 自力的 真理信仰과 其具體적인 實踐活動으로 不合理한 낡은 世上(先天)을 깨트리고 民主平等의 새世上(後天)을 개벽한다.
2. 祖国의 民主主義的 完全自主獨立(保國)과 勤勞大衆을 基本으로 한 全体人民의 物質精神生活의 安定幸福(安民) 및 大小 各國各民族의 自主權과 獨立權을 尊重하는 原則위에서 世界의 恒久平和와 全人類의 同歸一體的 幸福을 發展시키는 地上天國 建設을 目的한 다.

22. 朝鮮學生委員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4.19 以後 서울大學生들의 南北學生會談開催 提議等に 呼
應키 위해 急造한 御用團體
- 各種 聲明·談話를 통한 對南 宣傳煽動 活動
- 各種 國際學生會議에 代表團을 派遣 世界 左翼係 學生들과의
連繫를 통한 反韓·反美 活動

2) 創立日字 1960. 5.20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金 蒼 竜 (委員長)

다. 特記事項

- 1949. 9. 國際學生同盟에 加入

23. 朝鮮民主法律家協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勞動黨의 御用法律家 組織
- 各種, 聲明, 談話 등을 통한 對南宣傳 煽動活動
- 反韓·反美的인 各國의 法律家, 法律家協會 및 國際法律家 團體들과 連繫下에 反韓·反美 謀略 宣傳活動

2) 創立日字 1954.11.30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崔民信 (委員長)

다. 特記事項

- 1955.4. 國際民主法律家協會에 加入

24. 朝鮮民主科學者協會

가. 機能 및 沿革

1) 機能

- 勞動黨의 御用學術團體로 勞動黨의 科學政策 遂行의 前衛隊
- 各種 科學討論會 및 協議會 主管
- 各種 國際科學者 會議에 代表團을 派遣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科學技術 成果의 海外 宣傳
- 南韓의 科學者 및 技術者를 對象으로한 各種 聲明, 呼訴文을 통한 對南 宣傳·煽動 活動

2) 創立日字 1956. 3. 18

나. 組織現況

1) 代表者 洪起文 (副委員長)

2) 組織基盤 科學者, 技術者 加入

다. 特記事項

1957. 8. 世界 科學者聯盟에 加入

附 錄

(關係主要人名錄)

姜 占 淑

1975. 5. 當時 女性同盟中央委秘書, 女盟代表團長으로 「자이레」訪問
1977. 3. 當時 女性同盟中央委副委員長, 女性同盟中央委 第4期8次
全員會議에서 報告
1979. 2. 女盟代表團長으로 「이라크」女性總同盟結成10周年紀念行
事 參加
3. 同 代表團長으로 「이란」訪問

康 良 煜

1904. 11. 平安南道出生, 金日成의 外從祖父, 日本中央大豫科 修了
1923. 3. 平壤神學校 卒業
1928. 10. 長老教牧師
1945. 11. 朝鮮民主党中央常務委員
1946. 2. 北傀臨政人民委員會書記長
11. 北傀基督教聯盟中央委委員長
1947. 2.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書記長
1948.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
9. 同 常任委員會書記長
1954. 11. 國旗勳章第1級受勳
1957.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11. 朝鮮民主党中央副委員長
1959. 9.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副委員長,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

委員

1960. 5. 祖国平和統一委員會副委員長
1962. 8. 最高人民會議代議員選舉委員會委員長
1963. 10. 世界平和理事會議(바르샤바)參席
11. 平和擁護民族委員會委員長
1967. 2.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소말리아」, 「부룬디」, 「탄
자니아」, 「잠비아」, 「예멘」諸国 歴訪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
12. 同 常任委員會副委員長 留任
1971. 3. 當時 對外文化連絡委員長
10. 美濃部東京部知事와 會見(平壤)
11. 當時 「올림픽」委員會委員長
1976. 3. 「프랑스」國民會議(下院)代表團과 會見
1977.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國家副主席 選出
1978. 3. 政府代表團長으로 中共, 「네팔」, 「방글라데쉬」, 印度,
~ 5. 「토고」, 「베넌」, 「세네갈」, 「나이지리아」, 「자이레」,
「이란」訪問
1981. 1. 朝鮮社会民主党委員長兼 政治委員

고 기 준

1981. 1. 朝鮮社会民主党組織部長兼 政治委員

高 龍 鎮

1958. 10. 当時 写真家同盟中央常務委員
1961. 1. 同 同盟委員長
3. 文学芸術総同盟中央委員
5. 祖国平和統一委員会中央委員
1964. 10. 当時 写真家同盟委員長

金 寬 燮

1922. 5. 平安北道出生
1939. 日本中央大法科 卒業, 解放後 新義州教員大学副學長
1958. 5. 労働党新義州委員会委員長
1961. 9. 労働党中央委候補委員(第4次党大会)
12. 駐蒙古大使
1962. 10. 最高人民議第3期代議員
1964. 5. 駐「기니」大使
1967. 6. 同 解任
7. 对外文化連絡委副委員長
1968. 7. 朝鮮・蒙古親善協會委員長, 对外文化連絡委員長代理
9. 朝鮮・越盟親善協會副委員長
10. 朝鮮・中共親善協會副委員長
1970. 11. 労働党中央委候補委員(第5次党大会: 32/55)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1973. 2. 對外文化連絡委員長
1976. 2. 朝鮮 · 「가이아나」親善協會委員長
1977.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常設會議議員, 勞動党中央委員
1978. 3. 對外文化連絡委代表團長으로 「헝가리」訪問
1979. 3. 勞動党代表團長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訪問
1980. 10. 勞動党中央委員

金 基 南

1926. 8. 江原道 出生
1952. 5. 當時 外務省參事
1954. 1. 當時 外務省第2部長
1957. 6. 當時 駐中共臨時代理大使
12. 當時 外務省儀禮部長
- 1961.8.~ 當時 勞動党中央委科學 및 學校教育部副部長
65.1.
1972. 4. 當時 「근로자」副主筆
1973. 12. 當時 同 責任主筆
1976. 4. 當時 「로동신문」責任主筆
12. 當時 記者同盟委員長
1977. 2. 勞動党勤勞者團體代表團長으로 「탄자니아」第1副統領訪問
4. 當時 勞動党中央委候補委員, 勞動党親善參觀團長으로 中共
訪問, 李先念에게 金日成의 親書傳達

1977. 10. 1. 労働党代表団長으로 「스페인」訪問
 12.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議員
1978. 9. 1. 「로동신문」代表団長으로 北京訪問
 11. 「로동신문」代表団長으로 青年「일꾼」代表団과 함께 日本
 訪問
 12. 當時 労働党中央委員
1979. 4. 1. 労働党代表団長으로 「멕시코」訪問
1980. 10. 1. 労働党中央委員, 「로동신문」責任主筆
 12. 「유고」, 「루마니아」, 東独訪問

金 得 俊

1950. 「모스크바」大學 留學(咸鏡南道 出生)
1956. 11. 1. 民主青年同盟中央委員會委員, 同 副委員長
 12. 民主青年同盟代表団長으로 「알바니아」勞動青年同盟第3次
 大會 參席
1958. 10. 1. 北傀代表団長으로 北京에서 開催된 中共·蒙古·越盟
 親善排球競技 參加
1961. 12. 1. 內閣直屬體育指導委員會副委員長
1963. 4. 1. 平壤蹴球団長으로 「버어마」·「인도네시아」訪問
1964. 1. 1. 北傀代表団長으로 第9回 冬季 「올림픽」參加
 4. 朝鮮「올림픽」委員會書記長

1964. 6. 北傀蹴球團長으로 第18回 「올림픽」大会 「아시아」地域蹴球最終豫選戰 (랭구운) 參加
1965. 9. 北傀 GANEFO 代表團長으로 GANEFO 聯盟理事會議 (北京) 參席
12. 朝鮮·「라틴 아메리카」親善協會委員長
1966. 2. 女子「스피이드·스케이트」選手團長으로 冬季大会 參加
1968. 10. 平壤體育大學長
1972. 5. 當時 體育指導委員會副委員長, 北傀蹴球選手團長으로 第20回 「올림픽」大会 「아시아」地域蹴球3組豫選競技 (이란) 參加, 朝鮮·「예멘」親善協會副委員長
1975. 3. 當時 朝鮮「올림픽」委員會副委員長, 日本體育協會 招請에 따라 體育代表團長으로 日本訪問
1977. 2. 體育指導委代表團長으로 蘇聯訪問
1978. 11. 朝鮮體育指導委員會·蘇聯「스포츠」委員會間 體育分野 協力を 強化하기 위한 協定 調印
1974. 4. 第35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組織委員長
1981. 1. 朝鮮「가나」親善協會委員長

金 萬 金

1905. 平安南道完州郡 出生, 日本明治大學 卒業
1945. 12. 勞動黨平安南道安州邑委員長
1950. 蘇聯幹部學校 留學

1953. 勞動党中央委員會組織部長
1956. 勞動党平安南道党委員會委員長
4.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第3次党大会), 同 中央委員會農業部長
1957.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最高人民會議外交委員會委員
1958. 2. 朝鮮·蘇聯親善協會中央委員會委員
1959. 7. 農業相
10. 農業代表團長으로 中共訪問
1960. 5. 全蘇聯農業部門技術者協議會에 北傀代表團長으로 参席
8. 農業相 解任
1961. 7. 勞動党中央委員會農業部長, 蒙古革命第40周年紀念式에 党
· 政府代表團員으로 参席
9.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第4次党大会), 勞動党農業部長
1966. 12. 「쿠바」革命勝利第8周年慶祝式에 親善代表團長으로 参
席
1967.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
12. 第4次内閣 農業委員會委員長
1968. 8. 北傀·「쿠바」間 科學技術協議委員會創設 調印(平壤), 北傀
· 南「예멘」間 經濟技術援助協定 調印(平壤)
10. 「알제리」革命第14周年紀念行事に 党·政府代表團長으로
参席
1969. 9. 農業代表團長으로 蘇聯 및 「헝가리」訪問
11. 農業代表團長으로 蘇聯第3次全聯邦「콜호즈」員大会 参席

1970. 7. 農業委員會委員長 解任, 內閣副首相
11.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15/117), 同 政治委員會候補委員
(第5次黨大會)
1971. 7. 北傀·中共親善協調 및 相互援助條約締結 10 周年을 맞아
黨·政府代表團(團長:金仲麟) 副團長으로 中共訪問
1972. 6. 政府代表團長으로 「알제리」獨立 第 10 周年紀念行事 參席
10.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수단」訪問
11. 政府·軍事代表團長으로 「소말리아」 및 「우간다」訪問
12. 最高人民會議第 5 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政務院副總理, 農業委員會委員長
1973. 3. 北傀·北「베트남」間 無償援助協定 署名(平壤)
10. 當時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委員長,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議長團
1974. 1.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代表團長으로 「오스트레일리아」國
際協力大會 參席
1977. 8. 朝鮮·「불가리아」親善協會委員長
12. 中央人民委員會委員
1978. 3. 當時 平壤市人民委員會委員長
12. 當時 勞動党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委員
1980. 10. 勞動党中央委員

金 鳳 柱

- 1976.11. 當時 金星政治大學長, 同 大學創立 第20周年紀念報告會에서
報告
1977. 6. 職總委員長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議員
1978. 2. 職總第5期第4次全員會議에서 報告(平壤)
6. 黃南 信川에서 職總이 主管한 「복수결의」모임에서 報告
11. 職總代表團長으로 「헝가리」·「유고슬라비아」訪問
1979. 6. 職總代表團長으로 東獨訪問
- 1980.10. 勞動党中央委候補委員
11.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을 위한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에
서 職總代表로 演說
1981. 2. 朝鮮 「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委員長.

金 碩 俊

1973. 9. 當時 「제네바」UN事務所駐在常任「옵서버」代表部와 國際機
構駐在常設代表部副代表
1979. 2. 當時 朝鮮民主黨副委員長, 「南北變則對坐」北傀側代表로 同
對坐 參席
- 1980.10.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을 위한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에
서 政黨代表로 演說
1981. 1. 朝鮮社會民主黨副委員長兼 政治委員

金 成 律

1945. 11. 民主党中央委员会委員 (平安南道出生, 大学卒業)
1948. 8. 最高人民會議第 1 期代議員
1955. 8. 当時 内閣事務局参事
1956. 5. 民主党平壤市党委员会委員長
12. 平和擁護民族委员会平壤市委员会副委員長
1961. 1. 平壤市民委员会副委員長
1967. 11. 最高人民會議第 4 期代議員 (唐谷)
1972. 8. 南北赤十字会談諮問委員
12. 最高人民會議第 5 期代議員 (平壤), 平壤市行政委员会副委員長
1975. 1. 朝鮮基督教徒聯盟中央委员会副委員長, 同聯盟代表団長으로 「아시아」基督教平和大会 (印度) 参席
1977. 11. 当時 平壤市人民委员会副委員長
1981. 1. 朝鮮社会民主党副委員長 兼 政治委員

金 聖 愛

1924. 平安南道 出生, 金日成의 . 둘째 夫人
1954. 女盟順安郡委员会委員長
1957. 中央護衛部隊書記
1963. 金日成과 結婚

1965. 9. 女盟第3次大会에서 同 副委員長
1968. 8. 當時 女盟副委員長
1970. 11. 勞動党中央委員(第5次党大会: 67/117)
1971. 10. 女盟委員長(女盟第4次大会)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同 常設會議議員
1973. 8. 「콩고」大十字勳章受勳
1974. 12. 「자이레」國家勳章受勳
1975. 5. 金日成의 「루마니아」, 「알제리」, 「모리타니」,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訪問에 隨行
1976. 5. 「말리」大將校民族勳章受勳
1977.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 常設會議議員
1980. 10. 勞動党中央委員

金 時 學

1956. 11. 作家同盟外國文學分科委員
1970. 11.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第5次党大会: 111/117), 同 中央委員會部長
1971. 1. 當時 社勞青委員長
6. 社勞青第6次大会에서 「活動總和」報告, 社勞青委員長 再任
1972. 11.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中央選舉委員會委員 朝鮮·「토고」親善協會委員長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社勞青委員長 解任
1973. 2. 當時 中央放送委員會委員長

- 1975.11. 當時 記者同盟中央委員會副委員長，朝鮮。「토고」親善協會
委員長
1979. 2. 中央放送委員會代表團長으로 東獨,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訪問
- 1980.10. 勞動党中央委員

金 英 南

1953. 「모스크바」大學 留學(咸鏡北道出生)
1956. 勞動党中央委國際部書記長
1960. 8. 對外文化連絡委副委員長
1961. 9. 勞動党中央委國際部副部長 兼 咸南道黨委員會副委員長
- 1962.10. 外務省副相
- 1967.10. 聯總中央委副委員長
- 1968.11.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副委員長
- 1970.11. 勞動党中央委員(第5次黨大會: 80/117)
- 1972.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同會議常設會議議員, 勞動党中央
委國際部長
1974. 7. 當時 勞動党中央委政治委員會候補委員
1975. 2. 當時 同 秘書局秘書
1976. 2. 勞動黨代表團長으로 「프랑스」共產黨 第22次大會에 參席
1977. 5. 社勞青代表團長으로 「칠레」人民·青年과의 連帶性會議

- (이탈리아), (소말리아) 革命青年同盟第1次大会 参席
1977. 6. 党·政代表团長으로 「프랑스」共産党第4次大会 参席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 常設會議議員
1979. 6. 勞動党代表团長으로 「헝가리」, 「이탈리아」, 蘇聯訪問
1981. 10. 勞動党中央委員, 秘書 兼 政治局委員

金 裕 順

1976. 4. 当時 体育指導委員會委員長
7. 第21回「올림픽」(몬트리올) 派遣選手團長
1978. 5. 第80次 IOC 總會(아테네)에서 IOC 委員에 被選
12. 北傀選手團長으로 第8回「아시아」競技大会 参加
1979. 2. 体育代表团長으로 社会主義体育指導機關委員長會議(모스 크바) 参席
3. 「올림픽」委員會代表团長으로 「우루구아이」IOC 第81次總會 参席
1980. 7. 第22回「모스크바」올림픽大会에 北傀代表로 参席
10. 勞動党中央委候補委員

金

1912. 咸鏡北道 出生, 本名 金在範
1935. 3. 蘇聯「타시켄트」共和国綜合大學政治經濟科 卒業
1941. 金日成遊擊隊文化部長

1945. 8. 當時 蘇聯軍將校(總尉)
11. 北朝鮮共產黨平北道委員會秘書
1946. 8. 勞動黨中央委常務委員, 同 政治委員會委員
1947. 保安幹部訓練所文化部長
1948. 3.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第2次黨大會)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
1949. 5. 民族保衛省文化部長
1950. 12. 同 省副相
1952. 8. 勞動黨中央委副委員長
1954. 3. 副首相 兼 農業相
1956. 4. 勞動黨中央委常務委員(第3次黨大會)
1957.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9. 農業相 解任, 副首相 留任
12.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
1958. 9. 國旗勳章第1級受勳
1959. 1. 內閣第1副首相
2. 朝總聯迎接委員會委員長
1961. 9. 勞動黨中央委副委員長 兼 政治委員會委員(第4次黨大會)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1966. 10. 黨組織改編으로 勞動黨中央委政治委員會常務委員 兼 秘書局
秘書
1967.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
1970. 11. 勞動黨中央委員, 政治委員, 秘書(第5次黨大會: 3/117)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政務院總理, 中央人民委員會委員
1976. 4. 國家第1副主席
1979. 6. 金泳三新民黨總裁의 會見에 關聯하여 「6.18」談話發表
1980. 1. 祖國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
10. 勞動黨中央委員, 政治局常務委員 兼 委員

金 日 成

1912. 4. 平南大同郡古平面南里 出生, 本名 金成柱
1926. 滿洲吉林所在의 毓文中學校 入學
- 1926 ~ 28. 中學在學中 共產青年同盟에 加入
1929. 東滿洲地區共產主義青年同盟委員會書記
9. 毓文中學 中退
1931. 中國共產黨入黨
1932. 長白山脈과 松花江流域을 「게릴라」本拠地로 삼음
1934. 東滿洲 抗日 「게릴라」部隊와 南滿洲 抗日 「게릴라」
 部隊를 糾合하여 朝鮮人民革命軍을 創設
1935. 本名 金成柱로부터 金日成으로 改名
1936. 祖國光復會를 組織, 會長就任
1937. 人民革命軍 一部를 統率하여 鴨綠江上流地帶에서 「게릴라」活動, 咸鏡南道普天堡襲擊
9. 咸鏡南道會坪里襲擊
- 1942 ~ 45. 8. 蘇聯에 들어가 蘇聯軍少佐

1945. 10. 蘇聯軍과 같이 平壤에 들어옴
12. 朝鮮共産党北朝鮮組織委員會責任秘書
1946. 7. 北朝鮮勞動党副委員長
1947. 2.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1948. 3. 勞動党第2次党大会에서 同党副委員長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
9. 內閣首相
1949. 2. 政府使節團長으로 蘇聯訪問
6.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長, 祖国戰線中央委員會常務委員
1950. 6. 韓國動亂勃發과 同時에 党軍事委員會委員長, 人民軍最高司令官
1953. 2. 元帥
8. 英雄称号 받음, 國旗勳章第1級受勳, 勞動党中央委員會常務委員·同 党政治委員會委員·党規則修正委員會委員長
9. 党·政代表團長으로 蘇聯訪問
11. 中共訪問
1954. 9. 中共和国慶節式典 參席
1956. 4.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長(第3次党大会), 常務委員·組織委員
6. 政府代表團長으로 蘇聯, 東亞諸國 및 蒙古訪問
7. 「알바니아」解放勳章第1級 및 「폴란드」復興勳章第1級受勳
1957.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1957. 9. 第2次內閣組織, 首相에 再就任
10. 党·政代表團長으로 蘇聯社會主義10月革命第40周年紀念式典 參席
12. 祖國戰線第2次大會에서 同 中央委員·常務委員·議長
1958. 11. 中共 및 北「베트남」親善訪問
1959. 1. 勞動黨代表團長으로 蘇聯共產黨第21次大會 參席
9. 党·政代表團長으로 中共建國第10周年紀念式典 參席
1961. 6. 党·政代表團長으로 蘇聯訪問
7. 北傀·蘇聯間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條約 調印, 中共訪問, 北傀·中共間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條約 調印
9.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長·同 政治委員(第4次黨大會)
10. 黨代表團長으로 蘇聯共產黨第22次大會 參席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第3次內閣首相
1965. 4. 「인도네시아」 「수카르노」大統領招請으로 「인도네시아」訪問
1966. 10. 勞動黨代表者會執行部成員, 勞動黨組織改編에 따라 勞動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常務委員會 委員, 總秘書
1967. 1. 非公式으로 蘇聯訪問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黃北 松林)
12. 最高人民會議第4期第1次會議에서 「10大政綱」發表, 第4次內閣組織, 首相
1968. 5. 北傀·蘇聯政府間 經濟科學技術協議會第2次協議에 參席한 「노비코프」蘇聯副首相과 會見

1969. 3. 「社会主義經濟에 있어서 몇가지의 問題에 대하여」의
論文發表
5. 「国家首班」
1970. 11. 勞動党中央委員·政治委員·總秘書(第5次党大会: 1/117)
1972. 4. 「二重英雄」称号 받음. 「레닌」勳章(蘇聯最高會議幹部
會議로부터) 受勳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慈江 熙川), 国家主席(1972.
12.27. 公布된 社会主義憲法에 따라), 中共人民委員會
委員長, 国防委員會委員長
1973. 6. 「체코슬로바키아」最高白獅子勳章第1級受勳
8. 公式訪問한 「콩고」人民共和國 党·政代表團(團長: 「마
리안 앙구아비」大統領)과 會談. 同 代表團歡迎 平壤市民
大會에서 「高麗聯邦共和國」制 등 韓國統一의 5大綱領
提案을 發表, 「콩고」大十字勳章受勳, 航空協會結成大會에
서 會長에 推戴
10. 「불가리아」最高「게오류기 지미토로프」勳章受勳
1974. 9. 「토고」最高榮譽勳章「모노」大十字勳章受勳, 「시리아」最
高勳章「다우마이에」勳章受勳
12. 「자이레」最高勳章「레오하루」國家勳章受勳
1975. 5. 「루마니아」, 「알제리」, 「모리타니」, 「불가리아」 및
「유고슬라비아」公式訪問
1976. 5. 「말리」大十字民族勳章受勳
8. 8·18 도끼殺人蠻行事件(板門店)과 關聯하여 人民軍·勞

- 農赤衛隊·붉은青年近衛隊 全隊員에게 戰鬪態勢에 突入하
도록 命令
- 1976.12. 蘇聯共産党書記長「브레즈네프」에게 国旗勳章第1級受与
1977. 1. 新年辭에서 「对美平和協定」締結을 促求
5. 公式訪問中인 「가봉」의 「봉고」大統領과 會談, 同 大
統領으로부터 赤道星勳章受勳
8. 公式訪問中인 「유고」大統領「티토」와 會談
10. 「폴 포트」「캄보디아」共産党秘書 兼 首相과 會談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平南 安州), 最高人民會議第6
期第1次會議에서 国家主席에 再被選
1978. 1. 「레닌」勳章受勳
5. 訪北中인 飛鳥田社会党委員長, 「초세 스크」「루마니아」大統
領과 各各 會談
9. 北傀政權創建第30周年紀念行事 参席次 訪北中인 鄧小平中
共副首相·「벵글라데쉬」大統領등과 各各 會談
- 1980.10. 「무가베」「짐바브웨」首相과 會談, 労働党總秘書·中央
委員·政治局常務委員 兼 委員, 軍事委員
11. 스페인共産党 党首
[산티아고 카릴로]와 會談

김 재 연

1981. 1. 朝鮮民主黨第6次大會에 咸北代表로 参席.
朝鮮社会民主黨宣傳部長

金 正 日

1941. 2. 金日成의 親子로 蘇聯「사마르칸드」에서 出生, 蘇聯名
「슈라」
1945. 10. 父母를 따라 北韓에 들어옴
1948. 9. 平壤南山學校人民班 入学
1950. 6. 中共吉林學院 通學
1952. 平壤南山學校 復學
1955. 平壤南山學校高等班 入学
1958. 8. 同 學校 卒業, 東獨航空軍官學校 留學
1960. 9. 金日成大學政治經濟學部 2年編入
1963. 8. 同 大學 4年 卒業
1964. 勞動黨組織指導部指導員(실제는 金日成 個人警護)
1969. 同 副部長

1970. 勞動黨文化藝術部長
1973. 2. 3 大革命小組組長(公式發表된 것은 아님)
9. 勞動黨中央委員會第 5 期第 7 次全員會議에서 中央黨組織
및 宣傳担当秘書, 政治委員會候補委員으로 被選
12. 勞動黨非公開會議에서 金日成의 後繼者로 決定됨
1974. 4. 勞動黨中央委員, 政治委員會委員
1975. 9. 勞動黨對南工作總責
1980. 10. 勞動黨中央委員, 秘書, 政治局常務委員, 委員 兼 軍
事委員
1981. 5. 묘향산地區 實務視察

金 仲 麟

1925. 咸鏡北道出生，解放前 民族解放同盟所屬共產黨員
1948. 勞動黨咸鏡北道委員會部長
1954. 3. 當時 勞動黨中央委員會副部長
1956. 8. 當時 赤十字會中央委員會常務委員
1959. 2. 當時 在日韓國人北送에 관한 北傀。日本赤十字會議(제네바)
參席
1961. 5. 祖國平和統一委員會中央委員
9. 勞動黨中央委員會候補委員(第4次黨大會)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慈江 時中)
1965. 1. 勞動黨中央委員會海產物部長
1966. 10. 勞動黨代表者會執行部成員
1967.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七萬山)
1969. 4. 勞動黨中央委員會秘書，黨代表團員(團長：朴成哲)으로 西獨
共產主義者「그룹」代表와 會談(平壤)
1969. 8. 黨代表團員(團長：朴成哲)으로 美國共產黨代表團과 會談
(平壤)
10. 黨代表團員(團長：崔庸健)으로 「스페인」共產黨代表團과
會談(平壤)
1970. 6. 政府代表團副團長으로 中共訪問
11.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第5次黨大會；10/117)，勞動黨中央
委員會政治委員會委員，秘書

1971. 7. 北傀、中共間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條約締結第 10 周年을 맞아 党、政代表團長으로 中共訪問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 5 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勞動党秘書職
解任
1978. 3. 勞動党政治委員
1980. 10. 勞動党中央委員, 秘書兼 政治局委員

金 蒼 龍

1977. 1. 當時 社勞青中央委副委員長
3. 社勞青代表團長으로 「쿠바」訪問
1978. 1. 社勞青代表團長으로 「이라크」訪問
3. 同 代表團長으로 東獨訪問
4. 同 代表團長으로 日本訪問
1979. 1. 學生委員會代表團長으로 非同盟諸國學生組織第 1 次大會(말라)
參席
4. 社勞青代表團長으로 「아프가니스탄」4月革命 1 周年記念行事
參席
6. 同 代表團長으로 東獨訪問
1980. 朝鮮學生委員會委員長
7. 社勞青代表로 「항가리」, 「체코」訪問

金 台 涉

- 1962.10. 民主党中央委员会副委员长
1973. 6. 当时 民主党中央委员会副委员长
1980.11. 朝鲜民主党第5期8次全体会议参席
1981. 1. 朝鲜社会民主党副委员长兼 政治委员

金 焕

1961. 5. 重工业省化学工业研究所副研究员, 国旗勋章第3级受勋
1963. 当时 咸兴化学工业大学分析化学讲座教官
1967. 7. 科学院咸兴支局高熟化学研究所纤维物研究室研究员
1968.10. 纺织·造纸工业省副相
1970. 当时 纺织机械工业省副相
1972.12. 政务院化学工学部长
1975. 5. 劳动党代表团团长으로서 「기니비사우」·「가봉」访问
1977.12. 最高人民会议第6期代议员, 同 代议员资格审查委员
1978.12. 当时 劳动党中央委员会委员, 政治委员会委员, 秘书局秘书, 中央人民委员会委员
1979. 1. 金日成의 特使로 「말라가시」访问
5. 劳动党代表团团长으로 「프랑스」共产党第23次大会 및 「스페인」社会劳动党第28次大会 参席
6. 劳动党使节团长으로 「시리아」·「잠비아」访问
1980.10. 劳动党中央委员, 秘书兼 政治局委员

남 태 준

1977. 1. 當時 農勤盟中央委副委員長, 農勤盟代表團長으로 「시리아」
農民總同盟第4次大會 參席
3. 農勤盟中央委第2期11次全員會議에서 報告

文 炳 錄

1972. 社勞靑副委員長, 學生委員會委員長, 職業總同盟副委員長
1973. 1. 職總代表團長の 資格으로 全印度勞組祝賀第29次大會 및
「아시아」教員勞組討議會에 參席
4. 職總代表團長の 資格으로 「알제리」勤勞者總同盟第4次大
會 및 多國籍獨點會社에 反對하여 鬭爭하는 「칠레」國
民과의 連帶國際勞動組合會議에 參席
5. 職盟代表團長の 資格으로 世界勞組第8次大會文獻作成委員
會에 參席
6. 職總代表團長の 資格으로 人種隔離政策에 反對하는 國際
勞動者會議에 參席
9. 職總代表團長の 資格으로 日本을 訪問
1974. 2. 職總代表團長の 資格으로 越盟勞組第3次大會에 參席
5. 職業總同盟中央委員會副委員長, 職總代表團長の 資格으로
世界勞聯事務局會議(프라하) 및 「이라크」勞組總聯
盟第4次大會(바그다드)에 參席
8. 職總代表團長の 資格으로 「루마니아」解放30周年記念行事

에 参席

- 1974 .10 . 職總代表團長의 資格으로 鐵道勞動組合 國際「세미나」
(西独)에 参席
- 12 . 職總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유고」勞組第7次大会에 参席
- 1975 . 3 . 勞動党中央委員會副部長
- 7 . 北傀를 訪問한 日本社会党韓國問題对策特別委員會代表團
(團長：楯兼次郎) 歡迎宴에서 演說
- 11 . 駐「자이레」特命全權大使
- 1977 .12 . 當時 職總中央委副委員長, 日本勞組總評議會 招請으로 日本
訪問
- 1978 . 4 . 職總代表團長으로 「체코」訪問
- 1979 . 3 . 職總代表團長으로 中共訪問
- 1980 . 7 . 職總代表로 蒙古訪問
- 11 . 東独訪問

朴 成 哲

- 1912 . 咸鏡北道出生, 日本上智大學 卒業後 日本共產黨에 入黨
- 1936 . 東滿洲에서 金日成의 部下가 됨
- 1945 . 8 . 金日成과 함께 入北
- 1950 . 3 . 第15師團長
- 1954 . 9 . 駐「불가리아」公使
- 1955 . 8 . 駐「불가리아」大使 (1956 年 8 月까지)

1956. 8. 勞動党中央委員會國際部長
 10. 外務省副相
1957.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1959. 10. 外務相
1960. 2. 勞動党代表로 社會主義國共產党代表者會議에 參席 (모스크바)
1961. 5. 平和統一委員會中央委員
 6. 勞動党 및 政府代表團의 一員으로 蘇聯·中共을 訪問
 9.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 (第4次黨大會)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1963. 6. 勞動党 및 北傀親善使節團의 一員으로 中共을 訪問
 (團長: 崔庸健)
1964. 6. 勞動党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候補委員,
 崔庸健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長)을 隨行, 「이집트」,
 「파키스탄」을 訪問
1965. 4. 金日成을 隨行, 「인도네시아」訪問
 6. 「아시아·아프리카」外相會議에 參席
1966. 3. 北傀·「루마니아」間 文化協力計劃書에 調印, 勞動党代表
 團의 一員으로 蘇聯共產党第23次大會에 參席
 10. 勞動党代表者會執行部成員, 內閣副首相
 11. 勞動党代表團長의 資格으로 「헝가리」社會主義勞動党第9次
 大會에 參席
 12. 勞動党代表團長의 資格으로 「폴란드」, 東獨을 訪問
1967. 7. 祖國戰線中央委員會擴大會議에서 報告, 「쿠바」武裝蜂起 14

周年平壤市記念集會에서 報告

- 1967.10. 勞動黨。政府代表團長의 資格으로 蘇聯, 「쿠바」를 訪問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瑞典)
12. 副首相兼 外務相 留任
1968. 2. 朴大統領의 記者會見을 非難하는 談話를 發表
4.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프랑스」共産黨代表團과 會談(平壤)
1969. 4.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西獨共産主義者代表와 會談(平壤)
6.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스웨덴」共産主義者左翼代表團과 會談(平壤)
8.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美國共産黨代表團과 會談(平壤)
9. 勞動黨 및 政府代表團(團長: 崔庸健)의 一員으로 胡志明葬禮式에 參席
10. 勞動黨 및 政府代表團(團長: 崔庸健)의 一員으로 中央政權樹立20周年記念行事에 參席
12. 勞動黨中央委員會常務委員의 資格으로 蘇聯訪問
1970. 4. 勞動黨代表團(團長: 崔庸健)의 一員으로 「레닌」誕生100周年慶祝記念行事에 參席 (모스크바),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中共을 訪問
7. 內閣第2副首相
11. 勞動黨中央委員, 政治委員(第5次黨大會: 3/117)

1971. 5. 労働党 및 政府代表團長の 資格으로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訪問
10. 労働党 및 政府代表團長の 資格으로 越盟을 訪問
1972. 5. 朴大統領을 禮訪(서울)
7.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代理의 資格으로 南北調節委員會
에 參席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政務院副總
理, 人民奉仕委員會委員長
1973. 3. 南北調節委員會第2次會議(平壤)에 參席한 李厚洛共同委
員長과 會談
6. 南北調節委員會平壤側共同委員長代理의 資格으로 第3次會
議(서울)에 參席, 「체코」白獅子勳章第1級受勳
8. 「콩고」大將校勳章受勳
12. 政務員人民奉仕委員會委員長 辭任
1974. 4. 北傀를 訪問한 「캄보디아」民族戰線·同 民族聯合政府代
表團 歡迎平壤市民大會에서 演說
5. 北傀를 訪問한 日本社会党代表團(團長: 米田東吾衆議院議
員)과 會談
9. 労働党代表團長の 資格으로 北傀를 訪問한 日本社会党代表團
(團長: 成田知己委員長)과 會談
1975. 4. 金日成을 隨行 中共을 訪問
7. 政府代表團長の 資格으로 「이집트」, 「이디오피아」,
「요르단」,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를 訪問

1975. 9. 党, 政府代表團長의 資格으로 越盟政權樹立 30 周年記念行事
에 参席
11. 政府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자이레」 國慶節 10 周年記念行事
에 参席
12. 勞動党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쿠바」 共產党第 1 次大会에
参席
1976. 2. 北傀를 訪問한 「체코」 政府通商代表團, 中共政府貿易代表團
및 「폴란드」 政府通商代表團과 會見
3. 勞動党代表團長의 資格으로 蘇聯共產党第 25 次大会에 参席
4. 金日成의 特使로 「탄자니아」, 「잠비아」, 「우룬디」,
「말라가시」를 訪問, 政務院總理
8. 政府代表團長의 資格으로 非同盟諸國首腦會議에 参席
(콜롬보)
11. 北傀를 訪問한 「요르단」 經濟·貿易代表團과 會見
12. 北傀를 訪問한 「쿠바」 政府代表團과 會見
1977. 1. 蘇聯을 訪問하여 「코시킨」 首相과 會談, 途中에 「이라크」
를 訪問
8. 「산토메프린시페」 政府代表團歡迎平壤市群衆大会에 参席
12. 副主席에 選出
1978. 2. 党·政府代表團長으로 「예멘」, 「잠비아」, 「모잠바크」,
「말라가시」, 「탄자니아」 訪問
7. 政府代表團長으로 「이라크」·「시리아」 訪問
1979. 1. 金日成의 特使로 「부메디엔」 「알제리」 大統領葬禮式에 参席

- 1980.10. 勞動党中央委員兼 政治局委員
 1981. 6. 「기네」, 「토고」, 「베닌」訪問

朴 壽 洞

1968. 6. 勞動党兩江道党委員會責任秘書
 1970. 7. 勞動党黃海南道党委員會責任秘書
 11.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 (第5次党大会 : 64/117)
 1972. 9. 勞動党組織指導部第1副部長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黃南香竹), 最高人民會議第5期
 代議員資格審查委員會委員
 1978.12. 當時 勞動党中央委政治委員會候補委員
 1980.10. 勞動党中央委員兼 秘書

朴 英 時

1977. 1. 蘇聯訪問
 2. 平和擁護全國民族代表團長으로 「불가리아」訪問
 3. 赤十字社代表團長으로 社会主義國家赤十字團體代表者會議에
 參席
 9. 當時 「아시아·아프리카」連帶性委員會委員長
 1978. 5.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代表團長으로 「스위스」訪問
 12. 當時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委員會副委員長
 1980.11. 朝鮮 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副委員長

1981. 6. 朝鮮赤十字会副委員長

徐 哲

1907. 東滿洲出生，金日成의 部下로서 共產主義運動에 從事

1953. 3. 駐中共大使館參事官

1955. 1. 外務省第2局長

6. 駐「베트남」大使

1956. 4. 勞動党中央委員會候補委員(第3次黨大會)

1958. 10. 人民軍政治總局長，中將，朝鮮，中共親善協會中央委員會副委員長

1960. 5. 人民軍政治總局長 辭任

1961. 5. 祖国平和統一委員會中央委員

9. 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第4次黨大會)

1962. 9. 勞動党中央委員會部長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1963. 5. 對外文化連絡委員會委員長

1967. 4.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積王寺)

12. 同 外交委員會委員長

1968. 4. 駐「체코슬로바키아」大使

1969. 6. 北傀。「체코슬로바키아」間 文化協力事業計劃書 調印
(프라하)

12. 駐「체코슬로바키아」大使 辭任，勞動党中央委政治委員會委員
兼 秘書，平壤演劇映画大學創立10周年記念報告會에서 黨中

中央委員會의 祝賀文 伝達

1970. 9. 當時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副委員長
11. 勞動党中央委員(第5次全党大会: 9/117)・政治委員
1971. 5. 勞動党代表團長으로 「체코슬로바키아」共産党第14次大会
參加
6. 勞動党代表團長으로 蒙古人民革命党第16次大会 參加
11. 勞動党代表團長으로 「폴란드」統一勞動党第6次大会 參加
1972. 4. 祖国戰線代表團長으로 「불가리아」祖国戰線第7次大会와
「헝가리」愛国人民戰線第5次大会 參加
5. 党。政府代表團長으로 蒙古人民大会幹部會議長の 葬儀 参席
12. 中央 学委員會委員,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議員
1973. 4.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불가리아」訪問
6. 當時 勞動党中央委員會檢閱委員會委員長
7. 祖国統一民主主義戰線議長
8. 「콩고」大將校勳章受勳, 党。政府代表團長으로 「울브리히트」
東独国家評議會議長の 葬儀 參加
1974. 9. 党代表團長으로 訪北日本社会党代表團(團長: 成田知己委員長)
과 會談
1975. 3. 勞動党代表團長으로서 「헝가리」社会主義勞動党第11次大会
参席
5. 党。政府代表團長으로 蘇聯对独戰勝30周年記念行事 参席
12. 勞動党代表團長으로 「폴란드」統一勞動者党第7次大会 參加
1976. 4. 勞動党代表團長으로 「체코슬로바키아」共産党第15次大会 參加

- 1976. 5. 勞動党代表團長으로 東独社会主義統一党第9次大会 参加
- 6. 勞動党代表團長으로 第17次蒙古人民革命大会 参加
- 11. 勞動党代表團長으로 「알바니아」勞動党第7次大会 参加
- 1977. 12. 中央人民委員會委員,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 代議員
資格審查委員
- 1978. 3. 旺載山會議45周年記念中央報告회에서 報告
- 9. 人民軍政治局「일꾼」代表團長으로 「루마니아」訪問
- 1980. 10. 勞動党中央委員, 政治局委員 兼 檢閱委員長

孫 成 弼

- 1964. 11. 勞動党中央党学校学部長, 史学碩士
- 1968. 人民經濟大学副總長
- 1969. 8. 同 總長
- 1970. 7. 高等教育相
- 11. 勞動党中央委候補委員(第5次党大会; 8/55)
- 1971. 8. 當時 赤十字會委員長, 崔斗善大韓赤十字社總裁의 提案에
對하여 回答
- 12. 當時 朝鮮. 「탄자니아」親善協會委員長
-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 1973. 5. 當時 教育委員會高等教育部長, 政府代表團長으로 「수단」
革命第4周年記念行事에 參席
- 6. 政府代表團長으로 「수단」, 「모로코」, 「오스트리아」,
「프랑스」訪問

1973. 7. 名譽代表團長으로 第10次世界青年學生祝典(베를린)
 參席,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PU 理事會第113次會議
 (제네바) 參席
1974. 4.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PU 理事會第114次會議
 (루마니아) 參席
9. 最高人民會議代表團員(團長: 洪起文)으로 IPU 第61次總會
 會(東京) 參席
1975. 4. 朝鮮·「파나마」親善協會委員長
6. 勞動黨代表團長으로 「페루」,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訪問
10. 訪問中인 「어퍼볼타」民族教育相歡迎會에서 演說
1976. 2. 勞動黨代表團長으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訪問
1977. 當時 朝鮮·「산토메프린시페」親善協會委員長
3. 當時 朝鮮·「이디오피아」連帶性委員會委員長
4.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PU 第120次理事會(濠洲) 參加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 常設會議議員
1978. 3.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PU 第122次理事會 參席
9. 同 代表團長으로 IPU 第65次總會 參席

1979. 4.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FU 第 124 次 理事会 (체코)

参席

1980. 10. 労働党中央委候補委員

11. 人民經濟大学總長

송 영 국

1981. 1. 朝鮮民主黨 第 6 次大会에 咸南代表로 参席, 朝鮮社会民主
黨國際部長 兼 政治委員

申 鎮 順

1970. 11. 労働党中央委候補委員 (第 5 次党大会 ; 30/55)

1971. 1. 文学芸術總同盟中央委員會副委員長

8. 朝鮮・「시에라리온」親善協會委員長

1980. 10. 労働中央委候補委員

楊 亨 燮

- 1950 . 蘇聯留學 (滿州出生, 金日成의 從妹夫, 8·15 解放前 青島
中學校 卒業)
- 1954 . 5 . 人民經濟大學教育學部長
- 1957 . 5 . 學士學位
- 1960 . 8 . 國際東洋學者第 25 次大會 (모스크바) 에 『民族의 平和
統一과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朝鮮人民鬪爭』 이란 題
目的 論文을 提出
- 1961 . 10 . 勞動黨中央委員會直屬中央黨學校長
- 1962 . 4 . 勞動黨中央委員會直屬「맑스·레닌」主義 研究所長
- 10 . 最高人民會議第 3 期代議員
- 1967 . 11 . 最高人民會議第 4 期代議員 (三泉)
- 12 . 高等教育相
- 1968 . 7 . 親善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쿠바」武裝蜂起 15 周年記念行
事に 參席
- 1969 . 11 . 朝鮮·「탄자니아」親善協會委員長
- 12 . 政府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캄보디아」訪問
- 1970 . 6 . 政府代表團 (團長 : 朴成哲) 의 一員으로 中共을 訪問
- 11 .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政治委員·秘書 (第 5 次黨大會 ;
14 / 117)
- 1971 . 4 . 勞動黨代表團의 一員으로 蘇聯共產黨第 24 次大會에 參席

1971. 8.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콜롬비아」共産黨代表團과
會談(平壤)
10. 黨·政府代表團長의 資格으로 越盟訪問
1972. 3.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이탈리아」共産黨第13次大
會에 參席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黨·政府代
表團(團長:崔庸健)의 一員으로 蘇聯建國50周年式典에
參席
1973. 5.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시리아」, 「이라크」, 「프
랑스」訪問
8. 「콩고」指揮官勳章受勳
1974. 5.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유고슬라비아」共産黨 第
10次大會에 參席
7. 北傀를 訪問한 日本勞動組合代表團(團長:岩井章總評願
問)과 會談
8.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이탈리아」共産黨機關紙「우
니타」創刊50周年記念祝典行事に 參席
9.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유고」訪問
1975. 6. 北傀를 訪問한 「프레토리코」社會黨代表團과 會談
7. 北傀를 訪問한 日本評論家 藤島宇內와 會談, 金日成의
特使로 「버어마」, 「뱅글라데쉬」, 「네팔」, 「아프가니
스탄」訪問

1975. 10. 北傀를 訪問한 「헝가리」愛國人民戰線代表團 및 日本九州地方每日放送代表團과 會談
1976. 3. 勞動黨代表團長의 資格으로 「불가리아」共產黨第11次大會에 參席
11. 北傀를 訪問한 「프랑스」共產黨代表團과 會談
1977. 4. 「가봉」民主黨代表團과 會談(平壤), 最高人民會議第5期7次會議에서 土地法採擇에 관하여 報告, 當時 中央人民委員會法制委員會委員長
1978. 11. 勞動黨代表團長으로 「기니」訪問
12. 勞動黨代表團長으로 「부룬디」訪問
1979. 2. 勞動黨代表團長으로 「포르투갈」訪問
1980. 8. 勞動黨代表團長으로 「나이지리아」訪問
1981. 3. 社會科學院長
5. 「핀란드」共產黨第19大會에 參席
7.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議長團

延 亨 默

1967.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
1970. 11. 勞動黨中央委員·秘書·部長(第5次黨大會; 63/117)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1974. 12. 勞動黨中央委政治委員會委員

- 1975. 1. 全國農業大會主宰
- 1977.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 1980. 10. 勞動黨中央委員, 秘書兼 政治局委員

염 국 열

- 1981. 1. 朝鮮社會民主黨副委員長兼 政治委員
- 2. 金日成, 미테랑 (불란서 社会党 党首) 間 會談에 參席
- 3. 마스카다 이찌오 (日本社会党 委員長) 와 會談

吳 克 列

- 1928. 中國 吉林省 汪清縣 석현 出生
- 1964. 11. 人民軍空軍聯隊司令官, 少將
- 1970. 11.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 (第5次黨大會 ; 109 / 117)
- 1971. 8. 當時 人民軍空軍司令官, 中將, 軍事代表團副團長으로 中共訪問
-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 1973. 5. 人民軍空軍司令官, 中將
- 1975. 4. 金日成의 中共公式訪問에 隨行
- 1978. 7. 人民軍親善訪問團長으로 中共訪問, 華國鋒主席 및 徐向前國防部長과 會見, 人民軍副總參謀長, 中將
- 1979. 9. 人民軍總參謀長

1980.10. 勞動黨中央委員，政治局委員兼 軍事委員

吳 白 龍

1909. 東滿洲出生
1933. 東滿洲에서 抗日「빨치산」鬭爭에 參加
1948. 2. 人民軍獨立旅團長
1953. 9. 人民軍第7軍團副司令官，少將
1958. 3. 人民軍中將，護衛局長
1961. 9.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第4次黨大會），民族保衛省副相，上將
- 1962.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 1965.11. 民族保衛省副相
- 1966.10. 黨代表者會執行部成員
- 1967.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
1968. 2. 當時 民族保衛省副相，英雄稱號 国旗勳章第1級受勳
7. 當時 人民軍大將
1969. 1. 軍事委員會副委員長（勞農赤衛隊司令官）
- 1970.11.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第5次黨大會；21/117）
- 1972.10. 陸運海運相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江原 高山），中央人民委員會國防委員會副委員長
1977. 6. 當時 平安北道 人民委員會委員長

1978.12. 當時 勞動黨政治委員會委員

1980.10. 勞動黨中央委員，政治局委員兼 軍事委員

吳 振 宇

1910. 咸鏡南道北青出生

1933. 金日成 抗日「빨치산」隊員

1954. 人民軍第3師團長

1956. 4. 勞動黨中央委員會候補委員(第3次黨大會)

1957.10. 軍團長

1958. 3. 空軍司令部參謀長，中將， 國旗勳章第1級受勳

1960.11~62.4. 金剛山地區駐屯軍(第1集團軍)司令官

1961. 9.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第4次黨大會)

1962.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1963.10. 民族保衛省副相

1964.11. 軍事代表團長으로 「인도네시아」訪問，大將

1966. 4. 軍事代表團長으로 「쿠바」訪問

10. 勞動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候補委員，勞動黨代表者會執行部成員

1967. 2. 政府代表團員으로 蘇聯訪問

4. 人民軍總政治局長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文川)，同 常任委員會委員

1968. 2. 英雄稱號·國旗勳章第1級受勳

1968. 7. 軍事代表團長으로 「헝가리」訪問
9. 當時 勞動黨中央委員會秘書, 軍事代表團員으로 東獨訪問
1969. 2. 當時 人民軍總參謀長
1970. 5. 軍事代表團長으로 蘇聯訪問
7. 軍事代表團長으로 中共訪問
11.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7/117), 同 政治委員·秘書(第5次黨大會)
1971. 4. 當時 軍事代表團長으로 「루마니아」訪問
8. 軍事代表團長으로 中共訪問
9. 北傀·中共間 無償軍事援助提供協定 調印(北京)
- 1972.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咸南 龍城), 中央人民委員會委員·國防委員會副委員長
1973. 8. 「콩고」大將校勳章受勳
10. 「불가리아」勳章第1級受勳
1974. 6. 軍事代表團長으로 「이집트」·「시리아」訪問
1975. 4. 金日成 中共公式訪問에 隨行
5. 金日成 「루마니아」, 「알제리」, 「모리타니」, 「불가리아」 및 「유고슬라비아」公式訪問에 隨行
1976. 5. 人民武力部長
1977. 2. 軍事代表團長으로 「파키스탄」訪問, 「초도우리」大統領 및 「알리 부토」首相과 會談
10. 「헝가리」訪問, 國防相과 會談

- 1977.11. 北傀軍煽動員大會 參席
12. 勞動黨政治委員，中央人民委員會國防委員會副委員長，人民武力部長
1978. 2. 軍事代表團長으로 蘇聯軍創設第60周年行事 參席
8. 中共軍事代表團(團長：栗裕中產党中央委員，軍事委責任者，國防部副部長)과 會談
9. 「유고」軍事代表團(團長：「유고」人民軍總參謀長)과 會談，「콩고」黨·政府代表團 및 「잠비아」軍事親善代表團과 會談
- 1980.10. 勞動黨中央委員，軍事委員，政治局常務委員兼 委員

尹 基 福

1926. 8. 咸鏡南道出生
1939. 서울壽松普通學校 卒業，京畿中學校 4年中退，滿洲醫學學校 卒業
1948. 蘇聯留學
1956. 1. 人民經濟大學教授
1962. 8. 普通教育相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12. 朝鮮·「쿠바」團結委員會委員長
- 1965.12. 朝鮮·「라틴 아메리카」親善協會委員長

- 1967.12. 財政相
1969. 9. 國家計劃委員會委員長
- 1970.11. 勞動黨中央委員(第5次黨大會; 57/117)
- 1971.11. 勞動黨科學教育部長
1972. 5. 當時 平壤市 人民會議議長
8. 對外文化連絡委員會副委員長, 南北赤十字會談諮問委員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議員兼 法案
審議委員會委員
1973. 5. 同 法案審議委員長
7. 萬壽臺藝術團長으로 日本訪問
1974. 9. IPU 第61次總會(東京)에 參席
1977. 3. 經濟文化代表團長으로 「이탈리아」訪問
12. 最高人民會議法案審議委員長, 同 常設會議議員
- 1978.12. 當時 中央人民委員會經濟委員會副委員長
- 1980.10. 勞動黨中央委員, 秘書兼 政治局候補委員
1981. 5. 祖國平和統一委員會副委員長

林 春 秋

1932. 當時 東滿洲「빨치산」隊員, 金日成의 直系部下(咸鏡北道出生)
1942. 蘇聯軍人

1946. 5. 當時 江原道人民委員長
1950. 勞動黨江原道黨委員長
1955. 10. 勞動黨連絡部副部長
1957. 5. 「알바니아」駐在大使
1958. 12. 「불가리아」駐在大使
1961. 9. 勞動黨中央檢查委員會委員(第4次黨大會)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同 常任委員會書記長
1966. 10. 勞動黨政治委員會候補委員
1970. 11. 勞動黨中央委員(第5次黨大會; 34 / 117)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書記長
1973. 4. 當時 金日成放送大學長
1974. 3.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蘇聯·「유고」訪問
7. 祖國戰線代表團長으로 「폴란드」訪問
1977. 7. 勞動黨休養團長으로 「유고」訪問
9. 黨序列 7位 浮上
10. 黨·政府代表團長으로 蘇聯社會主義革命60周年記念行事 參席
12. 中央人民委員會書記長, 勞動黨中央委員, 政治委員, 秘書, 最高人民會議代議員資格審查委員長
1978. 8. 南浦造船所에서 建造한 2萬「톤」級貨物船 延豐號進水式에 參席
1980. 10. 勞動黨中央委員兼 政治局委員,
1981. 3. 國家學位學職受與委員會委員長

1981. 7.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議長團

李 克 魯

1897. 慶尙南道出生
1920. 5. 上海經濟大學豫科 卒業
1927. 「베를린」大學哲學部 卒業, 朝鮮語學會主幹으로 朝鮮語辭典
完成
1942. 朝鮮語學會事件으로 咸興刑務所服役
1945. 出所, 朝鮮語學會會長, 全國政治運動者後援會長
1946. 6. 健民會委員長
1947. 9. 民主獨立黨入黨
1948. 4. 南北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參席後 北韓에 殘留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南韓代表)
1948. 9~53. 12. 無任所相
1949. 6.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常務委員, 同 議長
11. 科學院候補院士
1953. 12.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副委員長, 無任所相 辭任
1957.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9. 同 常任委員會副委員長
12.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常務委員
1958. 1. 朝鮮·蘇聯親善協會常務委員

- 1961. 3.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副委員長 辭任
- 5. 祖國平和統一委員會副委員長
- 1962. 7. 科學院 朝鮮語 및 朝鮮文學研究所長
-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 1966. 10.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議長
- 1967.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龍蟠)
- 1971. 8. 當時 祖國平和統一委員會副委員長
- 1972. 12. 當時 兩江道人民委副委員長

李 箕 永

- 1895. 忠清南道出生，日本正則英語學校 留學
- 1925. 8. 韓雪野 등과 함께 「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 結成
- 1934. 2年間 服役，8.15解放後 江原道人民委員會教育部長，藝術同盟名譽委員長
- 1945. 11. 朝鮮·蘇聯文化協會中央委員會委員長
- 1946. 2.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
- 8. 親善使節團長의 資格으로 蘇聯을 訪問
- 1948. 文學碩士
-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同會議常任委員會委員
- 1949. 6.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委員
- 1953. 9. 作家同盟中央委員會常務委員

1955. 5. 勞力勳章受勳, 世界平和會議 (헬싱키) 에 參席
10. 作家同盟中央委員會常務委員
1957. 6. 最高人民會議代議員中央選舉委員會委員
8. 最高人民會議第 2 期代議員
9. 最高人民會議副議長 (第 2 期)
1958. 1. 朝鮮·蘇聯親善協會中央委員會委員長
4.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의 資格으로 「 체코 」 訪問
5.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常務委員
7. 對外文化連絡委員會中央委員
9. 國旗勳章第 1 級受勳
1959. 1. 歐羅巴 및 「 아시아 」 社會主義諸國平和運動指導者會議에 參席 (소피아))
10. 朝鮮·蘇聯親善協會代表團長의 資格으로 蘇聯 10 月革命 42 周年記念行事에 參席
1960. 9. 長編小說「豆滿江」으로 人民賞受賞
1961. 5. 平和統一委員會常任委員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 3 期代議員, 同 會議副議長 留任
11. 朝鮮·蘇聯親善協會中央委員會委員長
1963. 4. 朝鮮·蘇聯親善協會와 蘇聯對外親善協會間 協力計劃書에 調印
1965. 4. 北傀·蘇聯間 1965 年度 親善協力計劃書 調印

1966. 6. 南北間의 書信交換을 主張 (祖國統一紙에 寄矯)
12. 文藝總中央委員會委員長
1967. 10. 朝鮮·蘇聯親善協會代表團長으로 蘇聯訪問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 (千佛山)
12. 同 副議長就任
1970. 7. 蘇聯勞力赤旗勳章受勳
1972. 4. 當時 文學藝術總同盟委員長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朝鮮·蘇聯親善協會委員長

李 冕 相

1908. 咸鏡南道出生, 解放前 日本音樂學校 卒業
1946. 3. 文學藝術家同盟中央委員會常任委員
1951. 3. 音樂同盟中央委員會委員長
1953. 9. 作曲家同盟中央委員會委員長
1956. 5.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委員 兼 常任委員
1957. 2. 平壤音樂大學總長
6. 最高人民會議代議員選舉委員會委員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1958. 1. 朝鮮·蘇聯親善協會中央委員
5.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常務委員
6. 朝鮮·「프랑스」親善協會副委員長
7. 對外文化連絡委員會中央委員

1959. 8. 作曲「密林이여 말하라」로 人民賞受賞
11. 朝鮮・「네팔」親善協會委員長
1961. 1. 音樂家同盟中央委員會委員長
3. 文學藝術家總同盟中央委員會副委員長
5. 祖國平和統一委員會常務委員
7. 人民藝術家稱號
9. 勞動黨中央委候補委員（第4次黨大會）
- 1962.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同 常任委員會委員
- 1964.12. 歌劇代表團長으로 越盟訪問
- 1967.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光東）
1969. 9. 當時 朝鮮・中共親善協會副委員長
10. 當時 音樂家同盟委員長，文藝總副委員長
- 1970.11. 勞動黨中央委員（第5次黨大會；103／117）
1971. 4. 當時 文藝總副委員長，音樂家同盟委員長，作家藝術家代表團長
으로 「쿠바」訪問
- 1972.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同 常設會議議員
1973. 5. 文化代表團長으로 「루마니아」訪問
1977. 9. 中央選舉委員會委員
- 1980.10. 勞動黨中央委員

李 秀 月

- 1975. 4. 女盟中央委員會秘書，女盟代表團長으로 國際女性同盟事務局會議 參席 (루마니아)
- 1976. 4. 女盟代表團長으로 社會主義國女性團體指導幹部協議會 (불가리아) 參席
- 8. 女盟副委員長
- 11. 女盟代表團長으로 國際民主女性同盟事務局會議 參席 (포르투갈)
- 1977. 2. 女盟代表團長으로 東獨訪問
- 3. 女盟中央委第4期8次全員會議에서 報告
- 6. 女盟代表團長으로 社會主義國女性團體指導幹部協議會 參席 (蘇聯)
- 9. 女盟代表團長으로 「 체코 」訪問
- 1978. 5. 女盟代表團長으로 蘇聯訪問
- 1979. 5. 女盟代表團長으로 非同盟國女性大會 參席 (이라크)
- 1980. 10. 勞動黨中央委候補委員

李 榮 洙

- 1972. 當時 工業技術總聯盟副委員長
- 1976. 11. 社勞青副委員長
- 1978. 3. 工業技術總聯盟代表團長으로 「 체코 」訪問
- 12. 社勞青代表團長으로 「 유고 」社會主義青年同盟第10次大會 參席
- 1981. 1. 社勞青委員長

李 鍾 玉

1918. 咸鏡北道出生
1940. 金日成斗 協力, 「하얼빈」工業大學卒業後 共產主義運動
參加
1944. 城津赤友社를 組織 하고 城津地區에서 共產黨設立
1946. 城津培英中學校教務主任
1948. 清津紡織工場支配人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
- 1949.10. 產業省局長
1950. 同 副相
1951. 2. 輕工業相
1956. 1. 勞動黨中央委員會工業部長, 國家計劃委員會委員長
4. 勞動黨中央委員, 政治委員會候補委員(第3次黨大會)
6. 政府代表團長으로 蘇聯, 東歐諸國 및 蒙古訪問
9. 「알바니아」國旗勳章 受勳
1957. 8.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9. 國家計劃委員長 留任
1958. 5.~ 8. . 食糧 및 經濟援助協議次 蘇聯·中共訪問
9. 北傀創建 10周年 즈음하여 國旗勳章第1級 受勳
1959. 1. 勞動黨代表團長으로 蘇聯共產黨第21次大會 參席
2. 朝總聯迎接委員會委員
7. 勞動黨中央委員會副委員長, 國家計劃委員會委員長 辭任

1960. 1. 副首相
4. 重工業委員會 設置에 따라 同 委員長 兼任
1961. 6. 党·政代表團長으로 蘇聯·中共訪問
9. 勞動党中央委員·政治委委員(第4次党大会)
1962. 9. 重工業委員會廢止에 따라 重工業委員長職 辭任, 金属化学工業相
- .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副首相 兼 金属化学工業相 留任
1964. 12. 金属化学工業相 辭任
1965. 9. 科学院長
1966. 6. 党代表團長으로 「체코」共産党第13次大会 参席
9. 党代表者会執行部成員
1967. 10. 科学院長 辭任
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鍾城)
12. 内閣副首相 留任
1968. 12. 党·政代表團長으로 「쿠바」革命10周年紀念行事 参席
1969. 1. 故金甲淳鉄道相葬儀委員會委員長
1972. 6. 当時 鈹業相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政務院重工業委員會委員長
1973. 3. 勞動党中央委員會政治委候補委員
1976. 12. 政務院副總理
1977. 12. 政務院總理,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 1978. 1. 當時 勞動黨政治委員
- 2. 「유고」保健代表團 및 東獨政府經濟代表團과 會談
- 9. 「루마니아」, 「헝가리」, 「탄자니아」黨·政代表團과 會談
- 1980.10. 勞動黨中央委員, 政治局常務委員 兼委員
- 1981. 6. 「탄자니아」, 「짐바브웨」, 「말라가시」訪問

張 允 弼

- 1920. 平南平原郡강오리出生, 中央黨學校 卒業
- 1946. 政治保衛部員
- 1950.~ 53. 第 18 聯隊政治保衛部軍官
- 1954. 勞動黨中央委員會組織課長
- 1956. 6. 平安南道人民委員會委員長
- 1957. 8. 最高人民會議第 2 期代議員, 同 豫算委員會委員
- 1961. 7. 黃南道人民委員會委員長
- 9. 勞動黨中央委員會候補委員 (第 4 次黨大會)
- 1962.10. 黃南道農村經理委員會委員長, 最高人民會議第 3 期代議員,
 同 豫算委員會委員
- 1967.11. 最高人民會議第 4 期代議員 (白川)
- 12. 同 豫算委員會委員
- 1970. 7. 農業委員會委員長
- 8. 農業代表團長으로 「헝가리」第 67 次農業 및 食料工業展

覽会 参加

- 1970.11. 労働党中央委員 (第5次党大会: 75/117)
- 1971.10. 農業代表団長으로 「루마니아」訪問
- 1972.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平南 肅川)
1977. 6. 当時 農勤盟中央委員會委員長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 常設會議議員
1978. 9. 朝鮮・아프리카 親善協會委員長
- 1980.10. 労働党中央委員
12. 朝鮮・짐바브웨 親善協會委員長

全 今 哲

- 1972.11. 第3次南北赤十字會談 代辯人
1973. 3.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幹事會議 参席
5.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 幹事會議 参加
1974. 6. 南北調節委 代辯人
1981. 6. 祖国平和統一委員會副委員長

全 文 燮

兩江道보천出生, 中央党學校卒業

解放前 金日成의 抗日遊擊隊에 参加

1950. 当時 師團長

1956. 第7軍団長
1960. 8. 第2軍団長
1961. 9. 第2集團軍司令官
- 1962.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1964. 社会安全省副相 兼 護衛局長
- 1967.11. 最高人民會議第4期代議員(黑橋)
- 1969.11. 英雄称号와 国旗勳章第1級受勳
- 1970.11. 勞動党中央委員(第5次党大会; 31/117)
- 1972.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1975. 4. 當時 勞動党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候補委員, 中共을 訪問
한 金日成을 随行
- 1978.12. 當時 勞動党政治委員, 人民軍上將, 金日成의 護衛責任者
- 1980.10. 勞動党中央委員, 政治局委員 兼 軍事委員

鄭 寬 徹

1946. 美術家同盟中央委員
1951. 3. 文学芸術總同盟中央委員會委員長
1953. 9. 美術家同盟中央委員會委員長
1956. 5. 祖国戰線中央委員會委員
- 1957.12. 功勳藝術家称号 받음
1958. 7. 对外文化連絡委員會中央委員
10. 朝鮮・蘇聯親善協會中央委員

- 1961. 3. 文学芸術総同盟中央委員
- 5. 美術家同盟中央委員会委員長
- 1966. 8. 「祖国統一」紙 67 号에서 「南北共同美術展」開催提議
-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 5 期代議員
- 1973. 3. 美術家同盟中央委員会委員長

鄭 東 喆

- 1958. 8. 兩江道人民委員長
- 1961. 9. 労働党中央検査委員会委員 (第 4 次党大会)
- 1962. 10. 林業部長, 最高人民會議第 3 期代議員
- 1967. 4. 林業代表団長の 資格으로 蘇聯訪問
- 10. 労働党代表団長の 資格으로 「기니」訪問
- 11. 最高人民會議第 4 期代議員 (三岐)
- 12. 林業部長 留任
- 1970. 3. 林業部長
- 9. 檢察總長
- 11. 労働党中央委員 (第 5 次党大会 : 23/117)
-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 5 期代議員 (平南 内南), 同 法案審議委員會委員, 中央檢察所長
- 1976. 12. 中央檢察所長 辭任
- 1977. 10. 当時 祖国戰線中央委員会委員長
- 12. 最高人民會議第 6 期代議員, 同常設會議議員, 同法案審議委員

- 1978. 4. 最高人民會議第 6 期 2 次會議 参席
- 1979. 10. 祖国統一民主主義戰線議長団
- 1980. 10. 労働党中央委員

鄭 斗 煥

- 1956. 4. 労働党中央委員会候補委員, 同 中央委員会商業財政部長
- 1957. 8. 最高人民會議豫算委員會委員長
- 9. 国旗勳章第 1 級受勳
- 10. 労働党中央委員会商業財政計劃部長
- 1959. 5. 商業相 (1960 年 5 月까지)
- 1961. 3. 労働党代表団長の 資格으로 「오스트레일리아」共産党第 18 次大会에 参席
- 9. 労働党中央委員会委員
-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 3 期代議員
- 12. 「루마니아」駐在大使
- 1964. 8. 北傀・「루마니아」間 文化交流計劃書 調印
- 1965. 10. 北傀・「루마니아」間 1965 年度 科学協力計劃書 調印
- 1967. 11. 最高人民會議第 4 期代議員
- 12. 「루마니아」駐在大使 辞任
- 1968. 2. 蘇聯駐在大使
- 1969. 12. 蘇聯駐在大使 辞任
- 1970. 11. 労働党中央檢査委員

- 1972.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黃南 金谷), 政務院勞動行政
部長
1973. 4. 朝鮮・「루마니아」親善協會委員長
1977. 5. 駐「이집트」大使
- 1979.10.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議長

趙 靈 出

1953. 9. 作家同盟中央委員會候補委員
- 1957.11. 國立民族藝術劇場總長
- 1958.11. 教育文化省藝術局長, 藝術團長으로 中共訪問
- 1960.10. 教育文化副相
- 1962.10. 教育文化副相 辭任
12. 文藝總中央委員會副委員長
- 1964.12. 「이집트」民族舞蹈團歡迎會에서 演說
1966. 3. 平壤歌舞團長으로 「버어마」訪問
5. 朝總聯結成11周年紀念平壤作家・藝術家集會에서 報告
- 1977.11. 平壤學生少年藝術團長으로 「불가리아」訪問公演

千 世 鳳

1901. 咸鏡南道高原郡出生, 普通學校4年修了
1942. 高原驛運送部勤務
1945. 蘇聯留學, 研究院에서 數年間 研究

1954. 8. 作家同盟中央委員
1958. 10. 文芸總中央委員
1961. 作家同盟中央委員會小説分科委員長
1964. 12. 當時 文芸總中央委員長, 「아시아·아프리카」作家大會常
設書記局代表團歡迎集會에서 演說
1970. 11. 勞動黨中央委員會候補委員(第5次黨大會; 31/55)
1971. 6. 當時 作家同盟委員長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同 常設會議議員, 代表作 長
編小説「어떤마을의 새봄」
1977.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 常設會議議員
1980. 10. 勞動黨中央委員

崔 萬 鉉

1954. 10. 當時 國家計劃委員會綜合計劃局副局長
1956. 5. 當時 勞動黨中央委員會副部長
1961. 8. ~ 當時 國家科學技術委員會副委員長
65. 1.
1973. 10. 當時 社會科學院副院長
1981. 8. 科學院長
- . 3. 工業技術總聯盟委員長

崔 民 信

1968. 6. 駐「불가리아」大使
9. 北傀·「불가리아」間 文化交流計劃書 調印(소피아)
1973. 3. 當時 民主法律家協會委員長

崔 采 華

1953. 當時 作家同盟中央委員會委員
- 1956.10. 當時 金日成大學文學部講座長
1959. 5. 當時 作家同盟中央常務委員
- 1963.11~ 當時 同 中央委員會副委員長
65. 1.
1966. 6. 作家代表團長으로 A.A 作家緊急會議(北京)參席
10. 當時 朝鮮·「네팔」親善協會副委員長
1968. 8. 當時 作家同盟副委員長
1973. 5. 當時 文學藝術總同盟中央委員會副委員長
1976. 3. 文學藝術總同盟創立 30 周年記念中央報告會에서 報告

崔 賢

1907. 5. 咸北 惠山 出生
1920. 滿洲에서 崔庸健등과 抗日遊擊隊를 組織하여 活躍
1929. 中國軍官學校 卒業
1941. 蘇聯軍官學校 卒業
1947. 內務省 38 警備旅團長
1948. 人民軍政治局長
1949. 同 第 2 師團長, 少將
1951. 同 第 2 軍團長
1956. 4. 勞動黨中央委員(第 3 次黨大會), 大將
6. 民族保衛省副相

1957. 8. 最高人民會議第 2 期代議員
1958. 4. 通信相
1959. 6. 北傀代表團長으로 社会主义諸国通信相會議(伯林)參加
1961. 9. 勞動党中央委員(第 4 次党大会)
1962. 10. 最高人民會議第 3 期代議員, 同 常任委員會委員
1966. 10. 勞動党代表者会執行部成員, 党中央委員會政治委員
1967. 5. 英雄称号를 받음
11. 最高人民會議第 4 期代議員(萬景台), 同 常任委員會委員
1968. 12. 當時 民族保衛相
1970. 11. 勞動党中央委員・政治委員(第 5 次党大会; 5/117)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 5 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同 国防委員會副委員長, 政務院人民武力部長
1976. 2. 人民軍創設 28 周年祝賀駐北傀各国大使館武官斗 會見
1977. 12. 中央人民委員會委員・国防委員會副委員長・最高人民會議第 6 期代議員
1980. 10. 勞動党 中央委員, 政治局委員兼 軍事委員

許 燦

1948. 10. 「모스크바」大學留學後 外務省參事(咸鏡北道出生, 金日成의 四寸妹夫)
1952. 外務省書記
1956. 6. 外務省儀禮局副局長
1960. 4. 同 局長

1962. 1. 外務省副相
1965. 4. 金日成을 隨行하여 「인도네시아」訪問
1969. 12. 外務省第1副相
1970. 7. 外務相
11. 勞動党中央委員 (第5次党大会 ; 29/117)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中央人民委員會委員, 外交部長
1973. 2. 政務院副總理
10. 第28次UN總會代表團長
1975. 4. 金日成을 隨行하여 中共訪問
1976. 8. 金日成特使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訪問
1977. 1. 金日成特使로 「토고」, 「다오메이」, 「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루운」, 中央「아프리카」訪問
5. 當時 勞動党政治委候補委員
9. 非同盟諸国外相緊急會議 參席 (뉴욕)
1978. 7. 政府代表團長으로 「유고」訪問, 非同盟諸国外相會議參席演說
8. 北傀·「리비아」間 共同委員會第1次會議議定書 調印
10. 政府代表團長으로 「아프가니스탄」·「네팔」訪問, 北傀·「아프가니스탄」間의 經濟·科學技術·文化協力協定 調印
1979. 3. 政府代表團長으로 蘇聯 및 「이란」訪問
5. 同 代表團長으로 「말레이시아」訪問
6. 非同盟外相會議 (콜롬보) 參席
1980. 10. 勞動党 中央委員, 政治局 候補委員

許 貞 淑

1909. 6. 咸北 경전에서 許憲의 長女로 出生, 培花女子高等普通学校, 日本関西学院, 外国語学校(上海)卒業
- 1927~28. 美国留学
1928. 中国에서 抗日運動에 参加
1937. 崔昌益과 結婚
- 1945.10. 北朝鮮共産党宣傳煽動部副部長
1947. 2. 北朝鮮人民委員會宣傳部長
1948. 3. 北朝鮮勞動党中央委員(第2次党大会)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
9. 文化宣傳相
10. 蘇聯軍撤収中央歡送委員會委員長
1949. 6. 祖国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委員
1956. 4. 勞動党中央委員(第3次党大会)
1957. 5. 对外文化連絡委員會委員長
8. 司法相, 最高人民會議第2期代議員
1958. 5.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中央委常務委員
6. 国旗勳章第1級受勳, 朝鮮·「프랑스」親善協會中央委員
10. 朝鮮·中共親善協會中央委員
1959. 8. 司法省廢止에 따라 同相解任
10. 最高裁判所長

- 1960.11. 同職解任
1961. 9. 労働党中央委員会에서 除名(第4次党大会)
1965. 9. 女盟副委員長
1972. 8. 当時 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中央書記局長
11. 中央選挙委員会委員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同 會議副議長 兼 常設會議副議長
- 1973.10. 祖国平和統一委員会副委員長
- 1977.10. 女盟代表團長으로 日本訪問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 同 常設會議副議長
1978. 2. 祖国戦線代表團長으로 「유고」・「루마니아」訪問
12. 当時 労働党中央委員
- 1980.10. 労働党 中央委員
1981. 6. 海外同胞 援護委員長

洪 起 文

1906. 忠北 괴산 出生(洪命喜의 아들)
- 1947.10. 民主独立党 常務委員
1948. 金日成大学 副教授, 言語学者
8. 最高人民會議第1期代議員
1957. 8. 蒙古訪問
1960. 1. 金日成大学教授
1961. 5. 祖国平和統一委員会中央委員

1964. 4. 科学院院士，社会科学院副院長
1965. 6. 民主科学者協會副委員長
1967. 8. 言語学者代表團長으로 第10次國際言語学者大会(루마니아)
) 参席
9. 最高人民會議中央選舉委員會委員，祖国統一社編輯委員
1969. 4. 社会科学院長
8. 当時 朝鮮·「라틴아메리카」親善協會委員
1970. 4. 当時 院士·教授·博士
10. 当時 社会科学院副院長，人民賞 및 学位学識審査委員會副委員長
1972. 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同 副議長，同 常設會議副議長
1973. 4. 社会科学院長
9. 金日成勳章受勳
10. 当時 祖国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
1974. 9.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PU第61次總會(東京)参席
1975. 8.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PU第62次總會(런던)参席
1977. 1. 当時 祖国戰線中央委員會議長
6. 祖国戰線代表團長으로「불가리아」祖国戰線第8次大会 参席
12. 最高人民會議第6期代議員，最高人民會議 및 常設會議 副議長
1978. 12. 当時 祖国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勞動党中央委員會委員
1980. 1. 祖国平和統一副委員長
10. 勞動党 中央委員

黃 壯 燁

1925. 咸鏡南道出生，金日成의 甥姪
1952. 蘇聯留學
- 1954.10. 當時 金日成大學哲學講座長
1958. 科學院社會科學部委員
- 1959.12. 當時 勞動黨宣傳煽動部副部長
- 1962.10. 最高人民會議第3期代議員
1963. 6. 崔庸健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長을 隨行하여 中共訪問
- 1964.10. 當時 內閣參事
11. 崔庸健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長을 隨行하여 「이집트」, 「알제리」, 「말리」, 「기니」 및 「캄보디아」訪問
1965. 4. 金日成大學總長
1966. 9. 同大學創立第20周年記念式에서 報告
1970. 4. 哲學博士
11.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 (第5次黨大會 ; 102/117)
- 1972.12. 最高人民會議第5期代議員 (平南三峰), 最高人民會議議長, 同常設會議議長
1973. 2.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예멘」, 「튀니지」 및 「리비아」訪問
1974. 1.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蘇聯 經由「쿠웨이트」 및 「레바논」訪問
1975. 3.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印度 및 「벵글라데쉬」訪問

- 1975.11.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체코슬로바키아」訪問
1976. 4.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IPU 第 118 次理事会 (멕시코)
參席, 歸路 「엘살바도르」 및 「베네주엘라」訪問
1977. 2.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蒙古訪問
12. 最高人民會議第 6 期代議員, 同議長, 同 常設會議議長
- 1978.12. 金日成大學 · 「온두라스」民族自治綜合大學間 提携設定에 관
한 合意書 調印
1979. 4. 最高人民會議代表團長으로 「인도네시아」 및 印度訪問, 主
體思想討論會 (뉴우델리)에 參席
- 1980.10. 勞動黨中央委員兼 秘書

서 기	1981	년	8	월	20	일	100	부	발	간
발 간 업 체 명	휘 문 인 쇄 주 식 회 사		☎		725-2523		725-2524			
대 표 자	구		자		만					
인 가 근 거	내 자		2066-8759		(68 . 6 . 12)					
입 회 자	국 토 통 일 원 조 사 연 구 실									
	보 좌 관 박 응 회									